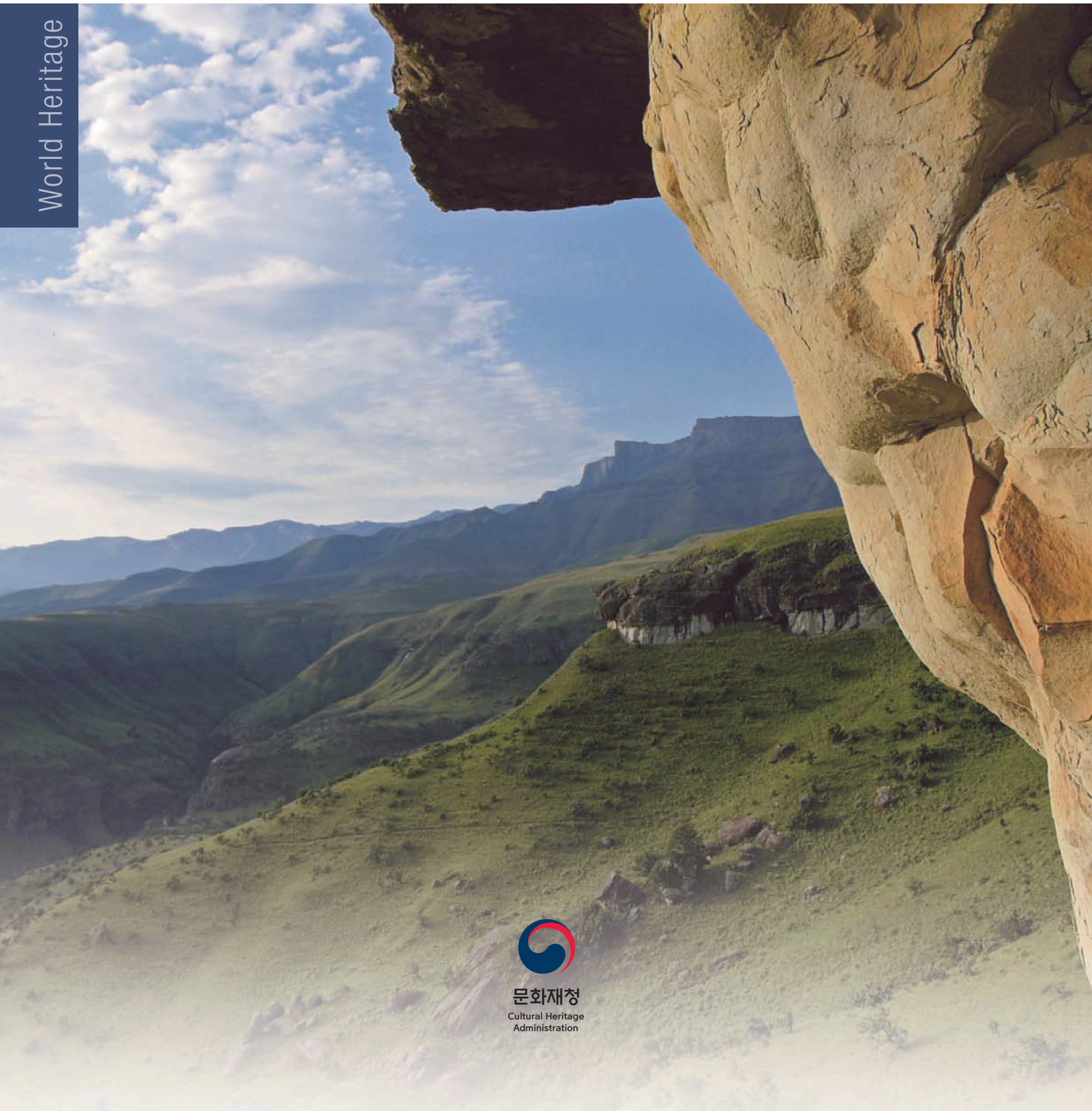


세계유산 등재신청 안내서

PREPARING WORLD HERITAGE NOMINATIONS



세계유산 등재신청 안내서

펴낸날 2018년 12월24일

기획 문화재청 세계유산팀

번역 김세연 (문화재청 세계유산팀)

감수 조재모 (경북대학교 건축학부)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전화 042-481-3181 전송 042-481-3199

누리집 www.cha.go.kr

ISBN 978-89-299-1473-8 93600

※ 이 도서의 원문은 문화재청 누리집 www.cha.go.kr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간등록번호 11-1550000-001815-01



이 출판물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Attribution-NonCommercial-ShareAlike 3.0 IGO (CC-BY-NC-SA 3.0 IGO) 라이선스(<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3.0/igo/>))에 따라 오픈 액세스 형태로 열람할 수 있다.

이 출판물의 내용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유네스코 개방형 정보 저장소 (UNESCO Open Access Repository, www.unesco.org/open-access/terms-use-ccbyncsa-en)의 사용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원문제목: *Preparing World Heritage Nominations (Second Edition 2011)*

2011년 UNESCO, ICOMOS, ICCROM, IUCN 발간

이 번역서는 UNESCO, ICOMOS, ICCROM, IUCN이 발간한 출판물이 아니며, UNESCO, ICOMOS, ICCROM, IUCN의 공식 번역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UNESCO, ICOMOS, ICCROM, IUCN은 이 번역서의 내용이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This publication is available in Open Access under the Attribution-NonCommercial-ShareAlike 3.0 IGO (CC-BY-NC-SA 3.0 IGO)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3.0/igo/>).

By using the content of this publication, the users accept to be bound by the terms of use of the UNESCO Open Access Repository (www.unesco.org/open-access/terms-use-ccbyncsa-en).

Original title: *Preparing World Heritage Nominations (Second Edition 2011)*

Published in 2011 by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ICOMOS, ICCROM and IUCN.

This translation was not created by UNESCO, ICOMOS, ICCROM or IUCN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n official UNESCO, ICOMOS, ICCROM or IUCN translation. UNESCO, ICOMOS, ICCROM and IUCN are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r accuracy of this translation.

표지사진: 우카힐람바 드라켄즈버그 공원(남아프리카공화국)

© OUR PLACE - The World Heritage Collection · www.ourplaceworldheritage.com

원본 그래픽디자인: RectoVerso

한국어 편집: 디자인공방

세계유산 매뉴얼 시리즈

1972년 세계유산협약이 채택된 이후 세계유산목록은 지속적으로 진화하며 꾸준히 발전해 왔으며, 이러한 성장에 따라 당사국들에 협약 이행 관련 지침을 제공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여러 전문가들 간의 회의와 정기보고 결과, 특히 당사국과 세계유산 유적관리자들의 지원 요구가 큰 특정 분야에 대해 집중도 높은 훈련과 역량 개발의 필요성이 확인된 바 있다. 세계유산 매뉴얼 시리즈는 이러한 요구에 대한 응답이다.

이 시리즈는 세계유산협약 상의 자문기구 세 곳(ICROM, ICOMOS, IUCN)과 협약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공동 작업의 결과물이다. 제30차 세계유산위원회(리투아니아 빌뉴스, 2006년 7월)가 이에 대한 계획을 지지하면서 자문기구와 센터가 여러 주제에 대해 매뉴얼을 준비해 이를 발간해 줄 것을 요청했다. 31차(2007)와 32차(2008) 위원회에서 발간 계획이 채택되었으며 우선순위 목록을 결정했다.

세 곳의 자문기구와 세계유산센터 관계자들로 구성된 편집위원회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이 시리즈의 발간과 관련된 여러 내용을 결정했다. 각 권은 주제에 따라 자문기구 중 한 곳이나 세계유산센터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종 결과물은 세계유산센터가 관리한다.

이 시리즈는 당사국과 유산 보호를 담당하는 정부 당국과 지방정부, 유적관리자를 비롯해 세계유산과 관련 있는 지역사회, 그 밖에 유산의 식별과 보존 과정과 연관된 이해당사자들에게 협약 이행에 대한 집중적인 지침을 제공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는 효과적으로 보호 관리되고 있는 유산으로 이루어진 대표성 있고 신뢰도 높은 세계유산 목록을 위한 지식과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시리즈는 세계유산협약에 대한 사용자들의 역량구축과 인식제고를 위한 사용자 친화적인 도구로 개발되었으며, 자기학습과 워크숍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협약 텍스트 자체와 협약 이행을 위해 마련된 운영지침을 이해하기 위한 보완자료의 성격을 갖는다.

이 시리즈는 PDF 파일로 발간되었으며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내려 받을 수 있다.

시리즈 제목:

세계유산 재난위험 관리(2010년 6월)

세계유산 등재신청 안내서

세계문화유산 관리

세계자연유산 관리

발간사 (제2판, 2011)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유산 보존에 대한 문제는 매일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이러한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이 세계유산협약의 중요한 자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협약 텍스트는 본질적으로 변할 수 없으므로 협약의 원칙을 이행하는 데 활용하는 운영지침을 통해 우리는 새롭게 등장하는 개념과 과정을 수용하고 이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최신 운영지침(2011년 8월)은 이러한 새로운 개념과 함께 우리가 축적해 온 집단적인 경험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말에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모든 유산의 등재신청서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이루어진 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협약의 신뢰성을 위협에 빠뜨릴 수 있는 상황 또한 확인되었습니다. 등재된 유산의 경계만큼이나 반드시 필요한 유산의 여러 요소들이 잘 알려지지 않거나 분명히 밝혀지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상당히 포괄적인 정보를 담은 단 몇 페이지의 등재신청서도 있었으며, 제한된 자료만으로 등재된 유산의 보호관리 내용에 대한 타협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등재신청 과정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신청서 완성도 검사 제도는 1999년 도입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신청서는 내용에 대한 사무국의 사전점검 없이 자문기구로 자동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그 결과 1978년부터 1998년 사이 등재된 유산의 신청서 상당수는 유산 보존 관련 내용이 미흡합니다.

2005년 수정 운영지침이 효력이 발생하게 된 당시 세계유산위원회는 완성도 검사와 함께 보다 자세한 구성과 부연 설명을 담은 새로운 등재신청서 양식을 공식 승인하였습니다. 1999년부터 신청서에 담긴 정보의 질과 깊이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고 이는 세계유산 등재과정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는 등재된 유산의 보존현황을 개선하고 모니터링을 촉진함으로써 협약 이행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각종 요구가 늘어나면서 등재신청서 준비는 중요하면서도, 한편 여러 요건을 충분히 이해해야 하는 다소 복잡한 과정이 되었습니다. 등재신청 과정 중 지역 주민의 참여는 그들이 해당 유산을 유지 관리하는 데 있어 당사국과 책임을 공유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적극 장려됩니다.

등재신청서는 자문기구의 평가보고서와 함께 위원회가 유산의 세계유산목록 등재를 검토하는 핵심자료입니다. 신청서는 관련 당사국과 국제사회의 합의에 비교될 수 있습니다. 당사국은 자국 영토 내 유산을 최선을 다해 보호, 관리하며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약속합니다. 모든 합의가 그러하듯 신청서는 정확하고 유익하며 완성된 형태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당사국과 국제사회 간 합의의 이행을 담보하는 일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등재과정의 여러 단계에 대한 정보를 담은 등재신청서 준비 관련 매뉴얼을 사용자의 편의에 맞게 구성해 이를 당사국들에 제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유산의 명성과 인식이 날로 확대되면서 세계유산 등재를 추구하는 이면에는 점점 더 많은 이해관계와 동기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전자문(upstream process)과 같은 새로운 절차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시험이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등재신청서를 준비하고자 하는 당사국들의 높아지는 관심을 고려할 때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새로운 타당성을 부여하고 등재신청서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주제를 등장시킨다는 점에서 이 책의 가치는 더욱 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유산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예를 들어 대륙간 유산을 포함해 대규모의 국가간 연속유산 등재신청이 증가하고 있어 관련 보충설명과 실질적인 지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시리즈는 이러한 필요성을 고려해 기획되었으며, 책의 발간은 자문기구와 이 분야 전문가 다수의 도움에 힘입은 바 큼니다. 세계유산을 보호하는 성공적인 등재신청서를 준비하는 데 있어 운영지침을 보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유산센터장
키쇼 라오(2011-2015)

필진 소개

총괄

Duncan Marshall

IUCN

Tim Badman
Bastian Bomhard
Pedro Rosabal
Paul Dingwall

검토 및 기타 필진

Alessandro Balsamo
Gwenaëlle Bourdin
Kristal Buckley
Angel Cabeza
Claudine Déom
Regina Durighello
Phyllis Ellin
Nicolas Faucherre
Zhan Guo

ICOMOS

Duncan Marshall
Susan Denyer

Tilman Jaeger
Luba Janikova
Qiong Lu
Zhou Lv
Webber Nodoro
Christophe Rivet
Michael Turner
Gamini Wijesuriya

이번 책자 발간의 기초가 된 기존의 자연유산 등재안내서와 문화유산 등재안내서 관련 필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연유산 등재신청서

검토

Alessandro Balsamo, World Heritage Centre
Guy Debonnet, World Heritage Centre
Marc Patry, World Heritage Centre
Kishore Rao, World Heritage Centre
Mechtild Rössler, World Heritage Centre
Peter Stott, former World Heritage Centre

Joe King, ICCROM
Gamini Wijesuriya, ICCROM

Tarek Abdulhawa, IUCN
Delwyn Dupuis, IUCN
Elery Hamilton-Smith, IUCN
Kari Lahti, IUCN
Josephine Langley, IUCN
Georgina Peard, IUCN
Pedro Rosabal, IUCN
David Sheppard, IUCN
Kumiko Yoneda, IUCN

Jim Barborak, WCPA
Stephanie Eissing, WCPA
Vinod Mathur, WCPA

세계유산센터 코디네이션

Laura Frank

문화유산 등재신청서

기획

Bénédicte Selfslagh, ICOMOS

필진

Gwenaëlle Bourdin, ICOMOS
Michel Cotte, ICOMOS
Regina Durighello, ICOMOS
Jukka Jokilehto, ICOMOS

Alessandro Balsamo, World Heritage Centre
Mechtild Rössler, World Heritage Centre
Anne Lemaistre, World Heritage Centre

Kristal Buckley, ICOMOS
Alfredo Conti, ICOMOS
Susan Denyer, ICOMOS
Nobuko Inaba, ICOMOS
Jukka Jokilehto, ICOMOS
Edward Matenga, ICOMOS
Bénédicte Selfslagh, ICOMOS

■ 발간사	키쇼 라오(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장)	2
■ 필진 소개		4
■ 머리말	ICOMOS, IUCN	6
■ 서문		8
	안내서 발간의 배경과 개요	
	당사국 간 협력	
	이 책의 독자는?	
1	세계유산과 그 배경	10
	1.1 일러두기	
	1.2 세계유산 등재신청 개요	
	1.3 세계유산 개념 해설	
2	준비	51
	2.1 유산에 대한 기존 정보	
	2.2 팀 구성	
	2.3 지역주민과 기타 이해당사자의 참여	
	2.4 신청서 준비 단계별 진행 및 주요 단계 제안	
3	유산의 정의와 이해	56
	3.1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 속성, 경계	
	3.2 추가 정보	
4	등재신청서의 작성과 준비	94
	4.1 일반 정보	
	4.2 신청양식	
	4.3 추가 정보	
5	평가 과정	125
	5.1 일반	
	5.2 IUCN 평가과정	
	5.3 ICOMOS 평가과정	
	참고자료	130
	관련 기관 정보	135

머 리 말

‘세계유산 등재신청 안내서’는 ICOMOS와 IUCN이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복합유산의 세계유산목록 등재 준비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 책은 2011년 8월 기준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을 기초로 하였으며 이를 보완하는 성격을 갖습니다. 세계유산 등재를 진지하게 준비하고 있는 이라면 누구든 운영지침 최신본을 구해 그 내용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본 안내서는 특히 세계유산협약 이행에 있어 당사국을 지원하고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 유산의 목록으로 세계유산목록이 신뢰성을 갖출 수 있는 방향을 안내하고 관련 지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는 세계유산위원회와 여러 당사국이 요청하는 바와 같이 초기 연구단계, 즉 공식 평가를 위한 신청서 제출 시점에 제공되는 사전절차(upstream) 단계에서 당사국들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등재신청서를 심사하는 자문기구와 ICOMOS, IUCN이 특정 신청서 준비에 직접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당사국들이 세계유산 등재신청 진행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고려하고 이것이 해당 유산의 보존과 지역사회, 여타 관련 당사자들의 안녕 차원에서 가치 있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취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공적인 등재신청서 작성의 최대 적은 준비시간 부족입니다. 참으로 많은 수의 신청서가 비현실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작성됩니다. 등재 준비에 필요한 적절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최소 1년, 신청서를 기술하고 관계자들과 대화하는 데에 또 1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연구가 필요하다면 유산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하고, 새로운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문서화해야 하며 그에 따라 관련 절차가 훨씬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의 목표가 세계유산 등재 성공이라면 유산의 장기적인 보존과 제시를 위한 여건이 마련되어야 현실적인 시간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준비 시간이 충분하지 못해 신청서가 반려 또는 보류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국과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를 좌절하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 신청서 작성에 비현실적인 시간표를 설정하게 만드는 정치적인 약속이 행해지기도 하는데, 이는 평가를 받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등재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 책은 현재의 지식과 활용 가능한 재원을 이용해 당사국들의 등재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세계유산 등재신청서와 관련 운영지침의 해당 부분을 명확한 언어로 강조하고 또 설명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신청서

를 준비하는 전반적인 접근방식, 하나의 유산을 등재하는 데 필요한 결정을 내리기 이전의 준비 작업, 그리고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핵심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책이 신청서의 모든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문기구의 경험에 비춰 많은 신청서에서 전반적으로 준비가 미흡한 부분을 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세계유산기금과 아일랜드 환경유산지방정부부의 지원으로 발간되었음을 밝힙니다. ICOMOS, IUCN 그리고 관련 네트워크의 예산 지원과 자발적인 여러 지원에도 힘입은 바 큼니다.

ICOMOS와 IUCN은 이 책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길 바라며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ICOMOS, IUCN

서 문

안내서 발간의 배경과 개요

본 안내서는 당사국들이 양질의 세계유산 등재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핵심이 된 기초자료는 세계유산협약과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현재 기준 2011년 8월 최신본 참조)으로 이는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운영지침은 세계유산협약의 운영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다. 이 책은 가장 최근 개정된 운영지침에 맞게 활용해야 하며, 운영지침은 세계유산위원회가 개정한다. 이 책에 앞서 운영지침을 반드시 읽어야 하며, 이를 등재신청 준비 과정 전반에 걸쳐 참조해야 한다.

세계유산협약의 운영과 요건에 대한 가장 정확한 내용은 협약 텍스트 그 자체와 운영지침에 들어 있다. 이 책은 어떤 방식에서든 운영지침을 대체하지 않으며 부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줄 뿐이다. 어떤 경우든 협약과 운영지침이 먼저다. 협약(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히브리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과 운영지침(영어, 불어)은 세계유산센터에 요청하거나 그 홈페이지(<http://whc.unesco.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를 준비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행정체계와 문화적 다양성은 신청서에 필연적으로 반영된다. 따라서 신청서를 준비하는 이른바 '레시피'를 제공하거나 바람직한 방식을 추천하는 일은 적절치 않다. 워낙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모든 좋은 신청서에는 가장 적합한 유산을 등재신청하고, 그러한 유산이 신청서상에 제일 효과적인 방식으로 드러나며, 등재신청 절차 자체에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의 보호와 보존, 효과적 인 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을 관통하는 기본적인 원칙이 담겨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KEY MESSAGE

운영지침을 먼저 읽는다.

문화유산 신청서와 자연유산 신청서는 준비 면에서 많은 유사점이 있으면서도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 책의 곳곳에는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에만 특정해 적용되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유념할 점은 문화유산 등재기준과 자연유산 등재기준 둘 사이에 이전에 있던 차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개념은 세계유산협약의 핵심이다. 이는 등재되는 모든 유산의 기준이다. 등재신청서의 근본적인 목적은 어떠한 유산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왜 그러한 유산이 잠정적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가치가 어떻게 지속, 보호, 보존, 관리, 모니터링되고 또한 설명되는지를 이야기하는 데 있다.

이 책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세계유산 등재제도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세계유산의 주요 개념을 간단한 용어로 강조하고 설명한다.
- 신청서 준비에 있어 준비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신청서 준비에 있어 작업의 범위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관련 유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 운영지침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신청서 준비에 대한 소소한 도움을 제공한다.

기존 세계유산 확장에 대한 조연도 일부 담고 있는데, 세계유산 확장은 신규신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당사국 간 협력

세계유산협약은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국제협력을 도모한다. 세계유산목록 등재를 위한 신청서 준비 과정을 통해 많은 협력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 한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에게 제공하는 기술과 재정의 지원
- 월경유산/국가간 유산 등재신청 추진
- 탄탄한 비교분석 진행을 위한 연구
- 공식 제출 전 신청서에 대한 국제적인 범위의 동료검토 진행

세계유산 등재신청은 당사국 간의 경쟁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이는 세계유산협약의 전체 정신에 어긋난다.

이 책의 독자는?

본 안내서는 기본적으로 세계유산 등재신청을 추진하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작성되었다. 잠정목록 준비를 비롯해 기타 다른 유산목록과 관련된 활동에도 유용할 수 있다.

또한 다음의 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다.

- 연방과 중앙 단위 등의 당사국
- 유산 보호/보호구역 담당 관계기관
- 비정부기구
- 지방정부
- 지역사회
- 다양한 기관
- 세계유산 등재신청 추진 관련 훈련을 위한 워크숍이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개인
- 기타 관련 개인

본 안내서는 다음의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

- 자기 학습
- 훈련 워크숍
- 브리핑 및 교육

1 세계유산과 그 배경

KEY MESSAGE

신청서 작성을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고 계획해야 한다.

1.1 일러두기

들어가는 말

세계유산 등재신청 준비는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높은 수준의 만족감과 보상을 주는 경험이 될 것이다. 등재신청 준비에 참여하면 다음과 같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

- 하나의 유산을 이해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알린다.
- 유산의 알려진 가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유산과 세계 자연 및 문화적 주제와의 관계를 가능한다. 이를 통해 넓은 범위의 자연과 인류의 역사, 문화와 발전에서 해당 유산의 위치를 확인하게 된다.
- 해당 유산을 국제적인 범위에서 다른 유사한 유산들과 비교한다.
- 주변 환경 보호를 비롯해 유산의 보호와 보존, 관리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사전 대처하며, 이를 개선할 수 있다.
- 유산의 보호, 보존, 관리에 지역사회와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비롯해 유산에 대한 이해관계의 범위를 인식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할 수 있다.

세계유산에 등재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 당사국과 지역사회는 관련 유산을 가진 세계 여러 나라들 중 가장 중요한 자연, 문화지역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유산에 대해 보다 깊이 인식하고 보호하는 계기가 되며, 해당 유산은 대표적인 국가 보호구역/지정 유산이 될 수 있다.
- 세계유산에 대한 국제적인 이해를 계기로 유산을 보다 잘 보호할 수 있는 국제협력과 공동의 노력을 촉진할 수 있다.
- 기부금과 세계유산기금을 비롯해 자금 등 여러 지원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 국가 혹은 지역유산에 적용할 수 있는 보호, 보존, 관리를 위한 기술과 실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세계유산 등재신청을 진행하는 일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긴 여정이다. 신청서를 준비하는 데는 최소 2년이 걸리며 수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신청서 준비가 잘 되고 조직적으로 일이 진행되면 그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 반면 준비가 부족하면 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신청유산의 성격 또한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가령 연구가 잘 되어 있는 기념물이나 문화유적이거나 복합적인 대규모 자연유산이나 역사도시, 문화경관, 문화경로 등에 비해 훨씬 덜 복잡하고 시간도 적게 소요된다. 후자에 해당하는 유산들은 대개 이해당사자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며 그로 인해 관리체계나 계획이 훨씬 복잡해진다. 반면 관련 주제연구가 미비하다면 적절한 주제적 맥락을 찾는 데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세계유산 등재는 근본적으로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관련된다. 경제발전의 기회를 최우선 동기로 등재절차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세계유산 등재는 모든 범위에서 보존에 관계된 절차를 개선하는, 보다 긴 여정의 시작일 뿐이다. 어떤 유산이 등재에 성공하면, 당사국은 해당 유산의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언제나 보호, 보존, 관리되도록 유산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이다.

등재신청 준비 시점

미디운하(프랑스) – 신청서 준비를 시작한지 2년 만인 1996년 등재된 유산이다. 유산의 길이(360km)나 포함된 지역사회의 규모를 고려하면 상당히 짧은 시간에 등재된 유산이다.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요인은 다음과 같다.

-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집행위원회와 학술위원회
- 신속한 수립
- 위원회 위원들이 등재신청을 추진할 수 있는 지적이고 실질적인 준비와 역량이 갖추어져 있었던 점
- 다양한 공동체들이 등재신청을 물심양면 지원한 점
- 등재신청 준비를 위한 재원이 신속히 마련된 점
- 정부 부처 내 지역 조직이 충분하고 효과적으로 기여한 점
- 효율적인 조정자가 지목되고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이를 수용한 점
- 등재신청 시작부터 충분한 기본정보가 마련돼 있었던 점
- 신청서 작성이 탁월성을 목표로 하는 지적 활동이며 신청서 완성을 위한 관료적 행위가 아님을 모두가 이해하고 있었던 점
- 다양한 정부부처가 등재신청을 위해 협력하고 효율적으로 일한 점



© UNESCO

세계유산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 자료

등재신청을 잘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세계유산 제도와 과정, 특히 등재를 신청할 해당 유산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잘 파악하는 일이다.

숙지가 필요한 참고자료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이들 중 다수는 온라인 혹은 인쇄물로 관련 기관에 이를 요청해 받아볼 수 있다. 각 기관의 연락처는 이 책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다.

책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참고자료들 또한 유용하다.

KEY MESSAGE

신청서 준비를 시작하기 전 여러 참고가 되는 문서를 숙지한다.

세계유산 주요 참고자료	내용
세계유산 일반	
세계유산협약(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1972)	세계유산협약은 세계유산 제도의 근간이다. 등재신청 관련 내용을 비롯해 핵심적인 정의, 개념, 조직의 구성과 과정이 제시되어 있다.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WHC.11/01, 2011년 8월)	운영지침은 세계유산협약 이행에 대한 주요 지침을 담고 있으며, 등재신청 과정을 비롯한 세계유산에 대한 주요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세계유산 주요 참고자료	내용
	<p>또한 참고자료에 나와 있는 추천 자료목록도 운영지침에 수록되어 있다. 이들 내용은 주의 깊게 살펴 보아야 하는데, 특히 특정 유형의 등재신청과 관련된 자료가 있기 때문이다.</p> <p>과거, 그리고 최신 운영지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p> <p>http://whc.unesco.org/en/guidelines/(영어) http://whc.unesco.org/fr/orientations/(불어)</p>
<p>최근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결정문과 회의 요약본</p>	<p>세계유산위원회의 관점에 대한 중요한 정보는 최근 위원회 회의의 결정문과 회의 요약본에서 확인할 수 있다.</p> <p>http://whc.unesco.org/en/sessions/(영어) http://whc.unesco.org/fr/sessions/(불어)</p>
<p>세계유산목록</p>	<p>세계유산목록은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근거로 세계유산위원회가 등재를 결정한 유산이 올라있다. 세계유산목록이 중요한 이유는 이를 통해 등재신청을 고려 중인 유산과 비교가 가능한 다른 나라의 유산을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되는 경우라면 비교분석 시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p> <p>http://whc.unesco.org/en/list/(영어) http://whc.unesco.org/fr/list/(불어)</p>
<p>당사국들의 잠정목록</p>	<p>잠정적으로 세계유산적 가치가 있는 유산의 목록이다. 잠정목록이 중요한 이유는 이를 통해 등재신청을 고려 중인 유산과 비교가 가능한 다른 나라의 유산을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되는 경우라면 비교분석 시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p> <p>http://whc.unesco.org/en/tentativelist/(영어) http://whc.unesco.org/fr/listindicatives/(불어)</p>
<p>주제연구</p>	<p>기존 주제연구가 있다면 이는 등재신청에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된다. 등재를 신청할 유산과 관련된 주제연구가 있는 경우 신청서 중 비교분석 부분을 작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p> <p>당사국은 경우에 따라 신청서 작성 과정의 일부로 미리 특정 주제 분석을 준비한다.</p> <p>ICOMOS가 제공하는 문화유산에 대한 주제연구는 www.icomos.org/studies에서 확인할 수 있다.</p> <p>IUCN이 제공하는 자연유산에 대한 주제연구는 www.iucn.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p>
<p>세계유산 국제전략 자연 및 문화유산 전문가 회의 보고서(1998년 3월 25-29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네덜란드 정부, 1998)</p>	<p>그 밖에 다른 주제연구가 있을 수 있으며, 신청 유산과 관련된 다른 연구가 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p> <p>이 보고서에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관련된 유용한 배경정보, 결론, 권고안이 포함돼 있다.</p> <p>http://whc.unesco.org/archive/amsterdam98.pdf</p>

세계유산 주요 참고자료	내용
<p>자연유산 참고자료</p>	
<p>‘탁월한 보편적 가치 – 세계자연유산 기준’, ‘세계유산목록에 오른 자연유산 등재의 기준에 대한 개요서’(IUCN, 2008b)</p>	<p>IUCN이 제공하는 이 보고서는 자연유산과 관련된 과거 세계유산위원회 등재 결정문을 검토하고 있다.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 측면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해석되고 논의되는 방식과 관련해 이전의 명확한 사례를 보여주는 지침이 되는 매뉴얼로 관련 자료와 결정문을 모았다.</p> <p>http://data.iucn.org/dbtw-wpd/edocs/2008-03.pdf</p>
<p>문화유산 참고자료</p>	
<p>‘세계유산목록: 간극 메우기 – 향후계획’(ICOMOS, 2005a)</p>	<p>세계유산목록과 잠정목록에 올라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ICOMOS 분석 내용은 ‘신뢰성, 대표성, 균형성을 갖춘 세계유산목록을 위한 세계 전략’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다. 이는 ICOMOS가 현재에도 진행하고 있는 분석이며, 유형, 지역, 연대기적, 주제적 측면에서 대표성을 고려한다.</p> <p>이 내용을 참고하면 신청서의 비교분석 내용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전반적으로 대표성이 낮은 범주가 대표성이 충분하거나 과한 범주보다는 성공 가능성이 높다.</p> <p>http://www.international.icomos.org/world_heritage/gaps.pdf(영어) http://www.international.icomos.org/world_heritage_fre/whlgaps.htm(불어)</p>
<p>‘세계유산목록에 오른 문화유산 등재의 기준에 대한 개요서’(ICOMOS, 2008)</p>	<p>ICOMOS가 제공하는 이 보고서는 문화유산과 관련된 과거 세계유산위원회 등재 결정문을 검토하고 있다. 세계유산목록과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 측면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해석되고 논의되는 방식과 관련해 이전의 명확한 사례를 보여주는 지침이 되는 매뉴얼로 관련 자료와 결정문을 모았다.</p> <p>http://whc.unesco.org/en/sessions/32COM/documents/ (WHC.08/32.COM/9 참조)</p>
<p>이코모스기록화센터 작성 주제별 지역별 참고자료</p>	<p>이들 자료 중 많은 수는 아래를 포함한 다수의 유산과 관련이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유산목록에 오른 근대유산(19-20세기)’ ‘세계유산 암각화유적’ ‘세계유산 문화경관’ ‘세계유산 도시유적’ ‘세계유산 인류화석지’ ‘아프리카 세계유산’ ‘아시아태평양 세계유산’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세계유산’ ‘아랍의 세계유산’ ‘세계유산목록에 오른 산업유산과 기술유산’ <p>http://www.international.icomos.org/centre_documentation/bib/index.html</p>
<p>기념물 및 유적지의 보존과 복구에 관한 국제헌장(베니스헌장, 1964)(ICOMOS, 1965)</p>	<p>이 헌장은 문화유산 보존의 지침이 되는 중요한 자료 중 하나이다.</p> <p>http://www.international.icomos.org/charters.htm(영어) http://www.international.icomos.org/charters.htm(불어)</p>

KEY MESSAGE

등재신청팀 관계자 대표를 세계유산위원회에 파견한다.

세계유산 알기 - 세계유산위원회의 업무

세계유산위원회 업무에 익숙해지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세계유산협약과 운영지침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부분적으로 가능하다. 또 앞서 언급했듯 최근 세계유산위원회의 회의 결정 내용과 요약기록을 검토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등재신청 준비팀 관계자 대표가 세계유산위원회에 파견되는 정부 대표단에 포함될 수 있다면 가장 좋다. 위원회 진행과정을 지켜보면 위원회 업무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이 생길 수 있으며, 특히 등재신청서와 보존현황에 대한 심의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유산협약 한 눈에 보기

세계유산협약은 국제연합 회원국들이 체결하는 국제조약이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식별, 보호, 보존, 제시하여 미래세대에 이를 전승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협약 운영지침에 정의된 구체적인 등재기준과 조건을 통해 세계유산목록에 올릴 유산을 식별한다.

협약은 미래의 유적을 식별하는 데 있어서의 당사국의 역할과 유적을 보호, 보존할 당사국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각국은 협약 기준을 통해 자국 영토 내 세계유산을 보호할 뿐 아니라 그들의 자연유산 또한 보호할 것을 서약한다. 또한 당사국들이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보호를 지역의 여러 사업에 포함시키며 관련 유산에 배치할 직원과 서비스를 마련하고 과학기술 차원의 보호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지역사회의 일상생활에 해당 유산이 일정한 역할을 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세계유산기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관리되며 국제지원 재원이 어떤 조건에서 사용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협약에는 당사국들이 그들 세계유산의 보호현황에 대해 세계유산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들 보고서는 세계유산위원회의 업무에도 중요한데, 이는 유산의 상태를 평가하고 구체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해 결정하는 한편 이를 통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세계유산협약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이 개별 국가 뿐 아니라 전 인류에 대체 불가능한 귀중한 자산임을 인식하는 데 뿌리를 둔다. 이 같은 가장 높은 수준의 유산이 쇠락하거나 사라지는 형태로 소실된다면 전 세계 모든 민족의 유산이 빈곤해지는 결과를 낳는다. 이들 유산 중에는 그 탁월함 때문에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로도 칭한다)가 있어 점진적으로 그들을 위협에 빠뜨리는 여러 위협에 대해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고려될 수 있다.

유네스코 회원국들은 전 세계 유산을 적절히 식별, 보호, 보존, 제시하기 위해 1972년 세계유산협약으로 알려진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에 관한 협약'을 채택했다. 협약에 근거해 세계유산위원회와 세계유산기금이 수립되었으며 둘은 1976년부터 이어져오고 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협약 이행에 대한 공식 지침이 되는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을 개발했으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이를 수정한다. 세계유산위원회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식별, 보호, 보존, 제시하여 이를 미래세대로 전달하는 협약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이른바 세계유산목록, 즉 협약의 조건에 맞는 유산목록을 관리한다.

유산을 평가하고 현재 보호, 관리 중인 당사국에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세계유산목록 등재의 기준과 조건 또한 마련되었다. 어떤 유산이 세계유산목록에 오르기 위해서는 해당 유산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는 주장을 세계유산위원회가 받아들여야 한다. 신청서는 세계유산위원회가 해당 유산이 협약의 요건을 충족시키는지를 평

가하는 기준 자료가 되며 특히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운영지침은 어떤 유산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할 때 적용할 핵심적인 검토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 위원회는 유산이 하나 이상의 세계유산 등재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해당 유산에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운영지침 77항).
-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산이 완전성 및/또는 진정성의 조건 또한 충족해야 하며, 해당 유산의 보호를 위한 적절한 보호와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운영지침 78항).

세계유산목록의 유산이 심각하면서도 구체적인 위협에 처했을 때, 위원회는 해당 유산을 위협에 처한 세계유산 목록에 올릴 것을 고려한다. 세계유산목록 등재 근거가 된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파괴되었다면 관련 유산을 세계유산목록에서 삭제하는 안을 검토한다. 현재의 세계유산목록과 위협에 처한 세계유산목록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whc.unesco.org).

협약은 신청유산에 대한 세계유산목록 등재 여부를 결정하는 세계유산위원회의 소관이다. 세계유산위원회에 대한 업무 지원은 사무국인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ICCROM(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 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IUCN(국제자연보존연맹) 등 세 곳의 공식 자문기구가 담당한다.

IUCN은 자연적인 가치를 근거로 등재를 신청한 유산을, ICOMOS는 문화적인 가치를 근거로 등재를 신청한 유산을 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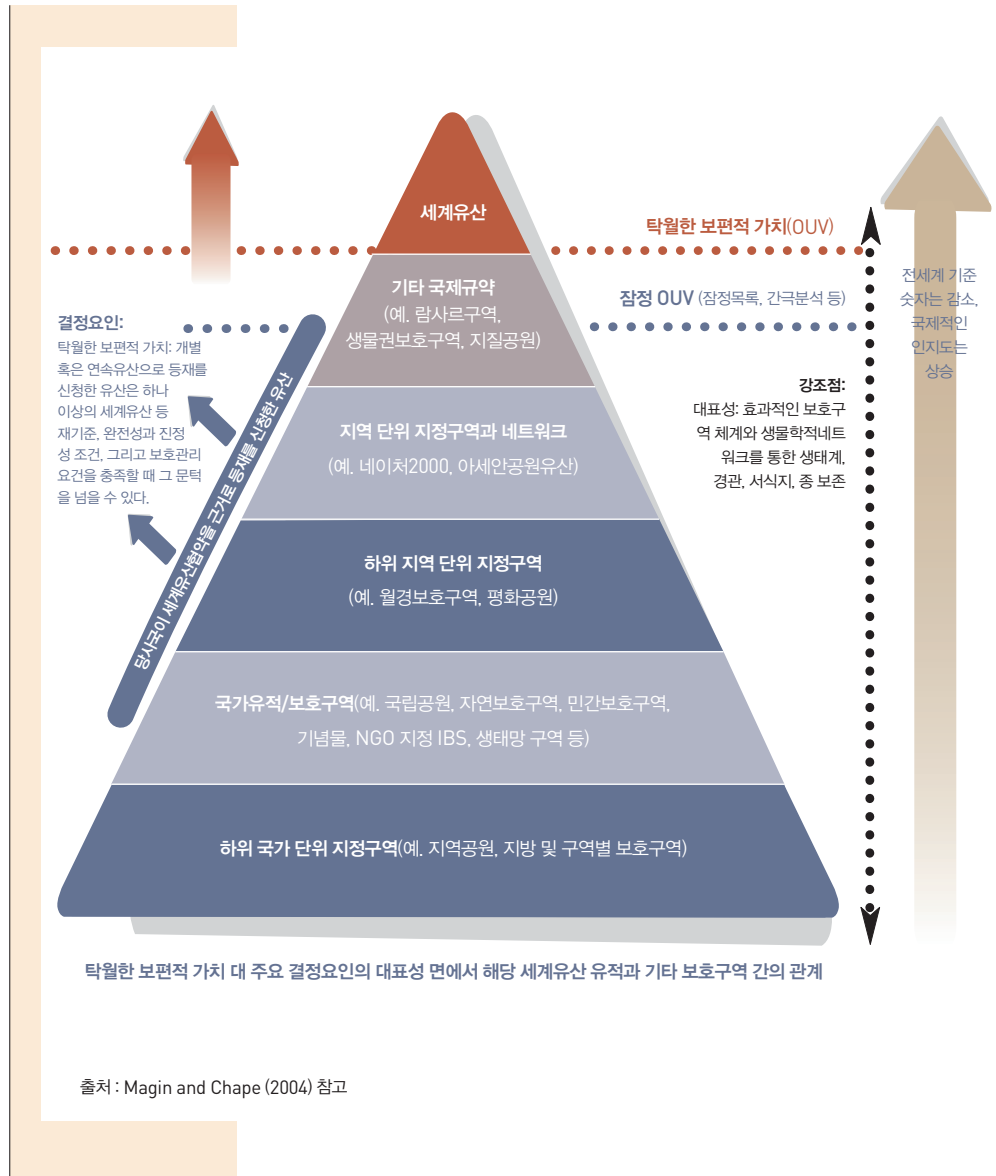
세계유산과 여타 보존 관련 규약

운영지침은 균형성, 대표성, 신뢰성을 갖춘 세계유산목록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지구상의 수많은 생태계와 서식지, 전 세계 모든 문화유산의 대표성을 완벽하게 보장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국가, 지역 단위를 비롯한 여타 국제적인 보호구역/유적 체계와 여러 규약들이 담당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유산을 여타 다른 유형의 보호구역 및 유적과 관련지어 고려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 자연유산과 관련해 UNEP-WCMC와 IUCN이 개발한 다음 그림에는 이들의 관계가 잘 나타나있다. 여기에는 전 세계의 상대적인 수치를 비롯해 보호구역의 세계유산목록 등재 심사 시 핵심적인 기준이 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적용 측면에서 세계유산과 여타 다른 보호구역 유형 및 체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생태계와 경관, 종 보존을 위해 설정된 모든 보호구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지구상의 모든 자연적 특징물도 제시되어 있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다수의 자연보호구역을 보다 잘 보호할 수 있는 여러 정부간(람사르구역, 생물권보호구역, 지질공원) 및 지역 단위의 지정구역이 있지만 세계유산의 지위는 운영지침에 정의된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는 유적만을 대상으로 한다. 세계유산으로서의 잠재력을 고려하는 가장 초기 단계에서 당사국은 그 대안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하며, 보호구역과 국가유산을 인식, 보호, 보존하는 국제, 지역, 국가 단위의 법적장치를 이용하는 상호 연계되고 조정된 접근방식을 개발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국제 및 지역단위의 법적장치의 범위는 보다 제한적일 수 있으나, 거기에 표현된 원칙은 전반적으로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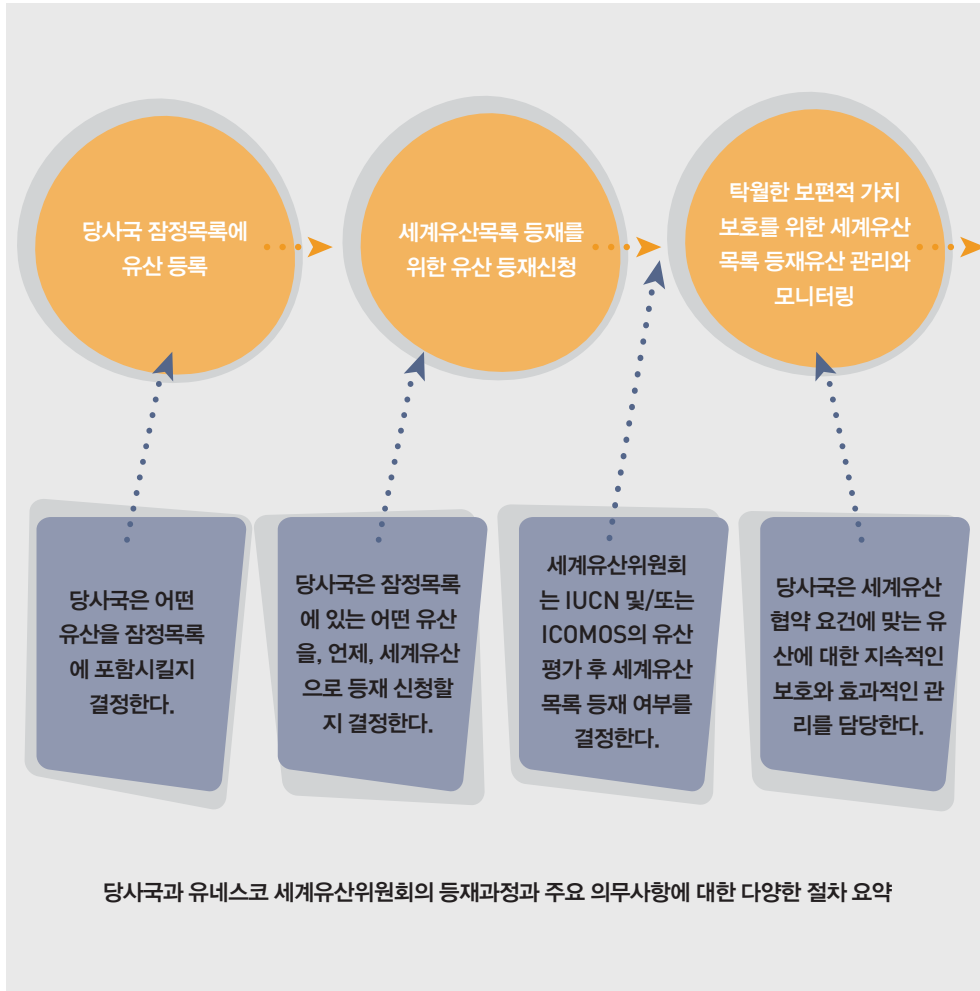


1.2 세계유산 등재신청 개요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과 등재결정 절차는 세계유산협약의 핵심이며, 협약 당사국의 중요한 의무사항이 수록되어 있기도 하다. 의무사항은 다음 세 가지 내용과 관련된다.

- 잠정목록 준비
- 등재신청서 준비
-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보호, 보존, 관리를 위한 등재유산의 효과적인 관리

등재과정은 아래 그림으로 요약되며, 당사국과 세계유산위원회의 역할도 아래에 설명되어 있다.



세계유산협약에 서명한 국가들만이 그들 영토에 있는 유산을 세계유산목록에 포함시키고자 등재를 신청할 수 있다. 등재신청 과정의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잠정목록

등재신청을 원하는 나라가 맨 처음 할 일은 잠정적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문화 및/또는 자연유산으로 세계유산목록 등재에 적합해 보이는 국경 내에 위치한 중요한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의 '목록'을 만드는 일이다 (운영지침 II.C 참조). 그러한 목록이 이른바 잠정목록이며, 여기에는 향후 5-10년 내 등재를 신청할 수 있는 유산을 올린다. 잠정목록에 가능성이 있는 모든 유산을 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는 언제든지 업데이트가 가능하며 당사국은 최소 10년마다 자체 잠정목록을 재검토해 이를 다시 제출하도록 한다.

잠정목록 제출 양식은 운영지침에 나와 있으며 연속된 국가간 유산과 월경유산에 대한 양식도 별도로 있다.

당사국은 모든 등재신청서 제출 최소 1년 전 세계유산센터에 잠정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왜 잠정목록이 중요한가?

세계유산위원회는 해당 유산이 기존 당사국 잠정목록에 올라 있지 않는 경우 세계유산 등재신청을 검토할 수 없다.

- 잠정목록을 통해 연방, 국가, 지방정부와 자산소유자 및/또는 관리자, 지역사회, ICOMOS와 IUCN 지역위원회/ 대표자를 비롯한 NGO 등 관련 이해당사자 간 세계유산이 될 잠재력이 있는 유산과 관련해 사전 자문, 협조, 합의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그러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유용한 여러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 당사국들이 향후 세계적인 중요성이 있는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확인하는 사전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 당사국들이 필요한 유산관리와 보호조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시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전문가들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당사국과 세계유산위원회, 세계유산센터, 자문기구들에 추후 등재를 신청할 수 있는 유산을 알려주는 유용한 기획 도구이다.
- 신청서 준비과정의 일부로 비교분석 진행 시 유용하다.

등재신청서

당사국은 잠정목록을 작성하고 그중 신청유산을 선정함으로써 특정 유산의 등재신청서를 언제 제출할지 계획할 수 있다. 세계유산센터는 신청서 작성 시 당사국에 가능한 한 포괄적인 범위에서 자문과 조언을 제공하고, 꼭 필요한 기록과 지도를 빠뜨리지 않도록 돕는다. 신청서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하며 이곳에서 일차적으로 그 완성도가 확인된다. 신청서가 완성되었다면 센터는 이를 해당 자문기구에 보내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등재기준 선정

세계유산이 되려면 그 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어야하며, 10개의 등재기준 중 최소 하나를 충족하는 동시에 완전성과 진정성 조건, 보호관리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세계유산 등재기준은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 설명되어 있으며, 이는 협약과 함께 세계유산을 운영하는 주된 수단이다. 등재기준과 관련해서는 34-44쪽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위원회는 세계유산 개념의 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등재기준을 정기적으로 수정한다.

제출 및 평가 신청유산 수의 제한

당사국은 제출 가능한 신청서의 수와 위원회 회의 중 검토하는 신청서의 수를 제한하는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현재 위원회의 우선순위는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숫자 간 적절한 균형을 바람직한 방식으로 유지하는 데 있다.

일정

운영지침에는 신청서 제출과 평가의 구체적인 일정이 나와 있으며 당사국과 자문기구 관련 내용을 규정한다(운영지침 168항). 마감일은 엄수해야 하며 협상은 불가능하다.

자문기구

신청유산은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그 역할을 위임받은 두 개의 자문기구 중 하나 또는 두 곳 모두에서 독립적으로 평가된다. 문화유산의 경우에는 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자연유산의 경우에는 IUCN(국제자연보존연맹)이 담당한다. 세 번째 자문기구는 ICCROM(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으로, 문화유적에 대한 보존과 모니터링, 훈련, 역량구축 활동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정부간 기구이다.

세계유산위원회

일단 유산에 대한 등재신청과 평가가 이루어지면, 해당 유산의 등재에 대한 최종 결정은 정부간 기구인 세계유산위원회가 내린다. 즉, 1년에 한 번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어떤 유산을 세계유산목록에 올릴지가 결정되는 것이다. 유산을 등재하거나 등재하지 않는다는 결정 외에도 위원회는 등재신청에 대한 보류 또는 반려 결정을 내려 관련 당사국에 유산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하기도 한다.

세계유산센터

세계유산센터(WHC)는 세계유산협약 사무국이자 세계유산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관장하는 유네스코 담당조직이며, 조정자 역할을 하는 곳이다. 센터는 다양한 방식의 등재신청 준비를 통해 당사국을 돕는다. 성공한 등재신청 사례나 참고할 만한 관리상의 내용, 법적근거가 될 만한 사례를 제공하며, 지도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문화경관이나 도시, 운하, 도로유산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등재신청을 비롯해 연속유산, 월경유산 등재신청 등을 자세히 안내한다. 센터는 자문기구를 비롯해 다른 여러 기관과 협력해 신청서 준비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한다. 사무국에 신청서 초안을 제출하면 그에 대한 의견과 방향을 당사국에 알려주기도 한다. 센터는 세계유산목록과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는 역할도 한다. 공식 신청서가 제출되면 센터는 그 완성도를 확인하고, 완성된 신청서임이 확인되면 이를 해당 자문기구에 전달한다. 신청서가 미완성이라고 판단하면 당사국에 이를 어떻게 완성해야 하는지도 안내한다.

1.3 세계유산 개념 해설

이 항에서는 세계유산에 대한 정의와 등재기준, 유산 유형을 비롯해 세계유산의 핵심 개념을 설명하고자 한다.

정의 –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

문화유산

세계유산협약에서는 문화유산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KEY MESSAGE

신청할 문화유산의
종류를 명확히 한다.

- **기념물**: 건축물, 기념비적 조각과 회화, 고고학적 성격의 유물 및 구조물, 금석문, 혈거지, 그리고 역사, 예술 또는 학술의 관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여러 요소의 복합체
- **건물군**: 독립되거나 연결된 건물들의 군집체로서, 그의 건축, 동질성 또는 경관에서의 장소로 인해 역사, 예술 또는 학술의 관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것
- **유적지**: 인간의 소산 또는 자연과 인간의 합작품, 그리고 고고학적 유적을 포함한 지역으로서 역사, 미학, 민족학 또는 인류학의 관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것(제1조)

유산 중에는 위의 정의를 하나 이상을 충족시키는 경우도 있다(예, 기념물이면서 건물군인 경우).

위의 정의는 1972년 개발되었으며 문화유산 개념은 이후 확장되었다. 또한 문화유산의 다양성을 수용하기 위해 그 해석이 매우 폭넓게 이루어졌다.

운영지침에는 문화경관과 역사도시, 도심지, 운하유산, 도로유산에 대한 정의도 들어있다(부록 3). 문화경관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추가로 다룬다.

아래 세계유산목록에 올라있는 유산들을 통해 문화유산의 범위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유산에 대한 설명과 사진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것이다).

암의 첨탑과 고고 유적(아프가니스탄)

건축물과 고고 유적이다. 12세기에 조성된 첨탑의 높이는 65미터에 이르는데, 하늘을 향해 솟구치는 우아한 모습이다. 탑의 윗부분은 푸른색 타일과 함께 정교한 벽돌 문양이 새겨져 있다. 이 지역의 건축적, 미적 전통의 정점을 대표하는 유산으로 그 건축과 장식은 주목할 만하다. 구어 지방 중심부의 높은 산들 사이의 깊은 계곡이라는 극적인 주변 환경이 탑의 건축적인 효과를 한층 더 끌어올리고 있다.



© UNESCO / Mario Santana

수쿠르 문화경관(나이지리아)

아랫마을이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의 히디(촌장)의 궁, 계단식 경작지, 성스러운 상징물들, 과거 번성했던 제철업이 남긴 광범위한 여러 유물로 이루어진 유산으로, 한 사회와 그 영적, 물질적 문화를 표현한 물리적 대상들이 놀라울 만큼 그대로 잘 남아있는 곳이다.



© UNESCO

리장 옛 시가지(중국)

건물군 유산이다. 상업적, 전략적 요충지였으나 평탄하지는 않았던 지형에 맞게 완벽하게 조성된 유산으로 높은 수준의 역사적인 도시경관과 진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건축적인 면에서도 수세기에 걸쳐 여러 문화권의 다양한 요소들이 섞여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대단히 복잡하면서도 기발한 측면이 있는 오래된 급수체계를 갖고 있는데, 지금도 실제 운영 중이다.



© Fiona Starr

에센의 즐베레인 탄광 산업단지(독일)

건물군과 고고 산업유적이다. 노스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에 위치하며, 옛 탄광산지의 기반 시설과 건축적으로 뛰어난 가치가 있는 20세기에 지어진 몇몇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150년 넘게 필수적인 산업으로 기능한 탄광산업의 발전과 쇠락을 뚜렷이 보여주는 실질적인 증거가 되는 유산이다.



© Heike Oevermann

리오 핀투라스 암각화(아르헨티나)

기념비적인 회화 작품 유적이다. 뛰어난 동굴미술 유물군으로 9,500~13,000년 전 조성되었다. 동굴에 있는 사람 손 모양의 그림에서 그 이름(‘손의 동굴’)을 따왔으며, 이 지역의 흔한 야생 라마인 과나코를 비롯한 여러 동물, 그리고 사냥장면을 묘사한 그림도 많다. 그림을 그린 사람들은 19세기 유럽 이주자들이 발견한 파타고니아 지방의 수렵, 채집 공동체 원주민의 조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 UNESCO

히로시마 평화 기념관(원폭돔)(일본)

히로시마 평화 기념관(원폭돔)은 1945년 8월 6일 첫 원자폭탄이 터진 곳에 남아있는 유일한 건물이다. 히로시마 시를 비롯한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폭격 직후의 모습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다.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파괴적인 무기의 냉엄하고도 강력한 상징일 뿐 아니라 세계 평화, 그리고 핵무기의 궁극적 폐기에 대한 염원을 보여주는 유산이기도 하다.



© UNESCO

파도바 식물원(이탈리아)

인간의 소산인 유적이다. 세계 최초의 식물원은 1545년 파도바에서 만들어졌다. 세계를 상징하는 둥근 모양의 작은 땅 주변을 고리 모양의 호수가 둘러싸고 있는, 원래의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는 유산이다. 일부 건축적(장식이 있는 입구와 난간), 실용적(펌프시설, 온실) 요소들이 이후 추가되었다. 과학 연구센터라는 애초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 UNESCO

자연유산

세계유산협약에서는 자연유산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물리적·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이러한 생성물의 집합체로 구성된 자연의 특징물로서, 미학이나 학술의 관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것
- 지질학적·지형학적 생성물, 그리고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 종의 서식지를 이루는 명확하게 구획된 지역으로 학술 또는 보존의 관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것
- 자연 유적지 또는 명확하게 구획된 자연 지역으로, 학술, 보존 또는 자연미의 관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것

아래 세계유산목록에 올라있는 유산들을 통해 문화유산의 범위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가르마타 국립공원(네팔)

사가르마타는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산(8,848m)을 중심으로 장관이 펼쳐지는 여러 산봉우리와 빙하, 깊은 계곡이 있는 특별한 지역이다. 눈표범, 레서판다 같은 여러 희귀종 발견된다.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는 세르파들이 이곳에 대한 관심을 쏟는다.



© UNESCO/J.M. Gasseid

일롤리사트 얼음 피오르(덴마크)

북극권에서 북쪽으로 250km 떨어진 그린란드 서해안에 위치한 일롤리사트 얼음 피오르는 그린란드 빙모(ice cap)가 바다에 닿는 몇 안 되는 빙하 중 하나인 세르메크 쿠알레크의 바다 어귀이다. 세르메크 쿠알레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하루 19m) 왕성한 활동을 하는 빙하 중



© M&G Therin-Weise

하나이다. 연간 35km³의 얼음이 분리되는데 이는 그린란드 전체 빙하의 10%에 해당하며 이는 남극 이외 다른 어떤 빙하보다 많은 양이다. 250여년에 걸친 이곳 빙하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와 만년설 빙하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거대한 빙상과 급속히 이동하는 빙류가 빙하로 뒤덮인 피오르로 떨어져 나가면서 내는 굉음은 극적이고도 장엄한 풍광을 연출한다.

조긴스 화석 절벽(캐나다)

조긴스 화석 절벽은 노바스코샤(동부 캐나다) 해안을 따라 위치한 689ha 면적의 고생물 유적으로 석탄기(3억5천 4백만-2억9천만 년 전) 화석이 풍부해 '석탄기의 갈라파고스'로 불린다. 이곳의 암석은 지구 역사상 석탄기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그 시기 육상생물의 가장 완벽한 화석 기록과 함께 펜실베이



© N.S. Dept. of Tourism, Culture and Heritage/ Walley Hayes

아 지층(3억 1,800만-3억 3백만 년 전)의 가장 풍부하고 폭넓은 기록을 갖고 있다. 초기 동물과 그들이 살았던 우리의 유해와 흔적이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 14.7km 길이의 해안 절벽과 낮은 절벽, 납작한 바위, 해변이 있는 유적은 하구의 만, 범람원 열대우림, 민물 호수가 있는 산불에 취약한 산림이 있는 총적평야 등 세 가지 생태계를 아우른다. 96속 148종의 화석과 20종의 발자국과 함께 이들 세 가지 생태계에 살던 화석이 매우 풍부하게 남아있다. 지구 역사상 중요한 시대를 대변하는 뛰어난 사례를 간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유산목록에 오른 유적이다.

말펠로 동식물 보호 구역(콜롬비아)

콜롬비아 해안에서 506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유적은 말펠로 섬(350ha)과 주변 해양 환경(857,150ha)을 포함하고 있다. 대규모 해양 공원인 이곳은 동태평양 열대 지역에서 가장 큰 어로 금지구역으로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 생물종의 중요한 서식처이자 대규모 군락을 이룬 다양



© UNESCO/Wes Lefèvre

한 해양생물종의 주요 영양 공급원이 되고 있다. 상어, 자이언트 그루퍼, 새치의 '보고'이자 쉽게 발견되지 않는 심해 상어의 한 종(short-nosed ragged-toothed shark)이 목격된 몇 안 되는 곳 중 하나이다. 뛰어난 자연미를 자랑하는 가파른 절벽과 동굴이 있어 세계 최고의 다이빙 장소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곳의 깊은 바다는 동물들의 자연적인 행동습성이 유지되는 곳으로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아 중요한 대형 포식자와 원양종(예, 200마리의 귀상어, 1,000여 마리의 미흑점상어, 고래상어, 참치 등)의 서식지 역할을 한다.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호주)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는 호주 북동부 해안에 위치하며 뛰어난 다양성과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세계에서 가장 큰 산호초를 품은 지역으로 400종의 산호초와 1,500종의 어류, 4,000종의 연체동물이 살고 있다. 멸종위기에 처한 듀공(‘바다소’)과 바다거북 등의 서식지로 과학적으로 대단히 흥미로운 지역이다.



© UNESCO/J. Thorsell/IUCN

비룡가 국립공원(콩고민주공화국)

비룡가 국립공원(79만 ha)은 늪지와 스텝에서 고도 5천m가 넘는 르웬조리 빙원까지, 화산 비탈의 웅암 평원에서 사바나에 이르기까지 뛰어난 다양성을 자랑하는 여러 서식지로 이루어져 있다. 산고릴라가 발견되는 곳이며, 하천에는 2만여 마리의 하마가 살고 있다. 시베리아에서 온 철새가 겨울을 나는 곳이기도 하다.



© UNESCO/Jan Redmond

복합유산

운영지침은 협약 제1조 및 2조에 명시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관한 정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족시키는 유산을 복합유산으로 정의하고 있다(46항).

세계유산목록에는 다음과 같은 복합유산이 있다.

티칼 국립공원(과테말라)

정글 한가운데 웅장한 초목으로 둘러싸인 티칼 국립공원은 기원전 6세기부터 기원후 10세기 사이 마야 문명의 중요한 유적 중 하나이다. 제례가 이루어진 중심지에는 화려한 사원과 궁, 경사로로 접근 가능한 광장이 있다. 거주지의 흔적이 주변 외곽에 흩어져 있다.



© B. Doucin/Lalaité

타실리 나제르(알제리)

지질학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형태인 달 모양의 기이한 경관 내에 위치한 유적으로 전 세계 선사시대 동굴예술이 군집을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유산 중 하나이다. 1만 5천 점의 그림과 조각을 통해 기원전 6천년부터 기원후 1세기까지 사하라 사막 주변 지역의 기후변화와 동물의 이주, 인간 생활의 진화를 엿볼 수 있다. 지질학적으로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며, 침식된 사암이 '바위 숲'을 이루고 있다.



© UNESCO/Bousquet

문화유산의 정의

기념물

협약의 문화유산 항목 아래 기념물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가 나와 있다. 아래는 기념물에 해당하는 세계유산이다.

자유의 여신상(미국)

기념비적인 조각 작품이다. 프랑스 조각가 프레데리크 오귀스트 바르톨디가 구스타브 에펠(철제 프레임 담당)과 함께 파리에서 제작한 작품으로 1886년 프랑스가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 선물한 것이다. 이후 뉴욕항 입구에서 미국으로 오는 수백만 명의 이민자들을 환영하고 있다.



© UNESCO / Graciela Gonzalez Brigas

타지마할(인도)

건축물이다. 무굴 제국의 황제 샤자한이 사랑하는 아내를 추모하기 위해 1631-1648년 아그라에 축조한 웅장한 흰 대리석 묘로 인도 이슬람 예술의 보석으로 꼽힌다.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세계유산의 걸작이다.



© E. de Gracia Camara

건물군

협약의 문화유산 항목 아래 건물군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가 나와 있다. 운영지침도 역사도시와 도심의 맥락에서 도시 건물군을 정의하고 있다(부록3). 아래는 건물군에 해당하는 세계유산이다.

아이트 벤 하두의 크사르(모로코)

크사르는 높은 벽으로 둘러싸인 흙으로 만든 건물군으로 사하라 주민들의 전통적인 주거지이다. 방 어벽 안쪽에 집들이 밀집해 있으며 귀퉁이마다 망루를 세워 이를 보강했다. 우아르자자테 지방의 아이트 벤 하두는 남부 모로코 건축의 뛰어난 사례이다.



© UNESCO / Mario Santana

몰타의 거석 신전(몰타)

몰타 섬과 고초 섬에서는 7개의 거석 신전이 발견되었는데, 이들은 제각기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고초 섬에 있는 간티아의 2개 신전은 거대한 청동기 구조물로 이목을 끈다. 몰타 섬의 하가르 킴, 므나이드라, 타르지엔, 스크르바, 타하그라트 신전들은 건축적으로 독특한 걸작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당시 축조자들의 한정된 자원 때문으로 보인다.



© UNESCO / Margarita Gonzalez Lombardo

타하그라트, 스크르바 신전 구역에서는 몰타 신전 건축의 전통이 어떻게 계승되어 왔는지 확인할 수 있다.

유적지

협약 내 문화유산 항목 아래 유적지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가 나와 있다. 운영지침도 특정 유산 유형에 대한 지침을 정의하고 있다(부록3). 아래는 유적지에 해당하는 세계유산이다.

팔미라 유적(시리아)

고고 유적이다. 팔미라는 다마스쿠스 북동쪽 시리아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로 고대 세계의 가장 중요한 문화 중심지 중 한 곳인 거대 도시의 기념비적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다. 1-2세기 여러 문명의 교차로에 위치했던 팔미라의 예술과 건축은 그 지역 전통과 페르시아의 영향에 그리스 로마의 기술이 더해져 형성되었다.



© E. de Gracia Camara

탁실라(파키스탄)

고고 유적이다. 탁실라는 사라이달라 신석기 무덤에서 시르캅(기원전 2세기) 성벽과 시르수흐 도시(1세기)에 이르기까지 페르시아, 그리스, 중앙아시아의 영향을 번갈아 받았으며 기원전 5세기에서 기원후 2세기까지 불교 학습의 중요한 중심지였던 인더스 유역 도시의 다양한 발달 단계를 보여주는 곳이다.



© UNESCO / F. Bandarin

문화경관

운영지침은 협약 제1조가 정의한 '자연과 인간의 합작품'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문화경관을 정의하고 있다(47항).

문화경관을 위한 단일한 세계유산 등재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문화유산 기준 중 문화경관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설명하는 항목을 활용하면 된다.

문화경관에는 주로 다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 인간에 의해 의도적으로 설계, 조성된 경관
- 유기적으로 진화한 경관
- 연상적 문화경관(운영지침 부록3)

여러 유산이 위 유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며 겹치는 경우도 있다.

이는 협약의 역동적인 측면이며 관련 개념 또한 더욱 풍부해지고 있다. 이는 유산관리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ICOMOS는 세계유산 문화경관에 대한 주제별 참고자료를 작성했으며 이는 www.international.icomos.org/centre_documentation/bib/index.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문화경관에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다.

설계, 조성된 경관: 참파삭 문화경관 내 왓 푸 사원과 고대 주거지(라오스)

왓 푸 사원을 포함한 참파삭 문화경관은 천 년이 넘는 시간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잘 보존된 계획된 문화경관이다. 약



© UNESCO / R. Engelhardt

10km에 걸쳐 사원과 신전, 급수시설을 기하학적으로 배치하고 산 정상에서 강둑에 이르는 축을 이용해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힌두교의 관점에서 표현했다. 메콩강 인근 계획도시 두 곳과 푸카오 산 또한 유산구역에 포함된다. 전체적으로 5-15세기 주로 크메르제국과 연관된 시기의 발전상을 잘 보여주는 유적이다.

유기적으로 진화한 경관: 코르딜레라스의 계단식 논(필리핀)

이푸가오 고지대 논은 지난 2천 년간 산 능선을 따라 조성되었다. 수 세대에 걸쳐 전해져 내려온 지식의 결실, 그리고 신성한 전통과 섬세한 사회적 균형에 대한 표현은 인류와 환경 간의 조화를 표현한 절경을 만들어냈다.



© UNESCO / Feng Jing

연상적 문화경관: 울루루-카타 추타 국립공원(호주)

과거 울루루(에어스록-마운트울가)국립공원이라 불렀던 이 유산은 호주 중부의 거대한 붉은 모래 평원에 압도적인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는 웅장한 지질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거대한 단일암석인 울룰루와 울루루 서쪽의 바위 돔 카타 추타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인간 사회의 전통적인 신앙 체계에 해당한다. 울루루-카타 추타는 전통적으로 아난구 원주민들이 소유해 왔다.



© Emmanuel Pivard

자연유산의 정의

물리적 ·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이러한 생성물의 집합체로 구성된 자연의 특징물

협약의 자연유산 항목 아래 이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가 나와 있다. 아래는 여기에 해당하는 세계유산이다.

중국 남부 카르스트(중국)

중국 남부 카르스트는 윈난, 구이저우, 광시 지방을 중심으로 50만km²에 걸쳐 있으며 열대 습윤에서 아열대에 이르는 세계적으로 장관을 이루는 카르스트 경관 중 하나이다. 바위 숲 스린은 최상의 천연 경관으로 꼽히며, 침상이 있는 다른 카르



© UNESCO / Jim Thorsell

스트 경관에 비해 훨씬 광범위한 원추모양을 갖고 있다. 그 모습과 변화무쌍한 색이 높은 다양성을 띠고 있어 세계적인 참고사례가 되고 있다. 리보의 원추 카르스트와 탑 카르스트 또한 유형적인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참고가 되고 있으며 독특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한다.

캄차카 화산군(러시아연방)

높은 밀도의 활화산과 다양한 유형, 넓은 범위의 특징물이 분포하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화산 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6개 구역이 연속유산을 이루고 있는 이 유산에는 캄차카 반도의 화산 특징물 다수가 포함되어 있다. 활화산과 빙하가 서로 어우러지는 모습은 역동적인 장관을 연출한다. 세계적으로 가장 다양한 연어종이 살고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해달, 불곰, 참수리의 집중 분포지가 있는 등 최고의 생물종 다양성을 보유하고 있다.



© UNESCO / Guy Debonnet

지질학적 · 지형학적 생성물, 그리고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 종의 서식지에 해당하는 명확하게 구획된 지역

협약의 자연유산 항목 아래 이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가 나와 있다. 아래는 여기에 해당하는 세계유산이다.

오카피 야생동물 보호지역(콩고민주공화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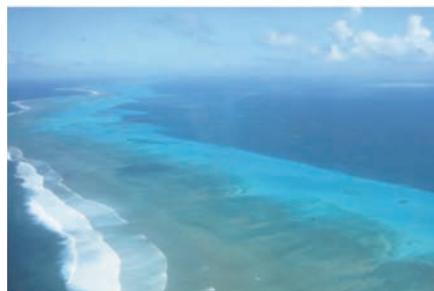
오카피 야생동물 보호지역은 콩고민주공화국 동북부에 위치한 이투리 산림의 1/5을 차지한다. 콩고 강 유역 중 일부는 보호지역과 숲에 해당하는데, 이곳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배수체계 중 하나로 꼽힌다. 보호지역에는 멸종 위기에 처한 영장류와 조류가 살고 있으며, 야생에 살고 있는 3만 마리의 오카피 중 5천여 마리가 이곳에서 서식한다. 이투리 강과 에플루 강의 폭포 등이 있어 뛰어난 경관을 자랑한다. 보호지역에는 전통적인 유목 부족인 음부티족과 에페족의 사냥꾼들이 거주하고 있다.



© Eric Loddé

뉴칼레도니아 섬의 석호: 다양한 산호초와 생태계 (프랑스)

프랑스령 뉴칼레도니아 섬의 다양한 산호초와 관련 생태계를 대표하는 6개 해양구역으로 이루어진 연속유산으로 세계 3대 산호초 군락으로 꼽힌다. 탁월한 자연미를 자랑하는



© Emmanuel Legr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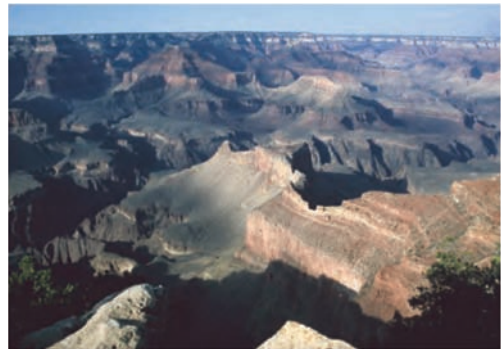
석호가 있다. 뛰어난 다양성을 보이는 여러 산호종과 어류가 있으며 맹그로브에서 해초에 이르는 다채로운 서식지에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다양성을 자랑하는 산호초 구조가 집중 분포한다. 뉴칼레도니아의 석호는 그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어 다수의 대형 포식자들과 거대 어류 여러 종이 살고 있다. 이들은 거북, 고래, 그리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개체수가 살고 있는 듀공 등 멸종 위기에 처한 여러 상징적인 해양 생물들의 서식처가 되고 있다.

자연 유적지 또는 명확하게 구획된 자연 지역으로, 학술, 보존 또는 자연미의 관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곳

협약의 자연유산 항목 아래 이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가 나와 있다. 아래는 여기에 해당하는 세계유산이다.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미국)

콜로라도 강의 침식 작용으로 조성된 그랜드 캐니언(약 1,500m 깊이)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경관을 가진 협곡이다. 애리조나 주에 위치하며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을 가로지른다. 이곳의 수평 단층은 20억 년의 지질학적 역사를 거슬러 올라간다. 선사시대의 가혹한 환경에 적응해 온 인간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 David Geldhof

하롱베이(베트남)

통킹 만에 위치한 하롱베이에는 1,600여개의 섬이 있으며 석회암 기둥들로 이루어진 바다가 장관을 이룬다. 가파른 자연 조건 때문에 대부분의 섬에 사람이 살지 않으며 인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탁월한 경관적 아름다움과 함께 생물학적으로도 상당히 흥미로운 곳이다.



© B. Doucin/L. Lalaïté

주요 용어 해설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

세계유산협약은 전 인류의 유산에 해당하며, 이를 보호해 미래세대로 전승할 만한 가치가 있으며 전 인류에 중요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유적'을 인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운영지침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란 국경을 초월할 만큼 독보적이며 현재와 미래 세대의 전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문화 및/또는 자연적 중요성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49항).

이러한 정의는 유산의 세계유산목록 등재기준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등재기준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설명한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산이 완전성 및/또는 진정성의 조건 또한 충족해야 하며, 해당 유산의 보호를 위한 적절한 보호와 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운영지침 78항, II.E 완전성과 진정성 관련 항 참조).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 신청서의 핵심이며,
- 평가가 이루어지는 부분이며,
- 유산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어야 하는 근거이자,
- 유산의 보호, 보존, 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세계유산위원회는 2007년부터 세계유산목록 등재 시점에 해당 유산에 대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기술문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전에 등재된 다수의 유산에 대해서도 해당 기술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이들 기술문은 현재 위원회 업무의 중심이며, 등재된 각각의 유산이 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관련 유산이 어떻게 등재기준과 함께 진정성, 완전성, 보호, 관리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요약해 설명한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기술문(SoOUV)은 유산의 전 생애를 아우른다.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단 채택하면 그 SoOUV는 아래에 대한 참고자료가 된다.

- 당사국과 유산관리자의 모니터링
- 정기보고
- 소급모니터링, 보존현황 보고
-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목록 등재
- 세계유산목록에서의 유산 삭제 가능성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이해하는 데 있어 주제와 주제적 틀은 중요하다. ‘세계유산 세계전략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전문가회의 보고서(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네덜란드 정부, 1998)’와 ‘세계유산목록: 간극 메우기 - 미래를 위한 실행계획(ICOMOS, 2005a)’을 참고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특별한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문화 및/또는 자연적 중요성이다. 유산의 가치에는 지역 혹은 국가적 차원과 같은 다른 차원의 유산적 가치가 존재한다. 이 책에서 사용하는 ‘가치’ 혹은 ‘중요성’이라는 용어는 주어진 맥락에 따라 이해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고, 국가나 지역단위의 유산처럼 다른 차원을 언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속성 또는 특징물

속성이란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연관되거나 이를 표현하는 유산의 여러 측면을 의미한다. 속성은 유형적일 수도 무형적일 수도 있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속성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다.

- 형태와 디자인
- 재료와 물질
- 용도와 기능
- 전통, 기법, 관리체계

- 위치와 주변 환경
- 언어, 다른 형태의 무형유산
- 정신과 감정(82항)

이는 지침이 되는 목록이다. 특정 유산의 속성은 반드시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기술문과 등재기준의 근거에 대한 설명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속성은 진정성과 완전성을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며 보호, 보존, 관리의 중심이 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자연유산의 경우 속성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지만 ‘특징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보다 일반적이다. 자연유산의 속성에는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 시각적 또는 미적 중요성
- 물리적 특징물이나 자연적 서식지 범위의 규모
- 물리적 또는 생태적 과정의 온전함
- 자연스러움, 자연적 시스템의 온전함
- 희귀종 개체수의 생존
- 희귀성

완충구역

완충구역은 세계유산 유산구역 밖과 그 경계에 인접한 구역으로 해당 유산의 보호, 보존, 관리, 완전성, 진정성,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는 명확하게 구획된 지역이다.

완충구역은 등재된 유산의 일부로 간주하지 않지만 그 경계와 유산 관리 측면에서 그 내용은 당사국이 유산을 제시하는 시점에 평가, 승인, 공식 기록되어야 한다.

완충구역이 정해지면 해당 구역은 세계유산 유산구역의 보호, 보존, 관리에 대한 당사국의 노력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보아야 한다. 완충구역의 기능은 세계유산 유산구역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속성 보호에 필요한 보호와 보존, 관리 측면의 다양한 유형과 수준을 반영해야 한다.

완충구역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82-85쪽에는 완충구역의 몇 가지 예가 제시되어 있다. 완충구역에 대한 참고할 만한 유용한 자료에는 ‘세계유산과 완충구역, 세계유산과 완충구역에 대한 국제전문가회의, 스위스 다보스, 2008년 3월 11-14일(Martin and Piatti, 2009)’이 있다.

비교분석

비교분석에서는 국내 및 국제적 맥락에서 신청유산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이를 위해 해당 유산을 세계유산이든 아니든 비슷한 유산과 비교해야 한다. 비교를 통해 신청유산이 여타 유산과 어떤 점에서 유사한지, 그러면서도 신청유산이 뛰어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비교분석에 대해서는 67-73쪽에서 보다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유산구역

유산구역이란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육상이나 바다지역이다.

이전에는 유산구역을 설명하기 위해 '핵심구역'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는 과거의 용어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앞으로는 늘 '유산구역'으로 불러야 한다.

주변 환경

주변 환경이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한 부분이거나 필수적인 부분이라면 이는 등재된 유산구역의 일부이거나, 광범위한 경관처럼 경우에 따라 완충구역에 포함되어야 한다. 주변 환경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감상에 도움은 되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기여하지는 않는 경우라면, 이는 완충구역에 포함시키거나 다른 형태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이코모스의 '유산 건조물, 유적 및 유적지구 주변 환경에 관한 시안 선언문(2005b)'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유산 건조물, 유적 또는 유적지구의 주변 환경은 유산의 중요성과 그 독특한 성격의 일부이거나 여기에 기여하는 직접적 그리고 확장된 환경으로 정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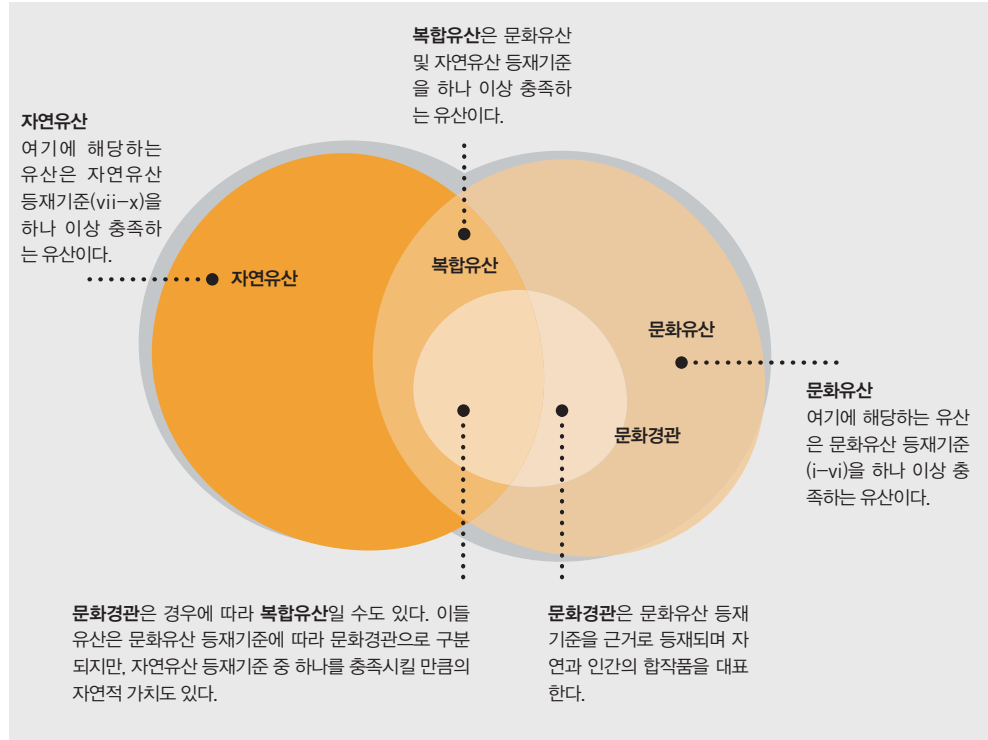
주변 환경은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측면을 넘어 자연과의 상호작용을 포함한다. 즉 과거 또는 현재의 사회적 혹은 영적 관행, 관습, 전통지식, 활용이나 활동을 비롯해 역동적인 문화, 사회, 경제적 맥락을 비롯해 공간을 창조했고 또한 형성하고 있는 여타 형태의 무형문화유산적 측면을 포괄하는 것이다.

주변 환경과 연관된 개념과 요건에 대해서는 85-86쪽에서 더 다룰 예정이다.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복합유산의 관계, 그리고 문화경관

복합유산과 문화경관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복합유산은 등재기준(i)-(vi) 중 최소 하나, 등재기준(vii)-(x) 중 최소 하나, 즉 두 가지 기준을 근거로 등재된다. 복합유산의 경우 양쪽의 등재기준을 각각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문화경관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독립적으로 평가되는 문화 또는 자연유산의 특징이 아니라 문화와 자연 간 상호관계에서 비롯된다. 문화경관은 문화유산 등재기준을 근거로 식별한다. 그러한 유산 중에는 자연적 가치가 있는 유산도 있으나 대개는 자연유산 기준을 근거로 등재 근거를 설명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유산이라면 복합유산과 문화경관으로 등재된다. 아래 그림은 이러한 관계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복합유산 중에는 자연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가 함께 있으며 상호 의존적인 경우도 있다. 또 경우에 따라 그러한 가치가 상호 의존하지는 않고 단순히 지리적 위치만 공유할 수도 있다.



세계유산 등재기준

KEY MESSAGE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입증하는 관련있는 등재기준만을 선택한다.

운영지침에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열 가지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77항). 등재기준(i)-(vi)은 문화유산과 연관되며 따라서 ICOMOS가 평가한다. 나머지 등재기준(vii)-(x)은 자연유산과 관련되며 IUCN이 평가한다. 많은 유산이 자연유산 기준 혹은 문화유산 기준만을 충족시키지만, 복합유산은 문화유산 등재기준뿐 아니라 일부 자연유산 등재기준도 충족한다. 복합유산 등재신청서는 IUCN과 ICOMOS 두 곳 모두에서 평가한다.

아래에는 등재기준을 충족시킨 유산의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해당 사례를 설명하는 글과 사진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것이다).

등재기준(i):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에 해당해야 한다.

이 기준은 하나의 문화권에서 발전한 특정 양식의 탁월한 예(아마도 최고 또는 획기적인 사례)로 다음을 갖춘 경우이다.

- 높은 지적 또는 상징적 특징
- 높은 예술적, 기법적 혹은 기술적 기능

그 자체의 독특함만으로는 등재 근거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유산은 보다 넓은 역사문화적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그러한 맥락과 관련해 그 가치가 평가되어야 한다.

세계유산목록은 사람의 목록이 아닌 유산의 목록이다. 따라서 가령 등재기준(i)을 기준으로 하면 인간의 창의적인 천재성이 만들어낸 걸작이어야 하는 것이다. 세계유산목록은 천재들이 아닌 그들의 걸작을 목록에 올린다.

마찬가지로 어떤 천재의 작품 그 자체를 목록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탁월한 가치가 있는 걸작 혹은 전체적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일련의 걸작들을 목록에 올릴 수 있다.

걸작이라고 해서 모두 유명한 건축가나 디자이너의 작품은 아니다. 가령 선사시대 건조물 중에는 선사시대 여러 민족의 창의성과 기술적인 세련미를 보여주는 아이콘이 된 작품들이 있다. 특정 공동체의 공동작품이 걸작의 지위에 오른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애초 그 기능 이상을 의도하지 않고 축조된 경우에도 그렇다. 산업 건조물 또한 기능과 실용을 넘어 천재성이라 할 정도의 창조성을 구현하는 경우도 있다.

사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호주)

1973년 준공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건축 형식과 구조설계 면에서 다양한 창의성과 혁신을 결합시킨 20세기의 위대한 건축물이다. 시드니 항구 쪽으로 돌출된 반도 끝 부분의 뛰어난 수변 경관을 배경으로 탁월한 도시 건축물로 서 있는 이 건물은 오랜 시간 건축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쳤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두 개의 주공연



© Emmanuel Pivard

장과 하나의 식당의 지붕을 이루는 서로 맞물린 세 개의 '조가비' 그룹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조가비 구조물은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 위에 설치되어 있으며 그 주위를 둘러싼 테라스는 보행로 역할을 한다. 1957년 덴마크 건축가 외른 우촌이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프로젝트로 국제 공모전에 당선되었을 당시에도 그의 프로젝트는 건축에 대한 대단히 급진적인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주목받았다.

등재기준(ii): 일정한 시기 또는 세계의 일정한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기념비적인 예술, 도시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의 발전에 있어 인류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 기준에서 핵심이 되는 구절은 '인류 가치의 교환'이다. ICOMOS의 평가는 특정 유산의 물리적 자산이 건축과 기술, 기념비적인 예술, 도시계획, 경관설계 면에서 사상의 교환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가이다.

- 해당 유산은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사상이나 개념을 구현한 대상으로 원 지역, 수혜지역 혹은 그 밖에 이후 이어진 창의성을 탈바꿈 시킨 것일 수 있다.
- 해당 유산은 그 자체로 다른 지역에 영향을 끼친 사상을 고무시킴으로써 인류 가치의 교환을 일으켰을 수 있다.
- 마지막으로 양방향의 사상적 교류가 이루어진 결과 어떤 면에서는 상징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문화적인 융합이나 적응의 모습을 띤 유산일 수 있다.

어떤 경우이든 인간의 사상이나 영향을 교환하려면 해당 시점 및/또는 그 이후 사람이나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 면에서 두드러진다고 할 정도의 반응을 일으켜야 한다.

다수의 유산에서 그러한 영향력이나 교환은 예술과 건축, 도시설계, 기술의 역사에 있어 중요한 사상의 유형적 전파를 의미하며, 이는 관련 유산의 속성에 구현되어야 한다.

인류 사회와 여러 문화권 내 그리고 그들 간의 교환은 쉽게 찾아볼 수 있기에 이 기준을 충족하려면 수용문화권에 있어 그러한 교환과 가치/영향력이 상당하며 또한 중요해야 한다. 문화적 측면의 이전이 적거나 그 가치의 이전이 끼친 영향이 미미하다면 불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교환된 가치나 영향은 신청유산에서 어느 정도 분명히 드러나야 하며, 유산의 속성에 반영되어야 한다. 유산에 인류 가치의 교환이나 영향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면 등재에 대한 충분한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보존 상태가 좋은 특정 유형의 유산에 대한 등재근거로 이 기준을 택하는 것은 대체로 적절치 않으며 다른 기준을 근거로 삼는 것이 좋다.

사례

사마르칸트 - 문화교차로(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역사도시는 세계 문화권의 교차로이자 옹광로이다. 기원전 7세기 고대도시 아프리카시아브로 조성되었으며 14-15세기 티무르제국 시기에 크게 발전했다. 비비하눔 모스크와 레기스탄 모스크를 비롯한 사마르칸트 건물군은 지중해에서 인도대륙에 이르는 이 지역 전체의 이슬람 건축 발전에 중대한 역할을 담당했다.



© M & G Therin-Weise

등재기준 (i), (iv)에도 해당

등재기준(iii):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한 또는 적어도 독보적인 증거여야 한다.

기준(ii)와 달리 기준(iii)은 과정을 염두에 둔다. 즉 일반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친 문화적 전통은 특정 지리적 문화권의 생활방식 혹은 문명을 규정했다. 그러한 전통은 여전히 살아남아 활발한 모습일 수 있고, 이미 시들었을 수도 있다. 후자라면 오직 과거에 대한 증언만이 기념으로 남는다. 건축방식, 공간계획, 도시패턴이 그러한 전통이 될 수 있다. 이들 전통은 무형적 요소일 수 있지만 사상이나 문화적 전통 측면을 반영할 수 있는 암각화의 경우에 서처럼 그 결과는 정밀한 유형적인 것일 수 있다.

핵심 단어는 ‘독보적인 증거’이다. 그러한 증거는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증거이며 신청유산에서 명백히 확인되어야 한다.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모든 인류 문화에서 다루어지거나 공동된 보편적인 성격의 문제(세계유산 전문기회의, 암스테르담 1998)’를 표현해야 한다. 즉 그러한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은 특정 문화권에만 중요한 사안과 관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문명이란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되고 조직된 성격이나 통합된 특징을 가지며 비교적 상당한 규모의 집단을 포함할 것이라 예상된다. 지속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사회, 조직된 성격이나 통합된 특징이 부족하거나 혹은 규모가 작은 집단의 경우 반드시 문명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사례

마카오 역사 지구(중국)

마카오는 서양과 중국이 최초로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만난 독특한 증거가 되는 유산이다. 16세기부터 20세기까지 무역과 선교, 다양한 학문 분야의 중심지로 기능했다. 동서양의 이러한 만남은 마카오의 핵심 역사지구에 융합된 다양한 문화의 흔적을 통해 그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 Serge Dos Santos

등재기준 (ii), (iv), (vi)에도 해당.

등재기준(iv):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유형,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혹은 경관의 탁월한 사례여야 한다.

이 기준은 유형적인 측면에서 유산의 탁월한 특징과 연관된다. 역사적으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요한 단계를 설명하는 기존 유형의 맥락에서 등재되는 유산이 해당된다.

이 기준의 본질은 관련 유산이 결정적인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시점, 혹은 인류 역사에 있어 중요한 단계와 관련된 무엇인가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보여주어야 한다는 데 있다. 해당 유산은 그러한 시점에 촉발되거나 그로 인한 영향을 반영해야 한다. 해당되는 역사적인 시점은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 여겨져야 하며 그 파급력 역시 마찬가지다. 관련 단계는 정치사 혹은 경제사와 연관되어야 하며, 마찬가지로 널리 영향을 끼치는 예술사나 과학사와도 연관될 수 있다.

논의되는 유산은 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를 탁월한 방식으로 설명해야 한다. 그러한 단계는 지역과 세계적 맥락에서 평가되어야 하며, 관련 맥락상 반드시 중요한 단계여야 한다. 주변 지역 혹은 전 지구적으로 상당한 영향이 있지 않는 한 단순히 한 나라의 역사상 중요한 단계라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또한 그러한 단계에는 시간적인 측면도 있다. 해당 단계는 문화사, 그리고 역사적인 지속성과 변화의 패턴 면에서 정의되어야 한다. 인위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예, 18세기)은 그다지 적절하지 않다. 의미 있는 기간이란 하나의 문화적 맥락에서 중요하게 인정받는 정해진 시기여야 한다.

따라서 이 기준은 중요한 '전형' 혹은 정해진 유산 유형을 뚜렷이 대표하는 사례의 경우 적용되어야 한다.

이 기준은 전 세계 모든 유형의 건물과 건물군 혹은 경관에 대한 등재를 장려하거나 이를 허용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심지어 탁월한 사례일 때도 그러하다.

ICOMOS는 철도와 운하, 암각화, 다리과 같은 유산 유형에 대한 다수의 연구를 진행해 이들 유형에 해당하는

여러 신청유산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http://www.icomos.org/studies>). ICOMOS 문서센터가 작성한 주제별 지역별 참고자료 목록은 온라인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http://www.international.icomos.org/centre_documentation/bib/index.html).

사례

리도 운하(캐나다)

리도 운하는 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 즉 아메리카 대륙 북부를 장악하기 위한 전투가 일어났던 시기에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된 운하로 규모가 크고 보존상태가 우수한 중요한 유산이다.



© UNESCO/Khaled Hamada

신청유산에는 원래 운하의 모든 주요 요소, 그리고 일부 변모한 수로, 댐, 다리, 요새, 갑문을 비롯한 고고학적 유적이 모두 포함된다. 애초 운하의 도면과 물길의 형태는 그대로 남아있다. 리도 운하는 공사 이후 별다른 변동 없이 운하로서 애초의 역동적인 기능을 수행해왔다. 갑문과 수문밸브는 여전히 수동 원치로 작동한다.

등재기준(i)도 해당.

등재기준(v): 하나(혹은 여러) 문화 혹은 특히 되돌릴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진 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대표하는 인간의 전통적 정주지, 토지 이용 또는 바다 이용의 탁월한 사례여야 한다.

전통적인 정주지는 도시 아니면 농촌 지역일 것이다. 비슷하게 토지 이용 또한 농촌과 연관되는 것만은 아니다. 이 기준의 핵심은 관련 유산이 특정한 문화 혹은 문화권을 대표해야 하며 그러한 대표성에 탁월한 측면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기준은 되돌릴 수 없는 변화의 영향을 강조한다고 여겨지기도 한다. 왜냐하면 되돌릴 수 없는 변화에 취약한 유산이 결과적으로 탁월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그렇지 않다. 취약성이란 과거에는 많았으나 점차 희소해졌고 이제는 드물게 남아있는, 어쩌면 해당되는 정주지나 토지 이용의 사례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경우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핵심은 '토지 이용'이다. 정주 또는 토지 이용과 관련해 이를 전통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기간은 반드시 존재한다.

정주지나 토지 이용은 하나의 문화 혹은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탁월하게 보여주는 대표성이 있어야 한다. 즉 정주지나 토지 이용은 해당 문화권의 생활에서 중요한 요소여야 하며 인간의 상호작용은 보편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ICOMOS는 포도밭경관 등 전 세계나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여러 주제연구를 통해 몇몇 유형의 정주지와 경관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http://www.icomos.org/studies/> 참조).

사례

용설란 재배지 경관과 옛 테킬라 생산 시설(멕시코)

테킬라 화산 구릉지대와 리오 그란데 강 사이 34,658ha 면적에 해당하는 이 유산은 16세기부터 테킬라를 생산했고 적어도 2,000년 동안 발효술과 직물 제조에 이용한 식물인 용설란을 재배하면서 형성된 광활한 지역으로 푸른 용설란 재배지 경관의 일부이다. 경관 내에는 지금도 운영되고 있



© Nonimation File/ Carlo Tomas

는 여러 양조시설이 있는데, 이들을 통해 19-20세기 전 세계적으로 테킬라 소비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용설란 재배는 이 나라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한 부분으로 여겨진다. 삶과 일이 함께 하는 용설란 재배지 경관과 용설란 '파인애플'이 발효되고 증류되는 대규모 증류시설을 갖춘 테킬라, 아레날, 아마티탄 등의 도시 정주지가 이 지역에 포함된다. 이곳은 또한 200년-900년 사이 주로 농경지와 주택, 사원, 제의가 이루어진 언덕, 구기종목 경기를 위한 공간 등이 조성되면서 테킬라 지역의 모습을 만들어 낸 테우치틀란 문화권의 증거이기도 하다.

유산에 포함된 밭과 양조장, 대농장, 여러 마을은 테킬라 지역에서 발달한 이 지역의 독특한 문화를 대표하는 전통적인 인간 정주지와 토지 이용의 탁월한 사례이다.

등재기준(ii), (iv), (vi)에도 해당.

등재기준(vi): 탁월한 보편적 중요성이 있는 사건이나 살아있는 전통, 사상이나 신앙, 예술, 그리고 문학작품과 직접 또는 유형적으로 연관되어야 한다(위원회는 이 기준은 다른 기준들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여타 등재기준은 대부분 역사적인 사건, 정치지도자, 전쟁과 충돌, 도시계획이나 건축 혁신과 같은 한 종류 이상의 무형적인 요소를 포함하기는 하나 이는 이들 연상요소가 끼치는 유형적인 영향과도 관련된다. 이와 달리 본 등재기준은 유산 내 유형적인 영향은 없으나 그럼에도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연상요소와 관련된다. 가령 신성하거나 영감을 주는 어떤 산이나 경관이 있을 수 있다. 그곳에서 영감을 받은 화가나 예술가, 음악가가 있거나 혹은 그 자체로 탁월한 중요성이 있는 어떤 사건과 관련이 있는 유산이라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출발점은 해당 사건이나 전통, 사상, 신앙, 예술이나 문학작품에 탁월한 보편적 중요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그러한 사건이나 전통, 사상, 신앙, 예술, 문학작품이 직접 혹은 유형적으로 증명되는 방식을 제시해야 한다.

세계유산협약이 유산을 다룬다는 사실을 유념하면 이 등재기준은 오직 유산의 물리적인 측면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을 때에만, 가능한 최소 다른 하나의 기준을 충족시키면서 유산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전달하는 속성을 위해 보호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세계유산목록은 사건이나 전통, 사상, 신앙, 예술이나 문학작품 그 자체를 등재하지는 않으나 이들과 직접적이고 유형적으로 연관된 유산을 등재할 수 있다. 가령 어떤 종교나 운동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고 그것이 유산에 직접 혹은 유형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면 이는 등재를 위한 좋은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세계 주요 종교의 모든 사찰이나 사원, 교회를 세계유산목록에 올릴 수는 없다. 세계유산이 되려면 직접적이거나 물리적인 연상요

소 면에서 탁월해야 한다.

덧붙여, 특정 종교의 발생지나 주요 장소와 연관되는 요소가 특정 맥락에서 그 종교가 확산되는데 역할을 한 장소보다 비중이 크다.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는 하나 운영지침은 이 기준은 단독으로 쓰기보다 다른 등재기준과 연관해 사용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한다.

사례

스트루베 측지 아크(벨라루스, 에스토니아, 핀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도바공화국, 노르웨이, 러시아 연방, 스웨덴, 우크라이나)

아크 측정과 그 결과는 세계의 모양과 크기에 대한 과학적인 의문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이는 세계가 정확히 구가 아니라는 아이작 뉴턴의 이론과도 관련 있다.



© UNESCO / Vesna Vujčić-Lugassy

등재기준(ii), (iii)에도 해당

등재기준(vii): 최상의 자연현상이나 독보적인 자연미와 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을 포함해야 한다.

이 기준에는 두 가지 독특한 개념이 구현되어 있다. 첫 번째는 ‘최상의 자연현상’이라는 개념인데 이는 객관적인 측정과 평가가 가능하다(예. 가장 깊은 협곡, 가장 높은 산, 가장 큰 동굴, 가장 높은 폭포 등).

이에 비해 두 번째 개념인 ‘독보적인 자연미와 미학적 중요성’은 평가가 어렵다. 이 기준은 탁월한 자연적인 아름다움과 미학적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 보이는 자연유산에 적용된다. 자연구역의 아름다움과 미학의 개념에 지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데에는 여러 방법이 있다. 이에 대해 특별히 권고되는 방식은 없지만 반드시 널리 인정받는 한 가지 이상의 방식을 택해야 한다. 이때, 근거가 되는 탄탄한 설명 없이 주장만 늘어놓는 방식은 적절치 않다. 이 기준의 적용을 문화유산 등재기준을 통해 이미 표현되어 있는 문화재와 문화경관의 미학을 인식하는 것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또한 기준(vii)은 등재를 신청한 유산의 유형이 지역을 넘어 전 세계에 그 비교대상이 널리 분포하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즉 이 기준이 적용된 유산은 세계적인 기준을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 기준에 따라 미적 요소를 적용하는 경우와 문화경관에서 고려하는 내용을 구별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세계유산 위원회가 이 기준에 따라 이미 등재한 유산과 행하는 비교에 근거하며, 가능한 범위에서 해당 경치가 갖는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을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 기준을 적용해 이미 등재된 유산과 비교하고 세계유산위원회와 IUCN이 이전에 이를 활용한 사례를 확인하는 작업 또한 그 적합성을 고려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IUCN은 2012년 세계유산위원회에 이 기준의 적용과 관련해 유산 주제 측면에서 추가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IUCN은 또한 기준(vii)은 일반적으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자연유산 등재기준과 함께 고려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사례

왕나비 생물권보전지역(멕시코)

56,259ha 면적의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멕시코시 티 북서쪽 약 100km 지점의 거친 산림지대에 위치한다. 매년 가을 북미 각지에서 수백만 혹은 수 십억 마리의 나비들이 이곳으로 돌아와 산림 곳곳에 작은 무리를 이룬다. 이들 나비로 이곳의 나무는 주황색으로 물들고 집단으로 내려앉은 그들의 무게 때문에 가지가 휘어질 정도이다. 봄이 되면 나비들은 다시 8개월간의 이주를 시작해 캐나다 동부에 다녀오는데 그 기간 중 4세대의 나비가 생멸한다. 나비들이 이곳 월동 장소로 어떻게 돌아오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 Nomination File/ Carlos Gottfried

등재기준(viii): 생명의 기록이나 지형의 발전에서 진행 중인 중요한 지질학적 과정, 중요한 지형학 또는 자연지리학의 특징물 등 지구 역사상 주요 단계를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여야 한다.

이 기준은 지형학적 특징물의 전 지구적 분포, 그리고 44억년이라는 지구의 역사를 대변하는 사례를 아우르는데 필요한 전 지구적인 관점을 모두 반영해 세계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지구상의 생명체의 진화와 그 지리적 변화를 다룬다. 협소한 범위의 매우 특별한 특징물보다는 지구의 역사나 지질학적 과정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급격히 변화시킨 발견물이 있는 유산이 고려된다. IUCN은 일부 지질학적 내용을 다룬 등재신청서가 갖는 전문성에 대해서는 지질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다. 이 기준에는 아래와 같은 지질학과 지형학에 관련된, 실은 밀접하게 연관된 네 가지 독특한 자연적 요소를 포함한다.

- **지구의 역사:** 여기에 해당하는 지질학적 특징물에는 역동적인 지각 활동에 대한 기록, 산의 기원과 발전, 판 운동, 대륙의 이동, 열곡의 발전, 운석 충격, 지질학에 있어 이전의 기후변화와 같은 과거 지구의 발전에 중요한 사건을 기록한 여러 현상이 있다. 이러한 분류를 기준으로 세계유산 등재를 고려할 수 있는 유산은 주로 화석 군락이 아닌 암석의 시퀀스나 구성을 통해 확인되는 지구의 변화과정과 형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주요 발견물을 포함한다.
- **생명의 기록:** 여기에는 고생물(화석) 유적이 해당된다. IUCN은 이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평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개발했다(42쪽 참조).
- **지형의 발전에 있어 진행 중인 중요한 지질학적 과정:** 지형학적 유산은 현재의 지리적 과정과 이들이 지형과 경관(또는 지문학)과 이루는 관계를 기록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기준(viii)의 특징물은 빙하와 산, 사막, 활화산, 강과 삼각주, 섬과 해안 등의 활성화된 지형학적 과정을 대표한다.
- **중요한 지형학 또는 자연지리학의 특징물:** 활발한 활동의 '산물'로 위의 목록에 나타난 여러 변화과정과 밀접하게 연결된 지형이 포함된다. 또한 잔류 빙하지형, 사라진 화산과 카르스트 특징물 등 초기 또는 오랜 기간 활동에서 비롯된 여러 특징물도 해당된다. 이들 특징물은 경우에 따라 등재기준(vii)의 적용도 고려해볼 수 있다.

IUCN 화석지 평가 체크리스트

1. 해당 유적에는 지질학적으로 폭넓은 기간을 아우르는 화석이 있는가? 즉 지질학적 층이 얼마나 넓은가?
2. 제한된 수의 여러 종의 견본이나 전체 생물군집이 있는가? 즉 종다양성이 얼마나 풍부한가?
3. 특정한 지리적 시기의 화석 견본이 나왔다는 점에서 이 유적은 얼마나 특별한가? 즉 이 유적은 연구를 위한 '지역적 유형'일 수 있는가, 혹은 대안이 되는 유사한 지역인가?
4. 특정 시/공간의 모든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비교 가능한 유적이 있는가? 즉 등재를 신청하기에 충분한 단일 유적인가, 아니면 연속유산 등재신청을 고려해야 하는가?
5. 해당 유적은 지구의 생명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기여하는, 중요한 과학적 진전이 이루어진 유일한 핵심 장소인가?
6. 해당 유적에서 지속적인 발견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가?
7. 해당 유적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은 어느 정도인가?
8. 해당 유적과 연관된 자연적 가치(예. 경치, 지형, 식생)의 다른 특징이 있는가? 즉 인근 지역에서 화석과 관련된 근대의 지리적 또는 생물학적 과정이 나타나는가?
9. 유적에서 발굴된 견본의 보존상태는 어떠한가?
10. 발굴된 화석을 통해 현대의 분류군 및/또는 군락의 보존 현황을 이해할 수 있는가? 즉 그 결과를 문서화할 때 이 유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진적인 변화를 겪은 현대 생물군과 얼마나 연관되어 있는가?

출처: Wells(1996).

IUCN은 지질 세계유산에 대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주제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Dingwall et al.,2005). 이 연구를 통해 본 기준에 대한 지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주제별로 13가지 종류의 다양한 지질유산에 대한 세계유산목록의 범위를 추가로 고려할 수 있다.

사례

와디 알 히탄(고래 계곡)(이집트)

이집트 서부 사막에 위치한 고래계곡이라는 의미의 와디 알 히탄 유적에는 지금은 멸종된 최초의 고래 아목인 고대고래아목의 귀한 화석이 남아있다. 이들 화석은 과거 육지에 살던 동물에서 바다에 사는 포유동물로 진화한 고래의 출현이라는 진화의 주된 단계를 잘 보여준다. 다시 말해 이 단계의 진화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유적이다. 전환기 이들 고래의 모습과 그 생활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곳으로, 화석의 수와 밀집도, 그 품질은 이 유산의 매력적인 자연보호 경관과 접근성만큼이나 독특하다. 알 히탄의 화석은 고래의 뒷다리가 사라져가는 마지막 단계의 가장 어린 고래아목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곳에 남아있는 다른 화석자료를 통해 당시의 주변 환경과 생태적 조건을 재구성할 수 있다.



© UNESCO / Veronique Dauge

등재기준(ix): 육상, 민물,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 군락의 진화와 발전에서 진행 중인 중요한 생태적·생물학적 과정을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여야 한다.

이 기준은 지구 생태계, 그리고 그들의 역동성과 관련된 생태적, 생물학적 과정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평가한다. 이 기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IUCN은 다른 전문가 및 기관과 함께 숲과 습지, 바다, 해안, 산, 작은 섬 생태계, 북방림 등에 대해 전 세계를 기준으로 다수의 주제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결과를 통해 이 기준에 대한 평가 방향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연구 내용은 http://www.iucn.org/about/work/programmes/wcpa_worldheritage/에서 볼 수 있다.

사례

아치나나나 열대우림(마다가스카르)

아치나나나 열대우림은 섬 동쪽을 따라 분포한 6개 국립공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잔존우림은 마다가스카르의 지질학적 역사를 보여주는 섬의 독특한 생물종 다양성이 지속되는 데 필요한, 현재 진행 중인 생태적 과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 마다가스카르의 동식물은 6천만 년 전 다른 여러 육지에서 완전히 분리된 후 독자적으로 진화해왔다. 이곳 열대우림은 생태적, 생물학적 양 측면, 그리고 생물종 다양성과 그들이 뒷받침하고 있는 멸종위기에 처한 종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받아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 The Wildlife Conservation Society / Russel Thorlton

등재기준(x)에도 해당.

등재기준(x): 과학이나 보존의 관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멸종 위기종 등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장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자연 서식지를 포함해야 한다.

이 기준을 평가할 때에는 IUCN적색목록, 식물다양성센터, 세계 고유 조류종 서식지, 국제보존협회의 생물다양성고밀도지역, WWF의 세계생태지역200 등 다양한 도구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 책자의 참고자료에서도 이를 감안해 정기적으로 참고하는 자료목록을 제공한다.

이들 전 세계 기준의 분류체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세계유산협약 특별전문가회의 자료집: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개념(Background Paper for the Special Expert Meeting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The Concept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카메론, 2005)’을 참고할 수 있다.

사례

소코트라 군도(예멘)

아덴만 인근 인도양 북서부에 위치한 소코트라 군도는 그 길이가 250km로 '아프리카의 뿔'의 연장으로 보이는 4개의 섬과 2개의 바위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풍부하고 독특한 동식물군의 식물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어 탁월한 중요성을 인정받는다. 소코트라에 분포한 825종의 식물 중 37%, 파충류종의 90%, 달팽이종의 95%가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고유종이다. 멸종위기에 처한 다수 종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육지와 바다의 여러 조류(192종 중 육지에서 번식하는 새 44종, 철새 85종)도 살고 있다. 소코트라 해양생물 또한 매우 다양하며 산호초를 만드는 산호 253종, 해안에 서식하는 어류 730종, 게와 바다가재, 새우가 300종에 이른다.



© Nomination File/ Mario Canuso

연속유산과 월경유산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은 대개 하나의 당사국 경계 내에 위치한 단일한 육지 영역에 위치한다. 라오스민 주공화국의 참파삭 문화경관 내 왓 푸 사원과 고대주거지 같은 일부 문화경관처럼 그 규모가 상당할 수도 있다(30,000ha). 반면 일본의 히로시마평화기념관(원폭돔)(0.4ha)에서와 같이 작을 수도 있다. 이들은 자연유산이나 문화유산, 혹은 복합유산일 수 있다.

이와 함께 특별한 유형의 유산도 다수다.

- 월경유산
- 연속유산
- 연속 월경유산(운영지침 134-139항)

다음은 특별한 유형의 유산에 대한 설명이다. 신청유산에 포함시킬 유산요소 선정에 대한 논리는 명확하게 이해되고 설명되어야 한다(76-79쪽 참조). 연속유산에 대해서는 '연속유산인 세계자연유산의 등재신청과 관리 - 현재 상황과 도전, 기회(Nominations and Management of Serial Natural World Heritage Properties - Present Situation,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Engel et al.,2009)'를 참고하면 유용할 것이다.

월경유산

월경유산은 둘 이상의 인접 당사국의 국경을 가로지르는 연속된 육지 혹은 바다 구역에 위치한다.

연속유산은 현재의 정치적 경계와 상관없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전달하는 전체 면적과 속성을 단일유산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들 유산은 여러 나라가 공유하는 해당 유산과 관련해 국가 간 평화적인 협력을 보여줄 수 있으며 또한 이를 장려할 수 있다.

신청서 준비, 현재 진행 중인 보호관리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이는 여러 나라의 기관 간 조정과 협

KEY MESSAGE
 신청할 문화유산의 종류를 명확히 한다.

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라마다 보호관리 체계와 유적관리 및 제시, 보존에 들일 수 있는 재원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지침에서는 유산 관리를 자문하는 공동관리위원회나 그와 유사한 기구의 설립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어느 쪽이든 유산 경계 한 쪽의 유산요소 간 보존현황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 향후 전체 유산관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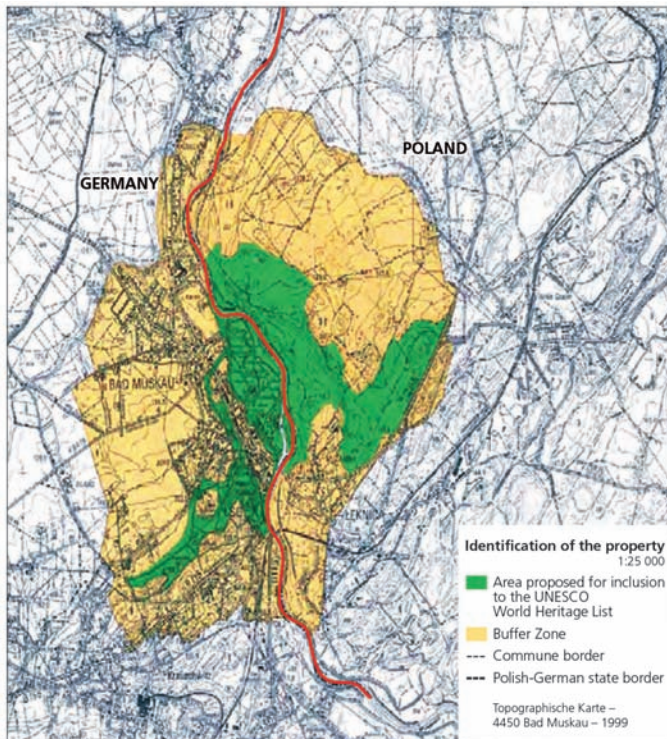
사례

무스카우어 공원/무자코프스키 공원(독일, 폴란드)

폴란드와 독일을 가로질러 흐르는 나이세 강과 그 경계에 위치한 559.9ha 면적의 풍경식 공원으로 1815-1844년 헤르만 폰 뤼클러무스카우 공이 조성했다. 주변의 농경지 풍경과 잘 어우러지는 곳으로 조경디자인 분야의 새로운 방식을 개척했으며 유럽과 아메리카 지역 경관건축의 발전에도 영향을 끼쳤다. '초목이 있는 풍경'으로 설계되었으나 고전적인 경관이나 낙원, 잃어버린 완전한 세계를 환기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닌 기존 경관의 내재적 특성을 살리는 토속 식물을 활용하였다. 전체 경관은 개발구역의 기본 틀을 설정하고 도시 공원을 만든 녹지길을 따라 무스카우 시로 확장되었다. 그 결과 무스카우 시도 유토피아적 경관에 일종의 디자인적인 요소를 담게 되었다. 복원된 성과 다리, 수목원도 유산 안에 포함돼 있다.



© Jarosław Wnrowski



출처:등재신청서

모시 오아 툰야 폭포/빅토리아 폭포

(잠비아, 짐바브웨)

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장관으로 유명한 폭포이다. 2km 폭의 잠베지 강의 강물이 현무암 협곡으로 요란하게 쏟아지며 20km도 넘는 거리에서도 볼 수 있는 무지개빛 물안개를 일으킨다.



© UNESCO / Nana Thiam

연속유산

연속유산은 단일 경계에 포함되지 않은 개별 혹은 별개의 일련의 유산요소이다. 각 유산요소들은 거리가 가까울 수도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으나 모든 요소들은 단일 국가에 위치한다. 국가간 유산은 이후 별도로 다룰 예정이다.

연속유산에는 명확하게 연계된 둘 이상의 유산요소 부분이 포함된다.

- a) 유산요소들은 경관과 생태, 진화 또는 서식지 면에서 연계된 문화적, 사회적 또는 기능적 연계를 반영해야 한다.
- b) 각 유산요소는 해당 유산 전체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상당히 그리고 과학적이고 명확하며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기여해야 하며, 특히 무형적 속성을 포함할 수 있다. 그에 따른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이해와 소통이 쉬워야 한다.
- c) 일관성을 갖추고 유산요소들이 과도하게 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산요소의 선정을 비롯한 유산의 등재신청 과정은 해당 유산의 전반적인 향후 관리와 일관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단 해당 유산은 전체적으로 탁월한 가치가 있는 - 개별 요소가 반드시 그러해야 하는 것은 아닌 - 연속된 유산이다(운영지침 137항).

경우에 따라 별개의 유산요소/구역이 단일한 완충구역 내에 있을 수 있다.

연속유산 제도를 통해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속성이 전혀 없는 넓은 면적을 유산구역에 포함시켜 모든 유산요소를 아우르는 단일한 경계를 설정하고자 하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

연속유산은 별개의 여러 구역을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에 등재신청이 더 복잡해질 수 있는데, 개별 구역들을 신청서 안에서 모두 설명해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유산의 보호와 보존, 관리는 다양한 체계가 다양한 별개의 유산요소에 적용되므로 한 나라 안에 있더라도 더 복잡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지침은 개별 유산요소가 반드시 조화롭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적고 있다.

경우에 따라 연속유산은 상당히 제한적인 유산요소의 여러 경계를 임의로 설정하기 위해 적절치 않은 수단으로 선택될 수 있다. 다른 곳에서도 언급했듯 유산의 가치와 진정성, 완전성을 통해 적절한 유산 경계와 연속유산으로의 적용을 결정할 수 있다.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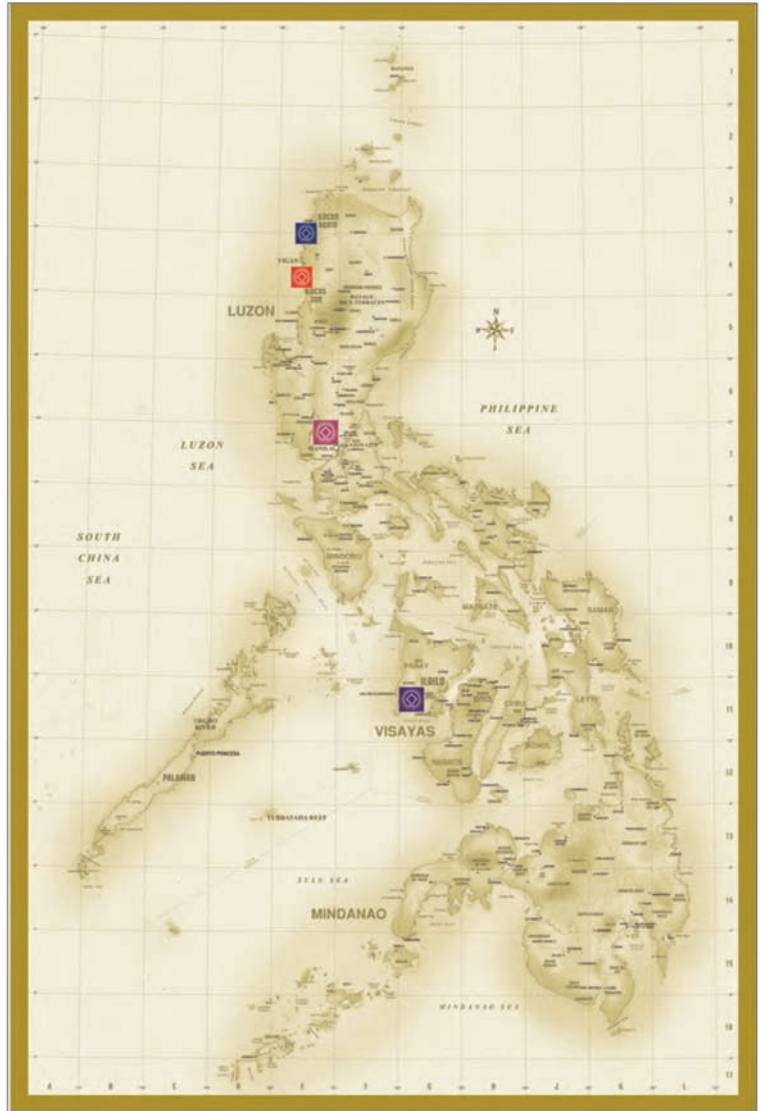
필리핀의 바로크 양식 교회(필리핀)

이들 4개 교회(건조물)는 필리핀의 마닐라, 산타마리아, 파오아이, 미아그아오에 위치해 있으며 이중 첫 번째 건물은 16세기 말 스페인인들이 지었다. 그들의 독특한 건축양식은 중국과 필리핀 장인들이 탄생시킨 유럽 바로크 양식을 재해석한 것이다.



© OUR PLACE - The World Heritage Collection

출처: ArtPostAsia Pte Ltd
 © 2005. A map from the publication:
 Living Landscapes and Cultural Landmarks - World Heritage Sites in the Philippines
 지도발체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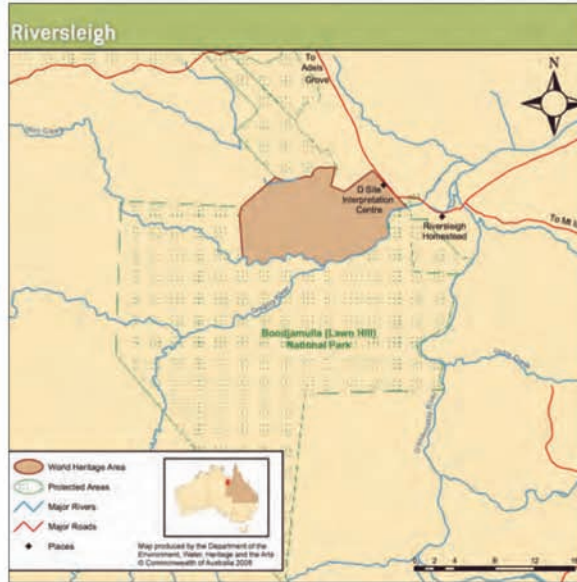
호주 포유류 화석유적(호주)

호주 동부지역 북쪽과 남쪽에 각각 위치한 리버슬레이와 나라쿠르테는 세계 10대 화석지 중 하나이다. 호주에 살던 포유류의 세 번째 진화 단계 중기에서 말기, 그리고 마지막 17만년 기간 중의 육상 척추동물에 대한 놀라운 기록 등 여러 생명의 기록과 함께, 여전히 진행 중인 중요한 지질학적 과정을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가 남아 있다.



© UNESCO

1 세계유산과 그 배경



출처: 호주 환경물유산예술부



국가간 연속유산

국가간 연속유산은 연속유산의 다른 형태로 여러 유산요소들이 하나 이상의 나라에 위치한 경우이다.

이러한 형태의 유산이 갖는 장점과 문제점은 국가간 유산과 연속유산에서 설명된 내용과 유사하다.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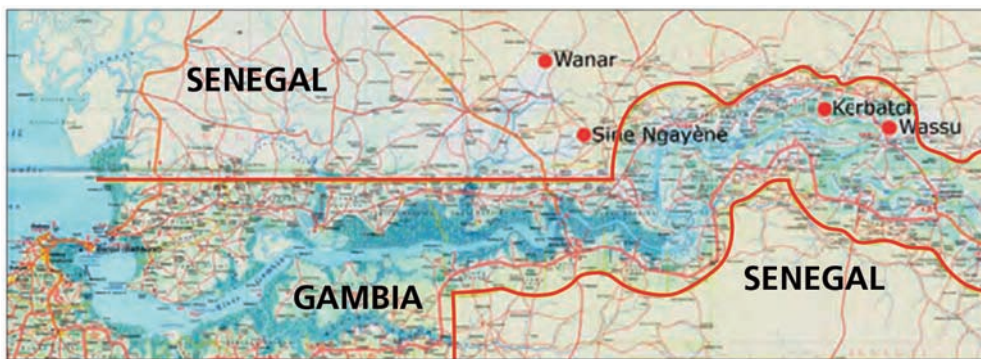
세네갈과 가ambia 환상 열석군(가ambia, 세네갈)

폭 100km의 가ambia 강 약 350km를 따라 1,000개가 넘는 돌기둥 기념물이 밀집해 있는 4개 그룹의 환상 열석 유적이다. 시네 응가예네, 와나르, 와수, 케르바치 등 4개군에는 총 93개의 환상 열석과 수많은 무덤과 봉분이 분

포하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기원전 3세기에
서 16세기 사이 여러 개의 날짜를 밝힐 수 있는
자료 확인을 위해 발굴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라
테라이트로 이루어진 기둥의 환상 열석과 이와
연관된 봉분은 1,500년 넘게 조성된 대규모의
신성한 경관을 이루고 있다. 높은 조직력으로 지
속된 번영을 구가했던 한 사회를 잘 보여주는 유
산이다.



© OUR PLACE - The World Heritage Coll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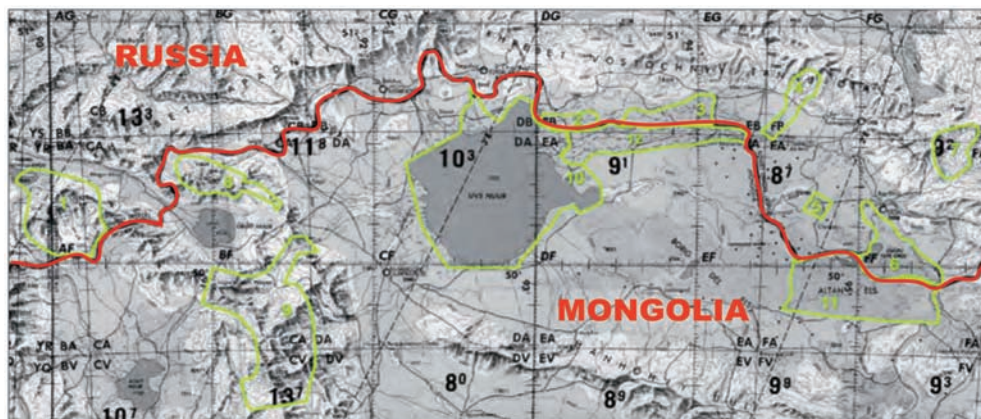
출처:등재신청서

우브스 누르 분지(몽골, 러시아)

우브스 누르 분지(1,068,853km)는 중앙아시아 분
지 지역 중 최북단에 해당한다. 거대한 규모로 알고
염분이 높은 호수로 철새와 물새, 바닷새에 중요한
지역인 우브스 누르 분지에서 그 이름을 따왔다. 유
라시아 동부지역의 주요 생물군계를 대표하는 12개
보호구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스텝 생태계에는 풍부
한 다양성을 자랑하는 여러 조류가 서식하고 있
으며, 사막은 희귀한 모래쥐, 날쥐, 얼룩 족제비들의 보
금자리다. 이곳 산은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눈표범, 큰뿔양, 아시아 아이벡스의 중요한 피난처이다.



© M. Khulan



출처:등재신청서

아래는 이들 다양한 유산 유형 간 이론적 차이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국가유산 - 1개국(A)	월경유산 / 국가간 유산 - 2개국 이상(A, B, C)
1개 구역	<p>국가유산</p>	<p>월경유산</p>
1개 구역 이상: 연속유산	<p>국가 연속유산</p>	<p>국가간 연속유산</p> <p>연계된 일련의 유산요소 개별 구역 전체가 단일 국가 내에 위치</p> <p>연계된 일련의 유산요소 중 일부가 1개국 이상에 걸친 경우</p> <p>국경이 맞닿지 않은 국가의 유산요소들도 연속유산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이는 드문 사례이며 현재는 문화유산에서만 존재한다(예, 스트루베 측지 아크, 로마 제국 국경 세계유산). 위 그림의 경우는 B국과 C국에는 해당 요소가 있으나 A국에는 없는 연속유산이다.</p>

2 준비

성공적인 등재신청을 위해서는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2장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다룬다.

- 등재신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산에 대한 기존 정보와 추가로 필요한 조사
- 등재팀의 수립과 자원 제공
- 신청절차 단계 수립, 핵심 단계 파악

앞에서 밝힌 대로 신청서를 준비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른바 '레시피'를 제공한다거나 선호하는 특정 작업방식을 추천하는 일은 적절하지 않다. 신청서를 준비하는 데에는 여러 좋은 방법이 있다. 다만 이 장에서는 다음의 기본원칙과 지침을 제공해 당사국들이 자신만의 방식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2.1 유산에 대한 기존 정보

등재신청에 도움이 될 유산에 대한 기존 정보를 확인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자료를 일괄 정리하는 작업은 거의 모든 유산에서 필요하다. 문화유산이라면 구전되는 역사, 공개된 고고학적 증거, 보존의 역사, 관광 관련 데이터, 도시계획 규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산에서 기존에 진행된 연구가 아예 없거나, 이미 달성한 연구 성과를 보완하거나 업데이트를 위해 일정 수준의 추가 연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등재신청 예비 단계로 이미 알려진 정보, 그리고 아래와 관련해 향후 필요한 작업을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 연구 – 기존 연구가 등재신청과 관련해 적절한가? 유산의 가치를 규명하고 그 역사와 속성의 세계적,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가?
- 목록 – 유산을 기록하는 목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를 완성 또는 갱신하기 위한 추가 작업이 필요한가?
- 참고자료 – 신청서에서 요구하는 여러 범주의 정보를 참고할 때, 신청서를 완성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어떤 자료가 더 필요한가?
- 이해당사자 분석 – 이 유산과 함께 살아가거나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등 신청서 준비에 참여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유산의 사회, 경제, 정치적 현실은 무엇인가?

세계유산위원회는 신청서를 뒷받침하는 연구 부족을 이유로 등재신청을 보류 또는 반려하기도 한다.

2.2 팀 구성

등재신청팀

세계유산 등재신청은 그 업무의 복잡성, 주요 이해당사자의 범위, 필요한 전문성의 범위 때문에 대개 팀을 구성해 진행해야 한다. 신청유산에 대한 중요한 정보나 자문은 유산과 관련된 광범위한 이해당사자가 갖고 있다. 따라서 등재신청팀 구성의 첫 단계는 주요 이해당사자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여기에는 유산 소유자/관리자, 당사국, 국가 단위의 유산 기관, 지방 정부, 정부 관계 당국, 지역사회, 원주민, 대학, 연구자, 학자, 사업가, 관광업계 종사자, NGO, 유산을 이용하는 그룹(예: 어민, 산림 이용자, 오락성 이용자, 연구자) 등이 해당한다. 이코모스 국가위원회 또한 문화유산 신청 시 유용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신청서 작성자의 범위는 신청

KEY MESSAGE

기존 관련 정보를 수집, 검토하고 차이를 확인한다.

KEY MESSAGE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들을 팀에 참여시킨다.

유산이 갖는 가치의 범위를 반영해야 하며, 국제적인 맥락에서 유산을 이해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들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는 팀에 합류하거나 이를 대변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신청팀에 직접 연락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팀 구성원은 향후 새로운 이해관계의 출현 가능성을 고려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신청과정에 지역 주민을 참여시켜 유산을 돌보는 데 당사국과 책임을 공유하고 지역 내 지식을 통해 유산을 적절히 이용하며, 유산에 대한 인식과 자원 문제 등에 있어 지역 상황을 고려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전체 신청절차를 완료하고 최종 문서 전달을 책임질 사업 책임자도 반드시 두어야 한다.

신청팀은 지역, 국가, 국제단위에서 해당 신청서, 유산의 장기적인 보호, 보존, 관리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여러 측면에서 중요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신청서 자체를 작성하는 본 팀(core team)과 그러한 작업을 지원하는 그 보다 규모가 큰 지원팀(reference team)을 둘 수 있다. 팀은 일반적으로 그 리더를 잘 따르고 구성원이 적절하며, 업무 집중도가 높을 때, 그리고 일정에 따라 명확하고 현실적인 작업계획이 있는 경우 잘 운영된다. 팀 구성원은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역할이 있을 수 있으며 스스로 그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예, 특정 분야의 전문가, 공동체 대표자, 편집자 등).

등재신청팀 내에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기술문 작성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 및 학술 전문가팀을 구성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69-70쪽에서 다룬다.

KEY MESSAGE

재원이 뒷받침된 집중도 높은 좋은 팀은 등재신청서 준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많은 유산에 있어 등재신청 과정은 관련자들이 하나로 모여 협력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가 된다. 이는 국립공원, 도시구역, 문화경관, 고고유적이나 기념물 등 일정 범위의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에서도 마찬가지다. 등재신청 과정은 관련 유산이 과학, 역사, 고고학, 경관, 보존, 관리, 사회구조, 관광, 계획, 비즈니스, 개발과 규제 등 매우 다양한 관점에서 고려되도록 하고 있다. 이들 다양한 차원의 관점이 신청서, 나아가 유산의 보호, 보존, 관리에도 잘 담겨 있다면, 그 각각을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당사자들 간 대화 체계를 마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성공적인 신청서를 작성을 위한 이상적인 팀 구성이나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참고할 만한 우수한 여러 사례가 있다.

팀 구성에 참고할 만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핵심 지지자나 이해당사자의 목록을 작성한다(예, 유적 소유자/관리자, 당사국, 유산 담당 국가기관, 지역당국, 원주민, 관광업계, 대학, 전문가).
- 팀 내 지식과 전문성의 범위가 유산 가치의 범주를 반영하는지, 이상적으로는 국제적인 맥락에서 유산에 대해 이해하고 보다 넓은 범위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유용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향후 있을 이해관계의 가능성을 고려해 팀 구성원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하되 편집자는 한 명이 계속하는 것이 좋다.
- 신청서 자체를 작업하는 본 팀과 그러한 작업을 뒷받침하는 지원팀을 구성하도록 한다.

- 팀의 리더가 분명하며, 구성원이 적절하고, 업무가 명확한 동시에, 일정에 따라 명확하고 현실적인 작업계획을 갖도록 한다.

현실적인 작업계획은 반드시 필요하다. 급하게 준비한 신청서는 만족도가 낮으며 평가 중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체크리스트: 등재신청팀이 고려해야 할 중요한 기술적 사항

- 세계유산협약과 운영지침에 대한 이해와 그 안에 든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
- 비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세계유산목록에 있는 다른 유산에 대한 정보를 연구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세계유산위원회와 그 자문기구들의 보고서와 결정문을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
- 다음에 대한 역량
 - 학술정보 등 신청유산과 그 가치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이해
 - 과학자, 전문가, 지역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정보의 관리
 - 전 세계를 대상으로 비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다른 유산의 가치에 대한 연구, 이해, 평가
 -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주요 연구 내용에 대한 간략하고 정확한 문서 작성
 - 기술 내용에 정확성을 기하고 이를 보다 잘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당 유산에 부여된 해석과 가치에 대한 도전
- 협약의 언어 문제가 있으므로 신청서를 번역하고 그 정보와 주장의 질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자격을 갖춘 번역사가 필요할 수 있다.
- 본 팀은 관리계획과 실무적인 이행, 제시의 기술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해당 신청서를 유산관리와 연결시키고 신청서의 일부를 구성할 관리계획이나 시스템을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재원

등재신청팀과 등재 과정에는 관련 작업을 뒷받침할 적절한 재원과 기금이 필요하다. 준비 초반에 필요한 재원과 기금을 산정하고, 자원의 확인과 재확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요 자금의 지원은 당사국 내에서 이루어지겠지만 자격을 갖춘 유산과 국가라면 세계유산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whc.unesco.org/en/funding 또는 whc.unesco.org/fr/fonds 참조). 또한 아프리카세계유산기금(www.awhf.net)과 태평양세계유산기금(준비중) 등 지역에 중점을 둔 단체들도 증가 추세다. 아프리카세계유산기금은 신청서 준비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정보와 기술도 지원한다. 특정 주제에 대한 관심, 나아가 후원을 통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부 등재신청의 경우 필요한 기금과 기술에 있어 NGO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다.

신청서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논의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유산의 지속 가능한 보호, 보존, 관리를 뒷받침하는 현재의 재원이다.

등재 이후 팀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

신청서 제출과 그에 따른 등재가 이 과정의 끝은 아니다. 본 안내서는 유산의 등재신청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신청서 준비를 위해 모인 팀이 해당 유산의 장기적인 보호와 보존, 관리, 모니터링에 있어 수행 가능한 역할을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 있다. 신청팀은 이와 관련해 일부 변경이 있겠지만 등재 이후 지속적이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세계유산이 보다 넓은 사회와 정부구조를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지원되고 통합되는 경우 해당 유산은 장기적으로 성공한다. 등재신청 과정은 그러한 지원체계가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를 확인하고 운영되도록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보호와 보존, 관리에 대한 현재의 팀 기반 접근 방식은 그러한 체계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2.3 지역주민과 기타 이해당사자의 참여

운영지침은 여러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세계유산 내 지역주민과 기타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으며, 신청서의 경우 그러한 참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유산소유자와 유적관리자, 지방정부, 지역공동체, NGO를 비롯해 다른 이해당사자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택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특히 신청유산에 대한 이해와 미래에 대한 책임을 이들과 공유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해당사자들이 개입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다면 성공적인 통합관리는 불가능하다.

이들은 시작부터 우선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신청서 준비 과정 내내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또한 등재신청 이후에도 유산관리의 일부로 지속되어야 한다.

2.4 신청서 준비 단계별 진행 및 주요 단계 제안

많은 유산의 경우 최소 두 단계로 나눠 등재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이는 잠정목록 등재 후 일정 시간이 지나고 진행되는 내용이다. 그 첫 단계는 다음과 같다.

KEY MESSAGE

신청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을 고려한다.

- 유산의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밝힌다.
- 해당 내용이 비교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갖춰 있음을 확인한다.
- 적절한 보호, 보존, 관리가 제공됨을 확인한다.

신청팀은 첫 단계에서 구성하며, 본 안내서 3장에 나오는 모든 작업이 이때 진행된다.

이 단계가 마무리되면 두 번째 단계로 신청서 작성을 시작한다. 두 번째 단계에는 4장에서 설명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단일 프로젝트라도 두 단계로 나누어 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선호하기도 한다.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정의되기 전 신청서 작성을 시작하면 유산설명과 역사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신청서의 핵심적인 부분, 즉 유산이 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 등에 대한 내용이 부족할 수 있다.

등재과정을 단계별로 나누면 필요한 재원을 두 단계로 배분해 얻는 이점이 있을 수 있다.

3 유산의 정의와 이해

유산에 대한 철저한 이해는 성공적인 등재신청서 작성에 매우 중요하다. 3장에서는 유산, 특히 신청서의 핵심 항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설명을 제공한다.

3.1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 속성, 경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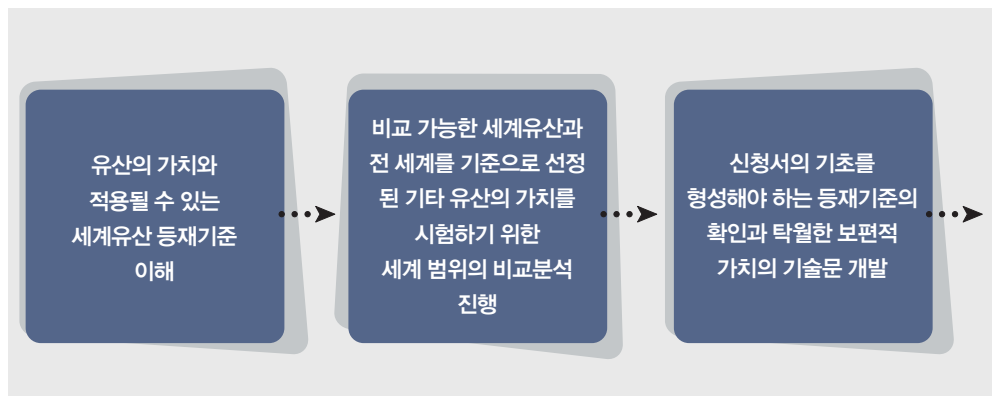
유산에 대한 지식

2.1에서 언급한대로 신청서 예비단계로 기존 정보와 기록물을 모으고 아래에 대한 추가 작업이 필요한지를 결정한다.

- 연구 – 등재신청과 관련해 기존 연구가 적절한가? 유산의 가치를 규명하고 그 역사와 속성의 세계적,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추가 연구가 필요한가?
- 목록 – 유산을 기록하는 목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를 완성 또는 갱신하기 위한 추가 작업이 필요한가?
- 참고자료 – 신청서에서 요구하는 여러 범주의 정보를 참고할 때, 신청서를 완성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어떤 자료가 더 필요한가?
- 이해당사자 분석 – 이 유산과 함께 살아가거나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등 신청서 준비에 참여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유산의 사회, 경제, 정치적 현실은 어떠한가?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확인과 정의

신청서의 핵심은 왜 하나의 유산이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데에 있다. 이는 유산을 잠정목록에 올릴 때 제시하는 것이 이상적이다(운영지침 II.C. 참조). 그러나 보다 구체적인 작업은 대개 신청서 작성 초기에 진행된다. 구체적인 작업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왜 해당 유산이 세계유산목록에 오를 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세계유산협약의 핵심이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왜 하나의 유산이 국내 또는 지역적 가치가 아닌, 세계적인 중요성을 지니는 것으로 보는 지에 대한 주장에 세계유산위원회가 동의한 것이다.

유산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이해, 그 상태는 유산의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그러한 가치를 전달하는 속성을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사실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제시되고 그 타당성이 입증될 때까지는 아래와 같은 신청서의 다른 내용을 다루는 것이 불가능하다.

-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전달하는 속성의 범위를 반영하기 위해 설정되어야 하는 경계
-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전달하는 속성의 보호, 보존, 관리와 제시/홍보

유산 가치에 대한 규명과 정의는 지식과 방법론을 혼합해 이루어진다. 이 과정은 유산의 모든 가치를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는데, 이를 정리하는 작업이 세계유산 등재신청을 뒷받침하는 기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산 가치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궁극적으로는 등재신청을 위해 작성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기술문의 일부가 될 상대적으로 짧은 텍스트로 제시되어야 한다(이 기술문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별도로 다룬다). 해당 텍스트는 간략히 요약한 내용으로 반드시 별도의 항목으로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다음 내용을 담는다.

- 유산에 대한 환기, 유산의 구성 – 유산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설명과 유산의 성격, 특히 문화유산의 경우 그 의미와 관련된 '이야기'
- 해당 유산이 잠정적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유
- 유산의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속성에 대한 요약

즉 등재신청과 향후 등재를 위한 전반적인 근거를 요약한다.

유네스코는 등재신청 마지막 단계로 관련 유산이 등재되는 경우,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 이 유산이 어떤 유산이며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위의 기술문을 활용할 수 있다.

유산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 방법의 개발도 가능하다. 문화유산의 경우, '세계유산목록: 간극 메우기 – 미래를 위한 실행계획(The World Heritage List: Filling the Gaps – An Action Plan for the Future, ICOMOS, 2005a)'을 보완하는 주제, 시대, 지역, 유형적 차원의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자연유산의 경우에는 '세계유산목록: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자연유산을 확인하기 위한 안내 및 미래의 우선순위(The World Heritage List: Guidance and Future Priorities for Identifying Natural Heritage of Potential Outstanding Universal Value (IUCN, 2006))'를 참고한다. 가령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것이 보편적인 관련성이 있고 해당 유산이 그 주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면, 그러한 연구가 유산의 가치를 탐색하는 데에 유용한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문화유산의 의미와 그 상대적인 가치는 그 주제를 확인하는 데서 시작해야 하며 그 다음 시대, 지역에 대한 평가 순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런 다음 최종적으로 그것이 기념물인지, 건조물군인지 아니면 유적인지 등 유산 유형을 정의하는 순서여야 한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는 문화적 가치에 대한 평가와 함께 완전성과 진정성, 보호관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별도로 다룬다.

KEY MESSAGE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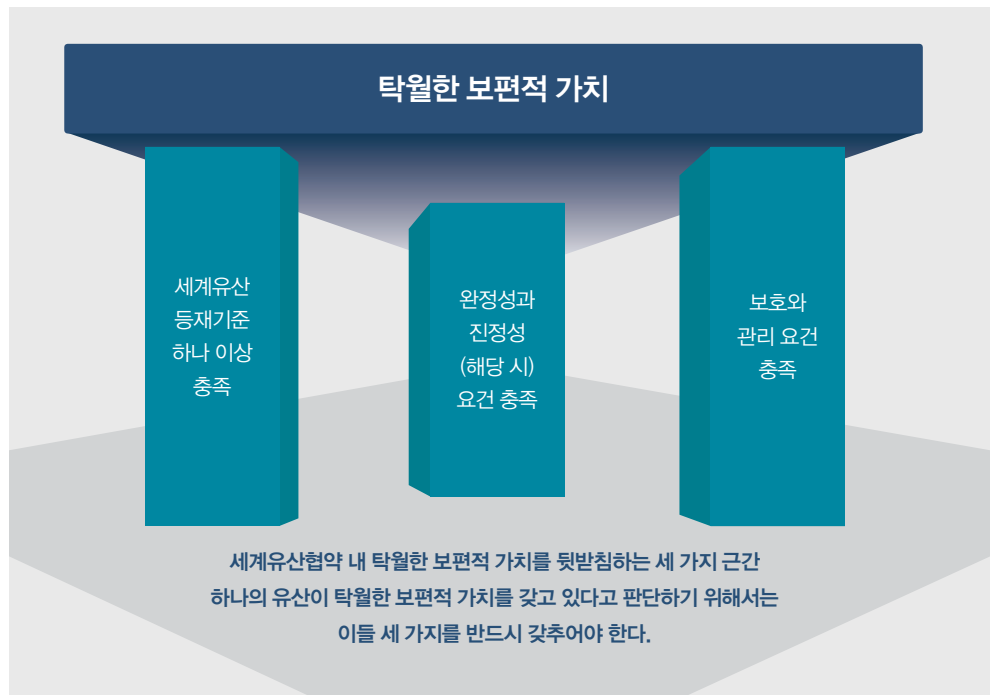
KEY MESSAGE

아무리 좋은 주장도 사실을 대체할 수는 없다.

3 유산의 정의와 이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하면 이는 등재 실패의 주된 이유가 된다. 아래는 매우 흔한 경우이다.

- 명확한 정의가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광범위하거나(자유나 기억에 대한 이야기 등) 협소해서(병원이나 성곽의 구체적인 유형, 특정한 지질학적 현상, 특정 종의 가치에 대한 내용 등) 그 중요성을 정의하는 데 있어(문화유산의 경우에는 그 이야기나 서사가) 합리적인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 전반적인 중요성에 대한 정의 없이 하나의 유산이 갖는 일련의 특징을 모아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주장하는 경향을 띠는 경우
- 국가적 또는 지역적 관심이 있는 측면에서만(예를 들어 국가적, 지역적 중요성과 상징성) 유산의 등재타당성을 제시하는 경우
- ‘문화의 교차로,’ ‘독특한 유적’처럼 왜 해당 유산이 세계유산 등재기준을 하나 이상 충족시키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제공하지 않은 채 유산에 대한 일반적인 주장만 제시하는 경우
- 석기시대부터 현재에 이르는 모든 기간의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 결국 하나의 문화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증명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 적절한 지구적/지문화적 기준에 따른 비교분석이 부족한 경우



세계유산 등재신청서는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중점을 두지만, 하나의 유산에는 지역적, 국가적 가치도 변함없이 들어있다. 즉 이러한 다른 차원의 가치에 대한 이해 또한 필요하다. 이들 다른 가치는 해당 유산의 자연적, 문화적 풍요로움의 일부이며 모든 가치의 조화로운 보호와 보존, 관리는 바람직한 보존을 실행하는 하나의 목표이다. 지역적 가치를 이해한다는 말은 지역주민, 특히 원주민이 있는 경우에는 그들과 협의한다는 뜻이다. 주민들은 지역적 가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보원이다. 이와 관련해 참고할 만한 자료에는 ‘보편적 가치와 지역적 가치의 연계: 세계유산을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Linking Universal and Local Values: Managing a Sustainable Future for World Heritage (de Merode et al., 2004)’가 있다.

중층적인 문화적 가치

로벤 섬(남아공)

로벤 섬은 다음을 근거로 세계유산 목록에 올랐다.

기준(iii): 로벤 섬의 여러 건물은 이 섬의 어두운 역사를 생생하게 증언한다.

기준(iv): 로벤 섬과 그 감옥은 억압을 이겨낸 인간 정신, 자유, 민주주의의 승리를 상징한다.

섬의 관리와 관련해서는 오랜 기간 건물의 활용 내용이 변경되면서 생성된 복잡한 중층적인 가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이 유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네덜란드 선원들의 휴식 공간
- 19세기 나병환자와 만성질환자를 수용한 요양원/ 격리병원
- 국경전/점령전 기간 중 식민시대 이전의 일부 지도자들을 수감한 감옥
- 2차 대전 중 군사지역
- 1960년대 이후 아파르트헤이트 감옥



© UNESCO / F. Bandarín

속성과 특징물의 확인

세계유산은 해당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여주는 장소이다.

문화적 가치는 시간과 공간의 사회적 구조, 경제적 요구, 정치적 맥락 등 무형의 특징과 연관될 수 있다. 이는 유명한 사건이나 사람, 예술작품, 문학, 과학, 음악과 관련될 수 있다. 그러나 세계유산협약은 유산을 근간으로 하는 협약으로, 유산 자체를 목록에 올리는 것이지 아무리 세계적으로 대단한 영향이 있다 해도 사상이나 사람을 등재하는 것은 아니다. 등재된 유산은 필히 그 속성을 통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자연유산이나 문화유산의 잠정적인 탁월한 가치를 고민한다면 특히 자연유산이라면 보다 일반적으로 특징물로 일컫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전달하고 그러한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속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이들 속성은 보호와 관리 조치, 관련 제도 마련의 중심이며 그 배열을 통해 유산 경계가 확인된다.

속성은 물리적인 특질이나 재질을 뜻하지만, 마찬가지로 물리적인 특질에 영향을 끼치는 어떤 유산과 연관된 과정, 즉 독특한 경관을 형성시킨 자연적 과정과 농업상의 과정, 사회적 합의나 문화적 관습일 수 있다. 자연유산이라면 특정한 경관의 특징물, 주거지역, 환경적 특징과 관련된 사항(원래 모습이 그대로이거나, 환경적으로 높은/원시적 수준), 주거지의 규모와 자연성, 야생동물 개체의 규모와 생존력이 해당될 수 있다.

복합유산, 특히 여러 속성이 복잡하게 중층으로 형성되어 있는 문화유산의 경우 유산이 전달하는 중요한 속성과 가치를 시각적인 자료로 만드는 방식이 유용하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료는 여러 속성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갈등이나 관리상의 문제를 조명할 수 있고, 유산 경계를 설정하는 데에도 반드시 필요하다.

KEY MESSAGE

확실한 등재근거만 택한다.

유산을 확장하는 경우에는 기존 신청서의 속성을 검토하는 한편, 제시된 확장 예정구역의 속성이 기존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똑같이 유지하면서도 이를 어떻게 예증, 확대, 보완, 또는 증폭시킬 수 있는지가 고려된다.

세계유산 등재기준에 대한 잠정적인 탁월한 가치의 확인과 적절한 기준의 명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증명하는 과정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하나 이상의 세계유산 등재기준의 근거를 제시하는 일이다(1.3항의 목록 참조).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기술과 등재기준의 선택 간에는 분명하고 논리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연관성이 분명하지 않다면 해당 유산에 선택된 등재기준이 적절하지 않으며 따라서 재검토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등재기준을 잘못 적용하면 이는 유산의 평가와 성공적인 등재에 장애가 될 수 있다.

하나의 유산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시키려면 단 하나의 등재기준만 충족하면 된다(단 기준(vi)의 경우 위원회는 이를 다른 등재기준과 함께 적용하는 것을 선호한다). 특정한 가치와 속성에 대한 연구와 자료가 잘 뒷받침되지 않는 한 하나의 유산을 가능한 많은 기준을 근거로 등재신청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으며 그로 인한 특별한 이점도 없다. 논거가 부족한 등재기준은 등재신청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여러 등재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비교분석, 유산의 경계 등 다른 측면에서 해당 유산을 뒷받침할 많은 연구가 필요함을 의미할 수 있다.

기술 내용은 선택한 등재기준을 충족시킨다는 단순한 주장을 뛰어 넘어야 하며, 왜 해당 유산이 그러한 기준에 맞는지 설명해야 한다. 또한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전달하는 속성이나 특징물 또한 명시해야 한다.

가령, 기준(ii)를 택하면서 해당 유산이 인간의 가치의 중요한 교류를 증명한다고 할 때, 그것이 어떤 교류인지, 해당 유산의 속성을 통해 그것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어서는 안 된다.

이와 비슷하게 기준(iii)에서는 해당 유산이 독특하거나 독보적인 증거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이러한 증거를 보여주는 속성이 명시되어야 한다.

이들 기준 중 어떤 것의 근거를 설명하더라도 사상이 중요하다는 사실 뿐 아니라(가치의 교류나 독보적인 증거) 해당 유산이 그러한 사상을 반영하는 속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유산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느끼거나 경험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은 무엇인지를 설명해야 한다.

기준(vii)의 경우, 독보적인 자연미와 미적 중요성은 명확한 증거와 확고한 지적 분석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단지 독보적인 자연미가 있다고 주장만 하면서 멋진 사진만 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기준(ix)를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중요한 생태적 및 생물학적 과정을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가 필요하며 이는 전 세계의 학술적/주제적 맥락에서 증명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맥락이 명확해야 하며, 왜 해당 유산이 그러한 맥락에서 탁월한 사례인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유산 확장과 관련해 등재기준에 대한 심사는 기존의 등재 당시 사용된 등재기준과 관련해 진행되며 그 내용이 제시된 확장신청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검토한다. 확장신청에는 기존 신청서와 동일한 등재기준의 타당성이

제시되어야 한다. 소규모 확장의 경우 전체는 아니더라도 기존 등재신청의 속성 중 일부를 더 드러나게 할 수 있다. 물론 기존 등재기준이 현재의 전반적인 속성만으로도 그 타당성을 설명하기에 충분하므로 여전히 유효하다고 결론낼 수도 있지만 말이다. 다른 혹은 새로운 속성은 확장신청 구역 내에서 명시될 수도 있지만, 그들은 이미 탁월하다고 인식된 것들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확장은 기존 등재신청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사국은 기존 유산과 그 확장구역을 결합한 유산에 대해 새로운 등재기준을 평가받기 위해 확장등재를 신청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등재신청서는 유산 전체를 아울러야 하며 제시하는 새로운 등재기준에 대한 근거도 제공해야 한다.

진정성 평가

운영지침에 나와 있는 다른 중요한 조건 두 가지는 신청유산의 진정성과 완전성과 관련 있다. 진정성은 문화유산과 '복합'유산의 문화적 측면에만 적용된다.

진정성은 유산의 속성과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연계와 관련된다. 둘 사이가 실로 명확하게 연결되어야만 해당 속성들이 유산의 가치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94년 나라 회의에서는 '이러한 가치에 대한 이해는 부분적으로 이들 가치와 관련된 정보원이 어느 정도로 신뢰할 만하거나 진실하다고 판단하는가에 달려있다(Our ability to understand these values depends, in part, on the degree to which information sources about these values may be understood as credible or truthful.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1994, p. 94)'고 논의한 바 있다.

운영지침은 '다양한 속성을 통해(제시된 등재신청 기준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이) 그 문화적 가치가 진실하고 신뢰할 만하게 표현되었다면 그 유산은 진정성의 조건을 충족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운영지침 82항)'고 적고 있다.

운영지침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전달 혹은 표현한다고 제시한 속성은 다음과 같다.

- 형태와 디자인
- 재료와 물질
- 용도와 기능
- 전통, 기법, 관리체계
- 위치와 주변 환경
- 언어, 다른 형태의 무형유산
- 정신과 감정
- 다른 내부와 외부 요소


사례연구

일레로 카수비 부간다 왕릉군(우간다)에는 다음과 같은 속성이 있다.

형태와 디자인

카수비 왕릉군의 공간적 구성 - 현재 가장 잘 남아있는 바간다 왕궁/건축물군

● ● ●



© UNESCO / Lazare Eloundou

• • 재료와 물질

무지부 아질라 음팡가 내 4개 왕릉과 주 건물, 재료의 사용 - 나무, 짚, 갈대, 초벽

용도와 기능

종교적 이용 - 바간다의 중요한 영적 중심지로 문화적/종교적 관습과 의식을 비롯해 가장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종교적인 장소이다.

전통, 기법, 관리체계

전통적 관리 - 복합적인 책임체계를 통해 전통적인 방식으로 지속 관리되고 있는 농업 환경이다.

위치와 주변 환경

원 위치에 여전히 남아있는 농촌 환경 - 전통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는 농업지역 등

언어, 다른 형태의 무형유산

종교적 이용 - 바간다의 중요한 영적 중심지로 카바카와 그 대리인들이 바간다 문화와 관련된 중요한 제의를 행하는 장소가 있는 등 가장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종교적인 장소이다. 문화적, 종교적 실천과 제의도 여기에 포함된다.

정신과 감정

카수비 왕릉군은 역사적, 전통적, 영적 가치를 지닌 여러 건조물과 자연요소로 가득하다.

이는 건물과 평면도 등 물리적 속성과 문화적 과정 등의 무형적 속성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다. 2010년에는 26헥타르에 이르는 카수비 왕릉군의 가장 중요한 건물 하나가 화재로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어 손상된 건물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각 유산에 있어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전달한다고 확인된 속성들은 그러한 가치를 '진실하게' 전달 또는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가령 도시지역이라면 해당 유산에 거주하는 공동체의 구조, 공간계획, 전통, 사회경제적 환경의 구조, 그리고 그러한 가치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즉 진정성은 여러 속성들이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잘 전달하도록 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공동체의 번영이 중단되고, 건물이 붕괴되며, 전통이 사라지는 등 속성을 악화시키는 상황이 발생하면 진정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고고유적의 경우 진정성은 해당 유적이 그 의미를 진실 되게 전달하는 능력에 달려있다. 추측에 근거해 이루어지는 복원은 많은 경우 이러한 과정을 방해하고 진정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경우에 따라 불완전한 건축물 복원이 타당할 때도 있으나 이 또한 진실된 의미전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진정성에 대한 기술문에는 유산의 여러 속성이 유산의 가치를 진실하게(신뢰할 만큼,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방

식을 통해 하나의 유산이 그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어떻게 전달하는지에 대해 기술해야 한다(운영지침 79-86항).

아래 표는 평가 시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의 예를 담고 있다. 이들 속성과 질문은 신청유산의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속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지 않고는 택해서는 안 되며, 유산의 속성으로 평가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무비판적으로 아래 표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 신청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속성	평가 문항의 예
모든 속성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정성은 유산이 속한 문화적 맥락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유산의 문화적 맥락은 무엇인가? 해당 속성이 유산의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신뢰할 만하고 진실되게 전달하는가? 유산의 속성이 믿음만하며 그 가치를 정직하게 묘사하고 있어 유산의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잘 이해할 수 있는가? 속성에 내재되었거나 표현된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 해당 유산이 갖는 문화유산으로서의 애초의 특징은 무엇이었으며,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했는가? 속성의 변화로 인해 해당 유산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이 감소하였는가? 해당 유산이 일정 정도 복원된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이는 완전하고 구체적인 기록에 근거한 것이었는가? 복원을 위해 추측이 개입하지는 않았는가? 재건은 때때로 유산 가치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형태와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태와 디자인이 변했는가? 변했다면 어느 정도인가? 변화는 때로 유산의 가치 중 한 부분일 수 있음에 주목한다. 형태와 디자인은 모든 측면에서 정확한가?
재료와 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료와 재질 혹은 물질이 변했거나 대체되었는가? 그렇다면 어느 정도인가? 수리는 해당 문화의 전통 재료를 이용해 이루어졌는가?
용도와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용도와 기능에 관계되는 이는 누구인가? 용도와 기능이 지속되고 있는가, 아니면 변했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용도와 기능의 강도가 변했는가? 그러한 용도와 기능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메커니즘은 얼마나 튼튼한가?
전통, 기법, 관리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전통과 기술, 관리체계와 관계되는 이는 누구인가? 그러한 전통과 기술, 관리체계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메커니즘은 얼마나 튼튼한가? 그러한 전통과 기술, 관리체계가 변했거나 변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그러한 전통과 기술, 관리체계의 견고함이 변했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수리는 해당 문화의 전통 재료를 이용해 이루어졌는가?

속성	평가 문항의 예
위치와 주변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나 주변 환경이 변했는가, 그렇다면 왜, 그리고 어느 정도 변했는가? <p>유의점: 이들 속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유산의 경계와 적절한 주변 환경을 분명히 이해하는 일이 필수며, 이는 경계 설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p>
언어, 다른 형태의 무형유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은 누구이며 그러한 무형유산을 지키고 관리하며 실행하는 이들은 누구인가? • 그러한 언어 혹은 다른 형태의 무형유산이 지속되고 있는가, 아니면 변했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 그러한 언어 혹은 다른 형태의 무형유산의 활용 범위가 감소했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 해당 언어나 다른 형태의 무형유산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메커니즘은 얼마나 튼튼한가? • 해당 언어나 다른 형태의 무형유산을 활용하는 인구는 어느 정도로 자립 가능한가? 그들의 자립을 위협하는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정신과 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되는 정신이나 감정은 누구에게 깃들어 있는가? • 그러한 정신이나 감정이 지속되고 있는가, 아니면 변했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 그러한 정신이나 감정을 느끼는 범위가 감소했는가? • 그러한 정신이나 감정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메커니즘은 얼마나 튼튼한가? • 그러한 정신이나 감정을 활용하는 인구는 어느 정도로 자립 가능한가?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관련 없는 유산요소를 신청서에서 고려할 필요는 없다.

사례연구

문화유산의 진정성과 완전성

아플라즈 관개시설(오만)

아플라즈 관개시설은 오만에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3,000여개의 관개시설을 대표하는 유적이다. 옛 공학기술을 이용해 극도로 건조한 사막에서 야자나무를 비롯해 다양한 농작물을 재배하는 등 물 자원을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활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유적이다. 여러 공동체가 상호 의존하고 공동체적 가치를 바탕으로 이 관개시설에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오랜 기간에 걸쳐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물자원을 관리하고 공유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애초에는 원우물과 주요 수로 등 일부 시설에 한해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했다. 이후 정착지 내에서 요리, 세탁, 농작물 재배를 위한 물 자원을 공동체에 공급했던 일부 시설이 추가 등재되어 전체 관개시설의 완전성을 보여주었고 있다.



© UNESCO / Véronique Dauge

...

사례연구

• • 고대 나라의 역사기념물(일본)

유산에 포함된 다양한 문화재는 높은 진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보존원칙은 손상되었거나 퇴행이 진행 중인 여러 건축적 요소를 대체하는 데 있어 기존 조성자들이 이용한 재료와 기법을 존중하고 있다. 나라 궁터에서는 원래의 자리에 일부 복원이 진행된 바 있다. 일본 내 전통건축의 지속성과 발굴을 통해 확인한 상당량의 자료 덕분에 복원된 건축물은 디자인과 재료 면에서 높은 수준의 진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동일한 평가는 정원의 복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중요한 추정 요소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복원된 유일한 건축물은 성의 남문이다. 세부 건축과 장식적 요소는 고고학적 증거, 그리고 같은 시기 다른 지역에 남아있는 건물에 상당 부분 의지하고 있다.



© UNESCO / G. Boccardi

완전성 평가

완전성은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모두에서 요구된다.

완전성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전달하는 속성의 완성도와 온전함을 측정한다. 따라서 유산의 완전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운영지침 88항에는 아래 내용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을 기술하고 있다.

아래에 대해 유산을 평가한다.

-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표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속성]의 포함 정도
- 유산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특징과 과정을 완전하게 나타낼 만큼 적절한 규모인지
- 개발 및/또는 방치로 인한 부정적 영향의 정도

핵심단어는 '전체성,' '온전함,' '위협의 부재'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다.

- 전체성(wholeness): 유산 내 필요한 모든 속성
- 온전함(intactness): 여전히 존재하는 필요한 모든 속성 - 어떤 것도 사라지거나 크게 훼손되거나 부패하지 않음
- 위협의 부재(absence of threats): 그 어떤 속성도 개발과 쇠락, 방치로 위협을 받지 않음

운영지침은 세계유산의 여러 등재기준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89-95항).

완전성에 대한 기술문에서는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전달하고, 그 가치를 상실했거나 관련 특징이나 속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많은 부분이 해당 유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유산이 만족스러운 보존상태를 유지하고 그 가치를 위협 받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일련의 특징과 과정 그리고/또는 속성들이 구역 내에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등재 신청구역을 선정한 논리적, 학술적 근거는 언제나 필요하다.

세계유산 신청서에 유산의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연관된 유산 보존현황의 여러 측면에 대한 평가를 담을 필요는 없다. 비슷하게 세계유산과 관련 없는 완전성에 대한 다른 개념이나 고려 중인 가치를 소개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완전성을 평가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유용하다.

-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전달하는 유산의 주요 특징과 속성은 전체적이며 온전한가?
- 해당 유산은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표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를 갖고 있는가?
- 유산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특징과 과정을 완전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적절한 규모인가?
- 유산의 주요 특징과 속성의 상태는 어떠한가? 잘 보존되거나 양호한 상태인가?
- 문화경관, 역사도시 또는 다른 살아있는 문화경관의 경우 그들의 독특한 특징에 있어 핵심이 되는 과정과 관계, 역동적 기능이 유지되고 있으며 안정적인 상태인가?
- 자연유산의 경우, 물리적 특징(예, 지형, 거주지)에 핵심이 되는 과정과 관계, 역동적 기능이 안정적인 상태이며 운영에 적절한 규모로 유지되고 있는가?
- 해당 유산이 개발과 방치, 혹은 여타 퇴행 과정의 부정적 영향을 받는가?
- 쇠락을 일으키는 과정은 통제되고 있는가?

이들 중 몇 가지는 유산의 경계와 관련이 있다. 필요한 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해당 유산의 규모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유산 경계는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고되어야 한다. 행정적인 조정이나 유산 소유권을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하면 편리하겠지만, 이러한 방식이 유산의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전달하는 데 항상 적합한 것은 아니다. 행정적인 편의가 신청유산의 경계 설정에 우선 고려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상대적으로 넓은 경관, 서식지, 지질학적 체계나 문화적 체계를 대표하는 유산이 완전성의 조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는 신청유산이 더 넓은 구역과 차별화되는 논리적 근거가 있으며 해당 유산이 그러한 구역과 관련해 잠정적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뚜렷함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KEY MESSAGE

완전성과 진정성은 어떤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다양한 측면을 나타낸다.

복합적인 경관과 가치, 혹은 과정의 흔적이 있는 몇몇 유산의 경우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속성을 지도화해 합리적인 경계 설정이 가능함을 보여줄 수 있다. 이는 해당 유산의 경계가 모든 가치를 적절히 포괄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완전성을 증명하는 의미있는 방법이다.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은 인간의 활용이 허용되는 동시에 세계유산목록과도 양립할 수 있다. 단 이는 지속 가능하면서도, 유산의 가치와 양립할 수 있을 때에 한한다. 신청서에서 유산의 상태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유산의 상태에 인간과 다른 요소가 영향을 끼치는 구역을 정직하고 공개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의 경우 유산 요소들이 지리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고 원거리에 위치할 수 있어 단 하나의 경계를 크게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연속유산으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교분석

비교분석의 목적은 첫째, 세계유산목록에 신청유산이 포함될 여지가 있는지를 분명히 확인하고 둘째, 동일한 지리적 문화권(문화유산) 또는 세계적으로(자연유산) 비슷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 향후 등재를 신청할 수 있는 비교 가능한 유산이 없음을 증명하는 데 있다. 지리적 문화권은 해당 유산으로 표현되는 가치에 따라 다양하며 지역 혹은 세계적 차원에서 정의될 수 있다.

비교분석은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관련 특징이 어떻게 조합을 이루는지를 정의하는 데서 출발해 여러 속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즉 해당 유산에는 어떤 특별한 중요성이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비교분석은 신청유산과 동일한 가치를 표출하는 유산을 통해, 정해진 지리적 문화권(문화유산) 또는 세계(자연유산)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가치는 분명하게 정의되어야 하며, 문화유산의 경우 지리 문화적 틀은 이들 가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 전 세계가 그러한 지리 문화적 틀이 될 수 있다.

자연유산의 경우에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비교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따라서 해당 유산이 위치한 지역 뿐 아니라 세계 다른 지역에 위치한 유사 유산과의 비교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사막 환경을 비교하려면 아프리카의 다른 사막 뿐 아니라 세계의 다른 사막과도 비교해야 하는 것이다.

연속유산의 경우에도 단일 요소로 이루어진 유산과 동일한 원칙을 기준으로 유산 전체에 대한 비교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체 유산의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 관련 특징과 속성을 여타 유산과 비교해 첫째, 세계유산 등재 여지가 있는지 둘째, 등재를 신청할 수 있는 다른 비슷한 연속유산이 없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연속유산의 비교분석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 이는 바로 유산요소의 선택 문제이다. 신청서에는 해당 유산요소의 선정 논리가 설명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다른 유사 유산과의 비교, 그러한 유산 선정의 타당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우선 그러한 가치와 속성의 결합이 세계유산목록에 이미 대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신청 유산을 기 등재된 다른 유사 유산과 비교해 이루어지며, 마지막 단계에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신청유산과 비교할 만한 대상으로 세계유산목록에 올라 있는 유산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비교분석의 목적은 해당 유산이 특별한지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유산이 정의된 맥락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는 데 있다.

세계유산 등재기준의 그간 변화

기존 세계유산과의 비교를 진행할 때 유념해야 할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그간 세계유산 등재기준에 일정한 변화가 있었다는 점이다. 2005년 이전에는 등재기준이 문화유산 등재기준(i-vi)과 자연유산 등재기준(vii-x)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러나 2005년 운영지침 개정안이 채택되면서 이후 10개의 단일한 기준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전 기준과 새로운 기준에 따른 각각의 번호는 다음과 같다.

	문화유산 등재기준	자연유산 등재기준
2005년 이전 운영지침	(i) (ii) (iii) (iv) (v) (vi)	(i) (ii) (iii) (iv)
2005년 이후 운영지침	(i) (ii) (iii) (iv) (v) (vi)	(viii) (ix) (vii) (x)

이전의 4개 자연유산 등재기준은 새 목록에서 그 순서가 바뀌었는데, 이전의 기준(iii)이 현행 운영지침에서는 기존의 기준(i, ii, iv) 앞에 배치되었다. 또한 기준을 설명하는 구체적인 단어도 그간 변화가 있었다. 그 중 가장 큰 변화는 1992년에 있었으며, 그에 따라 이 시기 전후에 등재된 유산을 서로 비교할 때는 이를 유념해야 한다.

두 번째로 향후 동일한 지리적 문화권, 혹은 경우에 따라 세계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유산의 등재신청이 있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일이 필요하다. 신청유산은 선정된 가치와 속성을 기준으로 알려진 여타 다른 사례와 비교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시 해당 유산이 다른 유산과 어떻게 비교되며, 유사 유산이 있는 경우에는 왜 해당 신청유산을 최선의 사례 혹은 대표성을 띠는 사례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향후 다른 유산이 연속유산으로 포함될 수 있는지를 결론으로 설명해야 한다.

유형적인 비교나 해당 유산만이 갖는 요소를 다른 유산의 다른 요소와 비교하는 일은 주장하는 가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한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다.

진정성과 완전성은 비교분석의 중요한 부분이다. 비교 가능한 유산 중에서는 더 크거나 혹은 더 적은 진정성과 완전성을 갖는 유산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비교분석의 말미에는 기 등재된 유산과 관련해, 그리고 정의된 지리적 문화권(문화유산)이나 세계(자연유산)의 여러 유사 유산과 비교해 해당 신청유산을 위치를 설정할 수 있다. 비교분석에서는 신청유산이 세계유산목록에 오를 여지가 있으며 신청 가능한 유사 유산이 없음을 밝혀야 한다.

비교 가능한 유산에 대한 정보는 아래에서 찾을 수 있다.

- 세계유산목록
- 등재신청서, 자문기구 평가, 기 등재된 비교 가능한 유산에 대한 과거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문
-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주장을 만족시킬 만한 수준을 가늠할 만한 등재 권고를 받지 않은 유산에 대한 정보
- 동일 국가와 다른 나라의 잠정목록
- 세계유산목록: 간극 메우기 - 미래를 위한 실행계획(The World Heritage List: Filling the Gaps - An Action Plan for the Future)(ICOMOS, 2005a)
- IUCN과 ICOMOS의 주제연구

- 세계보호구역데이터베이스(World Database on Protected Areas, www.wdpa.org) – 자연유산일 경우
- 기타 전문가단체(Docomomo, TICCIH)의 목록
- 기타 연구보고서, 문헌 또는 관련된 국제전문가가 제공하는 자료

이들 자료 중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자료는 1.1항에 나와 있다.

관련 유산 분야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전문가들 또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비교분석을 진행하고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 국내 최고 전문가들 외에도 해외 전문가를 활용하면 신청서 준비에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비교분석은 등재과정에서 빠를수록 좋으며, 원칙적으로 향후 등재신청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협약 가입 당사국의 잠정목록에 있는 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비교분석 시 전문가그룹 활용 사례

자연유산의 경우 비교분석을 위해 전문가그룹을 활용하는 방식이 선호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규 신청의 대상이 되는 유산은 아래와 관련해 뚜렷한 분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 유산이 대변하는 주제, 지리 문화적 배경, 생물지리적 영역 관련. 해당 분류는 IUCN과 ICOMOS가 진행한 세계유산목록과 잠정목록 분석 내용에 제시된 정보에 근거해야 하며 육상습지, 사막, 해양, 해안 지역, 암각화, 다리, 문화경관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 특정 세계유산 등재기준 관련. 이는 지리적 문화권(문화유산)이나 전 세계(자연유산)를 대상으로 하는 비교분석 틀을 제공하는 데 쓰여야 한다.
2. 신청유산의 분류 방식을 근거로 당사국은 해당 유산이 대변하는 주제, 지리 문화적 배경과 생물지리적 영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야 한다. 국내 전문가들을 필두로 전체 유산분석에 있어 세계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해외 전문가들도 참여할 수 있다면 이상적이다. 자문기구는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외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다. 유산의 가치를 조기에 식별하고 이에 동의하는 전문가들이 여기에 참여해야 하나 관련 국가와 지역 밖에서 국제적인 관점을 견지할 수 있는 전문가들도 포함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회의 참여의 대안으로 이메일이나 서한으로 의견을 받을 수도 있다.
3. 전문가 그룹은 비교분석의 기초를 제공해야 하는 전체적인 범위에서 유산을 식별해야 한다. 목록 선정에 도움이 될 중요한 정보원은 위에 언급되어 있다.
4. 다음으로 전문가 그룹은 비교 시 신청유산의 위치를 가능할 수 있도록 신청유산과 비교분석의 대상이 되는 유사 유산에 대해 양적 그리고 질적으로 가능한 많은 정보를 획득해야 한다. 정보수집과 비교분석의 시작은 유산 등재 시 예상되는 등재기준에서 출발해야 한다. 근거가 되는 정보원을 명시할 수 있다면 비교분석 내용을 장문으로 기술할 필요는 없다. 정리된 표로 분석 내용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운영지침은 비교분석 안에 다양한 유산의 상대적인 보존현황을 다루는 것이 적절함을 분명히 밝히

KEY MESSAGE

국외전문가들이 비교분석에 대한 동료검토를 진행한다.

고 있다. 비교 대상이 될 만큼 중요하지만 보존 상태가 나쁘거나 효과적인 보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유산은 양호한 보존 상태에 높은 수준의 보호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유산에 비해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약하다고 간주될 수 있다.

5. 전문가 그룹은 자체 연구와 토의를 기반으로 최종 비교분석을 진행하며 신청유산에 대해 결론 내린다 (아래 결론에 대한 토의 내용 참조).

앞서 주목한 바와 같이 주제, 시대, 지역 그리고 유형을 비롯한 다양한 기준에서의 연구가 유산의 가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비교할 만한 유산은 그러한 연구의 한 부분이 된다.

경우에 따라 비교연구의 기초가 되는 기존의 정보나 연구가 아예 없거나 관련 정보가 매우 제한적일 수도 있다. 이때 선택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필요한 연구를 직접 진행하거나 명망있고 관련 있는 다른 전문가나 기관에 이를 의뢰하는 것이다. 그러한 전문가나 단체는 해당 등재신청과 독립적인 관계에 있고 국제적인 신뢰를 받는 곳이 좋다. 여기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다른 나라의 비교분석 정보를 평가하는 데에는 언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극복해야 한다. 관련 비교연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량의 정보가 이런 단순한 이유로 무시되는 일은 지식의 차원에서든 실용적 차원에서든 받아들이기 어렵다.

비교분석은 유산의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이해하는 중요한 부분이며 그러한 가치를 확인하는 절차에 포함된다.

비교분석에는 결론이 있어야 한다. 철저하고 객관적인 비교분석은 성공적인 등재신청에 크게 기여한다. 비교분석의 결과는 다음 세 가지로 이어질 수 있다.

- 유사 유산과 비교 시 해당 유산이 우위에 있고 세계유산목록의 중요한 간극을 메울 수 있으므로 당사국이 등재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 유사 유산과의 비교 결과 해당 유산의 지위가 낮고 세계유산목록의 어떠한 간극도 메울 수 없으므로 당사국이 유산의 등재신청을 면밀히 재고할 수 있다.
- 해당 유산은 유사 유산과 동일한 수준의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또한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주장이 상대적으로 약하거나 이도저도 아닌 경우일 수 있다. 우위에 있는 유적의 수가 소수에 불과하다면 관련 개념을 연속유산 및/또는 국가간 유산에 포함된 다른 유산으로 확장하거나 연계할 수 있다.

유산 확장의 경우 원래의 등재신청서에 포함된 비교분석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제시된 확장안을 기존 등재신청 내용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존 등재신청의 가치가 제시된 확장안에서 어떻게 명확히 설명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비교분석 시 고려해야 하는 몇 가지 핵심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다.

- 분석은 가능한 엄격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항상 넓은 범위를 유지하는 한편 해당 분석의 객관성을 왜곡할 수 있는 국가적 자존심과 같은 사안은 배제해야 한다(예, '이 유산은 우리나라 최고의 유산이다').

- 국내외에서 획득 가능한 최선의 학술 정보를 근거로 해야 한다. 미출간 보고서나 관리대장 같은 회색문헌은 신청서에서 여러 논문과 출판물이 언급되는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 주제연구는 출처를 밝혀야 하나 전체 분석을 전개하는 배경정보로 사용한다. 관련 주제연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 자연유산은 세계적인 기준에서 보존상의 우위를 평가하는 작업이 매우 유용하며 이는 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자연유산의 경우, 국제보존협회의 생물다양성고밀도지역 또는 WWF의 세계 생태지역200 등). 그러나 그러한 평가에는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답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다. 비교분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해당 유산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독특한지를 규정할 수 있는 세계적인 기준의 평가 내용을 우선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 비교분석의 초안이 완성되었다면 추가정보를 획득하고 의견을 청취하며, 관련 내용을 검증할 수 있도록 국내외 여타 유수의 전문가들과 이를 공유할 것을 권한다. 자문기구는 당사국 요청 시 의견 제시 혹은 동료검토를 진행할 수 있는 주요 전문가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초안은 전체 등재신청 과정 상 중요한 단계로 인식해야 한다.

비교분석은 종종 등재신청서의 약한 부분으로 등재 성공의 걸림돌이 된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 분석의 객관성 부족
- 동일한 지리적 문화권(문화유산) 밖이나 세계(자연유산) 단위에서 비교할 만한 유산을 찾으려는 결연한 노력의 부재
- 세계유산목록과 잠정목록을 비교 가능한 유산에 대한 정보원으로부터 활용
- 신청유산이 더 중요해 보이도록 신청유산을 명백히 덜 중요한 유산과 비교
- 신청유산을 전혀 다른 목록의 유산과 비교
- 신청유산의 비교 기준을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관련 있는 구체적인 속성이 아닌 유산의 덜 중요한 측면이나 관련 없는 속성으로 삼음

비교분석의 결과가 확실하고 설득력 있지 않다면 유산 등재에 대한 의도를 재고해야 한다.

사례연구

당사국의 주제연구 준비

주제연구는 비교분석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주제연구에 대한 자료는 1.1항을 참고한다.

주제연구는 이코모스가 진행하나 특정 유산의 등재신청에 도움이 되도록 당사국이 보다 철저하고 세부적인 주제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래는 이와 관련된 사례이다.

- 프랑스가 국외 참가자를 포함한 워크숍을 거쳐 지중해 인근의 목축에 대해 진행한 주제연구
- 피에몬테와 롬바르디아의 사크리 몬티(이탈리아) – 등재 당시 포괄적인 주제연구 진행
- 리버풀 – 해양무역도시(영국) 신청서에는 사실상 주제연구에 해당하는 비교연구 내용이 포함



사례연구

- 르몽 문화경관(모리셔스) 신청서에도 노예제에 대한 항거와 관련된 주제연구가 포함
- 산 미겔 보호지구와 아토토닐코의 나사렛 예수 교회 (멕시코) 신청서에는 남미와 카리브해의 식민도시에 대한 사실상의 주제연구가 담겨 있으며, 지역적으로 관련성 있는 분석이 제시됨



© UNESCO / Jasmina Sopova

사례연구

비교분석

리버풀 - 해양무역도시(영국)

우수 사례로 꼽히는 본 유산의 비교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해당 유산이 평가되어야 하는 틀, 즉 대영제국의 항구이자 유럽 이민자들의 출발지라는 유산의 중요한 주제를 기술하고 있다.
- 유럽 다른 항구와의 비교를 시작으로 규모와 물동량, 선박 운영의 성격과 기간, 기반시설, 거점도시와의 경제관계 등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주장과 관련된 유산의 속성을 검토하고 있다. 진정성과 완전성 문제가 비교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 리버풀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럽의 비교 가능한 항구와 여타 상징적인 항구를 검토하고 있다. 관련된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 그리고 완전성과 진정성 면에서도 이들 항구가 함께 고려되었다.
- 목록에 올라 있는 구체적인 항구 유산과 항구를 포함한 유산 등 기존 세계유산목록에 있는 유산을 다시 검토해 관련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살피고 있다.



© OUR PLACE - The World Heritage Collection

신청서의 결론 부분은 다음과 같다.

‘국제적으로 리버풀처럼 무역과 상업에만 오롯이 집중된 항구도, 대영제국이든 혹은 다른 어떤 제국이든 그 부와 열망, 힘을 표출한 항구도 없었다. 세계유산이 된 항구 중에는 리버풀보다 더 오래 되었거나 혹은 더 오랜 기간 운영된 항구도 있지만, 이들 중 어떤 곳도 오늘날 리버풀의 도시경관이 보이는 가치와 역사적 중요성을 갖는 곳은 없다. 리버풀은 지금도 비슷한 다른 모든 항구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위치에 있다. 이는 특히 항구의 기반시설과 역사적인 도시경관이 얼마나 잘 남아있는가에서 확인된다.’

미과샤 공원(캐나다)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자연유산의 경우 지금까지 진행된 가장 종합적인 비교분석 연구는 데본기 화석유적인 캐나다 미과샤 공원에서 진행되었다. IUCN은 당시 활용된 혁신적이면서도 학술적인 방법론에 대해 자연유산 평가 시 이를 보다 광범위하게 채택, 각색해 사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접근방식이라고 보았다. 세 단계로 이루어진 그러한 방법론은 다음과 같다.



사례연구

- 평가 등재기준 수립: 등재기준 확인을 위해 IUCN 이 화석 유적의 고생물학적 중요성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10가지 질문으로 이루어진 체크리스트, 그리고 화석 유적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 9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웰스(Wells, 1996)의 등재기준을 기준으로 삼았다.
- 주요 평가대상 유적의 선정: 문헌연구와 다른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전 세계 61곳의 데본기 척추동물 화석유적을 추렸다. 그런 다음 화석유적으로서 5가지 중 최소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곳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해당 유적을 15곳으로 축소했다.
- 점수에 기반한 평가 시행: 마지막 15곳의 유적은 화석의 실제 수치를 근거로 임의로 또는 절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별 등재기준에 따라 평가했다.



© Neumeier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기술문 작성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기술문은 등재신청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견고하면서도 확실하게 준비해 둘 것을 권고한다. 성공적인 등재신청을 위해서는 잘 준비된 기술문이 필요하다.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기술문을 작성하지 못하면 해당 유산은 세계유산 등재 대상으로 의문의 여지를 남길 수 있으며 해당 신청을 재고해야 할 수 있다.

앞서 논의한 등재신청의 여러 과정은 관련 세계유산 등재기준을 확인하고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기술문을 준비할 수 있는 시점에 이르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정의되어야 하며, 이를 전달하는 특징과 속성을 확인한다.
-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적절한 세계유산 등재기준을 선택해야 한다.
- 경우에 따라 해당 유산이 연속유산인지의 여부를 답해야 하며, 유산요소의 선정은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근거로 타당성을 갖춰야 한다.
- 진정성과 완전성을 평가하고 이를 설명해야 한다.
- 철저하고 객관적인 비교분석을 완료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를 활용해 고려 중인 등재기준이 해당 유산에 여전히 적절한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확실한 증거와 견고한 주장으로 선택한 등재기준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기술문 작성에도 활용해야 한다. 기술문 작성을 통해 선택한 등재기준에 대한 재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신청서를 정교하게 다듬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KEY MESSAGE

OUV 기술문 초안은 신청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작업이 시작되기 전 명확히 정리되어야 한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기술문은 아래 양식을 따라야 한다(최대 A4 2매, 운영지침 부록 10 참조):

- 간략한 종합:
 - 사실 정보의 요약(유산 구성요소, 지리적 및 역사적 맥락, 최대 150단어)
 - 특성의 요약(가치, 속성, 최대 150단어)
- 등재기준의 타당성(관련 내용을 보여주는 가치와 속성, 해당 유산이 제시된 각 등재기준을 충족시키는 이유, 기준별 최대 200단어)
- 초안 작성/등재 시점의 완전성에 대한 기술문(모든 유산에 해당),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전달하는 유산의 속성이나 특징이 어떻게 존재하며 유산의 경계 내에 위치해 있는지 설명, 최대 200단어)
- 초안 작성/등재 시점의 진정성에 대한 기술문(등재기준 i-vi에 따라 등재를 신청하는 유산에만 필요),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전달하는 속성이 유산의 가치를 진실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설명, 최대 200단어)
-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관리 요건(시스템과 교육 양쪽 측면에서 보호관리 체계가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유산에 대한 보호관리에 충분할 만큼 견고한지 설명)(보호관리에 대한 사항은 82-91쪽에서 다루고 있다.)
 - 전반적인 틀(최대 200단어)
 - 장기적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내용 - 장기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핵심 내용 설명(예: 주요 위협으로부터의 보호, 수용력과 재정적 유지, 공동체 지원 유지, 최대 150단어)

2007년 이전 등재된 소급 기술문의 경우에는 지침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관련 정보가 있는 경우라면 완전성과 진정성 요소는 등재 당시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기술문은 좋은 등재신청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 가장 어렵고 중요한 작업 중 하나이며 면밀한 고려가 필요하다. 기술문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 향후 보호, 보존, 관리, 모니터링에 대한 정보 전달을 위해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힘 있게 설명한다. 기술문은 유산의 가치와 속성을 의사결정자, 정치인, 일반대중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유산에 대해 제시할 수 있는 가치를 가장 확실히 기술하고 그러한 가치를 전달하는 속성을 설명한다.
- 선택한 등재기준이 견고한 타당성을 갖고 있음을 설명한다.
- 간결하면서도 해당 유산의 가장 중요한 특징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한다.
- 넓은 범위의 참여자들이 작성하며, 전문적인 용어와 언어 사용을 지양한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기술문을 작성하는 작업은 등재신청 과정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유산의 잠정적인 가치에 대한 이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기술문은 설명, 등재근거, 보존, 보호, 관리, 모니터링 등 등재신청서의 모든 항목을 뒷받침한다.

기술문 작성 후에는 이해관계자와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해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해야 한다. 이는 해당 기술문에 대한 광범위한 동의를 얻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동의 내용을 확실히 하기 위해 일정 기간 자문이 필요할 수 있다.

보호관리 부분을 제외하면 이 지점에서 본 기술문을 적절히 마무리할 수 있으나 추가 작업과 자문을 통해 더 나은 수정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는 꽤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며 탄탄한 기술문 작성을 위한 하나의 단계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KEY MESSAGE

등재 준비 전반에 걸쳐 OUV 기술문 초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신규 연속유산 신청의 경우 이 기술문은 유산 전체에 대해 앞서 언급한 기준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다루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해당 연속유산의 개별 요소에 대해 본질적으로 유사한 정보보다는 전체 유산에 대한 요약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이거나, 하나 또는 몇 가지 요소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면서 핵심적인 정보를 다룰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이미 등재된 연속유산에 유산요소를 추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기술문이 별다른 수정 없이도 추가 유산요소를 적절히 아우를 수 있으나, 추가적인 요소와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이에 대한 약간의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세계유산위원회의 요건에 따라 이를 수정/작성해야 한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소급 기술문 관련 지침의 경우 필요한 절차를 안내할 수 있도록 세계유산센터와 자문기구가 이를 준비해왔다. 어느 쪽이든 해당 기술문은 유산의 중요한 새로운 속성을 반영해야 한다. 단 이는 새로운 가치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유산의 가치는 세계유산위원회가 이미 동의한 내용이어야 한다. 유산의 가치가 추가되거나 그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신규 등재신청을 준비해야 한다(운영지침 166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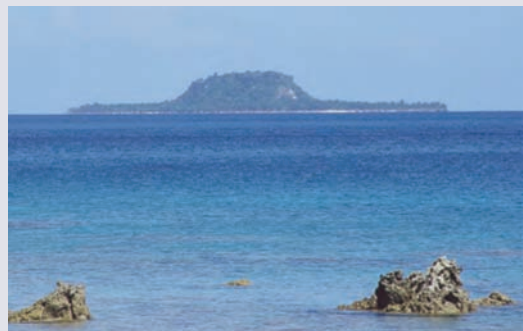
기존 유산을 확장하는 경우 원래 유산에 대한 기존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기술문은 새로운 가치가 아닌, 중요한 새로운 속성을 반영하도록 수정하며 새로운 기술문은 전체 유산을 대상으로 한다.

사례연구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기술

로이 마타 추장 영지(바누아투)

바누아투의 로이 마타 추장 영지 문화경관은 태평양 추장 제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관의 사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다. 유산에는 로이 마타와 관련된 유형의 유산에 대한 존중, 그리고 그의 사회개혁이 갖는 영적, 도덕적 유산이 바탕으로 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 반영되어 있다. 400년 넘게 지속되면서 이 지역의 경관과 사회적 관습을 형성해 온 로이 마타의 주거지와 무덤 이용에 대한 금기를 통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태평양 추장 제도와 그 권위에 대한 존중을 확인할 수 있다. 오늘날 바누아투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힘과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는 로이 마타의 위업을 기억하는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 Vanuatu National Cultural Council / Chris Ballard

기준(iii): 로이 마타 추장 영지는 추장들이 이전의 추장들로부터 자신의 권위를 어떻게 얻었으며, 특히 로이 마타의 주거지와 무덤 사용에 대한 금기가 400년 간 지켜진 방식, 그리고 해당 지역의 경관과 사회적 관습이 어떻게 지속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문화경관이다.

기준(v): 로이 마타 추장 영지는 태평양 지역의 추장제도, 그리고 로이 마타 사회개혁의 영적, 도덕적 유산을 바탕으로 그와 연관된 세 곳의 핵심 유적에 남아있는 유형 유산을 존중해 온 태평양 지역 사람들과 그들 환경 간의 오랜 상호작용을 대표하는 탁월한 경관의 사례이다.

기준(vi): 로이 마타 추장 영지는 오늘날 바누아투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 경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삶을 이어가는 영감의 원천으로 여전히 살아있는 유산이다.

로이 마타 추장 영지의 진정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로이 마타의 구전 전통과 경관의 연관성, 진정성을 유지하며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추장제도, 관련 장소에서 계속되고 있는 금기에서 여전히 확인되는 그의 삶과 관련된 유형의 유물을 존중하는 관습에 있다.



- 신청구역과 완충구역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도 적절하다. 추장 제도와 금기를 통한 전통적인 관리 형태와 유적 보호를 위한 정부 입법 등 유산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체계 또한 적절하다. 관리체계에는 지역 공동체와 정부 행정기구가 포함된다. 따라서 유적의 완전성도 잘 유지되고 있다.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대한민국)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은 세 개의 유산요소로 이루어진 일관성 있는 연속유산이다. 거문오름 용암동굴계를 비롯해 다양하면서도 접근이 용이한 양질의 두 화산 생성물은 전 세계 화산 유산을 이해하는 데에 특별하고 중요한 기여를 한다.



© IUCN / Paul Dingwall

기준(vii): 전 세계 동굴 중 최상의 상태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는 거문오름 용암동굴계는 비슷한 장관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도 큰 시각적 충격을 안긴다. 동굴 천장과 바닥에는 형형색색의 탄산염 생성물이 장식되어 있으며 탄산염 침전물이 어두운 용암 벽에 군데군데 벽화처럼 덮여 있다. 요새 형태의 성산일출봉 응회암은 벽면이 바다 밖으로 솟아 있어 장관을 연출하며, 계절에 따라 질감과 색이 달라지는 한라산은 폭포, 갖가지 모양의 암석, 주상절리, 분화구에 호수가 있는 우뚝 솟은 정상 등이 경관과 미적 매력을 더해준다.

기준(viii): 제주는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움직이지 않는 지각 위 열점에 생성된 대규모 순상화산 중 하나로 독특한 가치가 있다. 거문오름 용암동굴계는 전 세계적으로 보호받는 용암동굴계 중 가장 인상적이고 중요한 동굴로 다른 용암동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풍부함과 다양성을 갖추고 있는 부수적으로 생겨난 탄산염 동굴생성물(종유석 및 기타 생성물 등)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 성산일출봉 응회암은 구조적인 특성과 퇴적의 특성이 드러나는 이례적인 곳으로 서치형 화산 폭발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 세계적으로 중요하다.

유산은 잘 관리되고 있으며 필요한 자원이 잘 공급 중이다. 2006-2010년 관리계획과 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도 마련돼 있다. 관리 면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농업이 지하 환경에 끼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을 제한하고 유산을 방문하는 대규모 관광객들을 관리하는 일이다. 제주의 여타 다른 중요한 용암동굴계와 화산 생성물을 유산에 포함시켜 유산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연속유산 등재신청

연속유산 등재신청에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보는 둘 이상의 유산요소가 포함된다(1.3항 정의 참조).

연속유산의 경우 연속된 유산요소의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근본적이면서도 타당해야 한다. 또한 유산요소 선정에는 명백한 논리가 있어야 하며 그러한 논리는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 그리고 해당 유산요소를 보여주는 여러 요소와 특징물에 근거해야 한다.

비교분석에서는 관련 유산요소의 선정 논리를 설명해야 하며, 해당 연속유산 전체가 탁월한 가치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신청유산의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확실하고 분명한 관계가 있지 않은 유산요소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원칙적으로 연속유산으로 신청하는 모든 요소가 등재신청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첫 신청 당시 첫 번째 유산요소(군)만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운영지침에 따라 연속유산의 일부만 우선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며, 나머지 유산요소를 추후 추가할 수 있다(운영지침 137-139항). 이때는 향후 연속유산으로 신청할 기타 요소를 명확히 밝히고 이를 설명해야 한다.

각 유산요소가 기능적으로 연관되어 있는지, 그리고 모든 유산요소를 아우르는 전반적인 관리체계가 있는지도 밝힌다.

연속유산 등재신청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다른 신청과 마찬가지로 해당 유산이 동일한 등재기준과 완전성 요건, 진정성, 관리체계에 대해 평가를 받는다는 점이다. 이는 등재기준 수립 시 지리적 문화권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비교분석 요건에서도 동일하다.

추가적으로 중요한 또 다른 원칙은 모든 연속유산은 세계유산목록에서 한 건으로 여겨진다는 점이다. 즉 연속유산은 단일 유산으로 등재되며 그러한 대우를 받는다. 특정 연속유산 한 부분의 가치가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목록에 올라야 할 정도의 위험에 처해 있다면, 전체 해당 유산이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목록에 오르게 된다. 이러한 원칙은 한 나라에 위치한 유산이든 국가간유산이든 관계없이 모든 연속유산에 적용된다.

연속유산에 대한 유용한 참고자료에는 "자연유산인 연속유산의 등재신청과 관리 - 현재와 도전, 기회 (Nominations and Management of Serial Natural World Heritage Properties - Present Situation,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Engels et al.,2009))"가 있다.

사례연구

연속유산 - 므라카 해협의 역사도시, 므라카와 조지타운(말레이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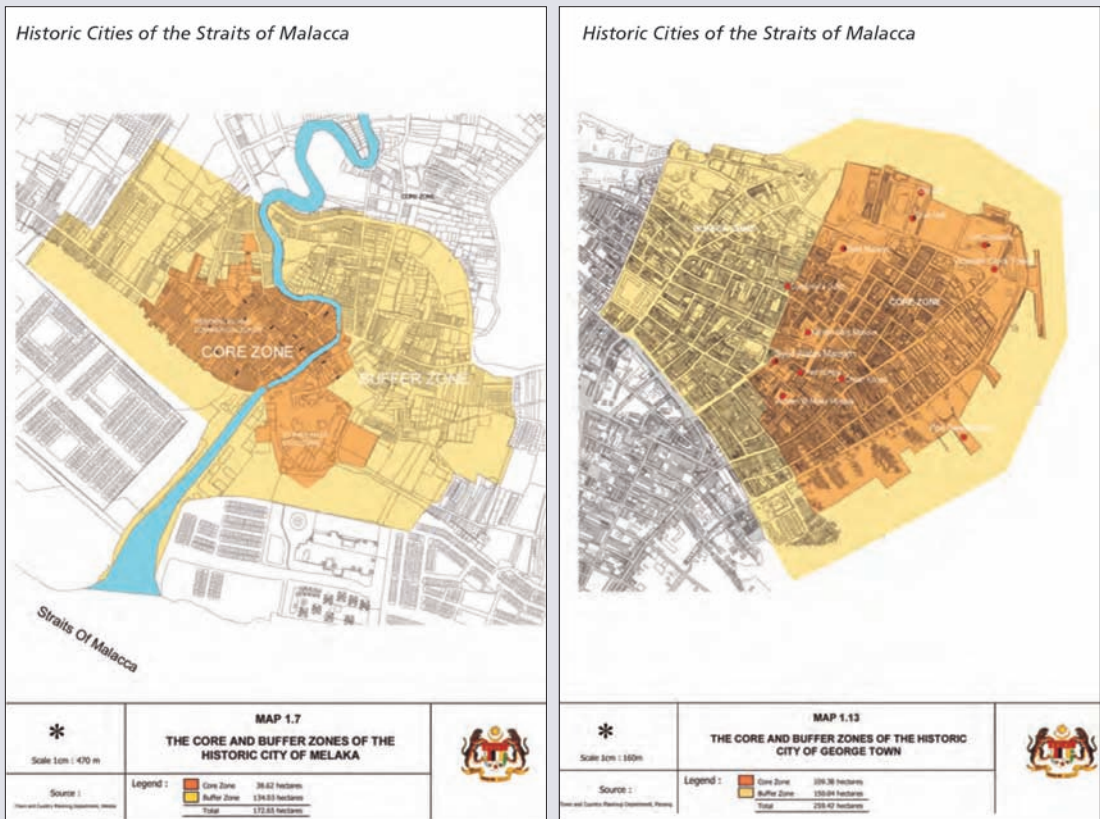
므라카 해협의 역사도시인 므라카와 조지타운은 므라카 해협에서 500년 넘게 지속되어 온 동서 교역과 문화 교류를 보여주는 유산이다. 이들 도시에는 아시아와 유럽의 영향을 받은 유무형의 다문화유산이 남아 있다. 정부 건물과 교회, 광장, 요새 등이 위치해 있는 므라카는 15세기 말레이 술탄국과 16세기 초에 시작된 포르투갈과 네덜란드의 통치 시기 등 이 지역의 초기 역사를 보여준다. 주택과 상업용 건물



© OUR PLACE - The World Heritage Collection

물이 위치한 조지타운에서는 18세기 말 영국 통치 기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도시는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건축과 문화 도시경관을 간직하고 있다. 등재기준 (ii), (iii), (iv).





출처:등재신청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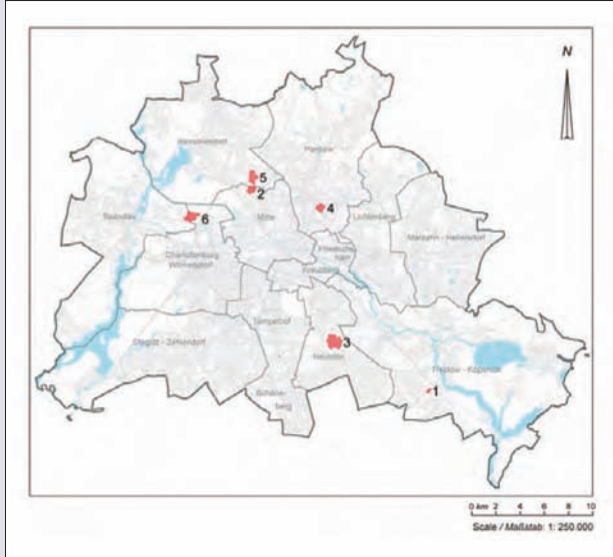
사례연구

연속유산 - 베를린 모더니즘 주택 단지(독일)

베를린이 사회, 정치, 문화적으로 발전하던 1910-1933년 사이 형성된, 특히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의 혁신적인 주택 정책을 보여주는 6개의 모더니즘 주택단지로 구성된 유산이다. 도시계획과 건축, 조경 설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도입해 저소득층의 주거와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한 주택 개혁운동을 보여주는 우수한 사례이다. 이들 주택 단지는 신선한 디자인과 기술적, 미적 혁신을 특징으로 하며 새로운 도시와 건축의 유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브루노 타우트(Bruno Taut), 마르틴 바그너(Martin Wagner), 발터 그로피우스(Walter Gropius) 등의 건축가들이 주도하였으며, 이후 전 세계 주택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등재기준 (ii), (iv).



© Winfried Brenne Architekten, Berlin



출처:등재신청서

사례연구

연속유산 - 중국 남방 카르스트 지역(중국)

중국 남방 카르스트는 주로 윈난, 구이저우, 광시 지방을 중심으로 총 50만 km²에 걸쳐 있는 유산이다. 고온다습한 열대 지역에서 아열대에 이르는 카르스트 지역으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멋진 경관을 자랑한다. 이곳의 스톤(石林)은 최고 수준의 자연현상으로 꼽히며, 방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침상 카르스트와 함께 색과 형태 면에서 높은 다양성을 갖고 있어 세계적으로 참고 된다. 리보의 원추 카르스트와 탑 카르스트 또한 동종 카르스트 지형 중 세계적인 사례로 꼽히며 그 경관이 독특하고 아름답다. 우롱 카르스트에는 거대한 돌리네(움푹 팬 땅)와 천연다리, 동굴이 있다. 등재기준 (vii), (viii).

오른쪽 지도는 위 연속유산의 일부이다.



© UNESCO / Jim Thorsell



출처:등재신청서

KEY MESSAGE

경계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아울러야 한다.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아우르는 견고한 경계 설정

유산 경계 내에는 해당 유산의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전달하는 모든 속성과 특징물을 포함해야 한다.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관련 없는 지역이 경계에 포함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한편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전달하는 속성이나 특징물이 있는 곳을 제외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기억해야 할 사실 중 하나는 신청유산이 연속유산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해당 유산은

-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어야 하며,
- 진정성과 완전성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 보호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이 모든 요소는 유산의 경계에 영향을 끼친다.

59-60쪽에 제시된 속성과 특징물을 지도에 나타내는 작업은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는 좋은 출발점이기도 하다.

역사도시의 여러 건물처럼 다수의 중요한 요소가 포함되는 문화유산은 경우에 따라 종종 고립된 다수의 유산요소보다는 해당되는 유산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단일 유산구역이나 지역을 등재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때가 있다. 경계 설정 논리는 언제나처럼 중요한 부분이며, 위의 경우에는 단일 구역 등재신청이 더 타당할 수 있다.

보존 면에서 중요한 여러 요소나 구역이 지리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 하나의 경계를 대규모로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때는 연속유산으로 신청하는 것이 적절하다.

경우에 따라 유산 중 일부에 대한 보호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수 있다. 그러한 부분이 해당 유산에 반드시 필요하거나 본질적인 부분이라면 등재신청 성공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보호 관리가 필수다. 그럴 경우 등재신청 절차를 연기하더라도 보호 관리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경계 설정은 갈등을 관리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한 부분으로 여기에는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가 필수다. 유산의 보호와 보존, 관리와 관련된 토지이용에 대한 중요한 결정사항이며 이해당사자가 참여하고 소통하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선택된 유산 경계에 대한 명확한 논리와 설명이 있어야 하며, 등재 신청서의 완전성 항목에 이를 기술해야 한다.

요약하면

- 유산의 경계는 완전성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속성, 즉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전달하는 완전하고 변함없는 속성을 아울러야 한다.
- 경계는 유산의 가치를 전달하는 속성을 확인하는 데 있어 논리적이며 방어 가능해야 한다.
- 경계는 유산의 법적 보호 및 관리와 관련해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 관리상 유용하도록 경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경계는 대개 물리적인 특징물을 기준으로 하며 자연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도로와 같은 인공 특징물을 근거로 경계를 설정할 수 있으며, 이는 관리 면에서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 그러나 닫힌 구역이 완전성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러한 특징물을 이용하는 데에는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 경계를 표시한 양질의 지도는 필수이다.
- 유산구역 내 경계 설정(구역 설정계획 등)은 반드시 해당 유산의 관리상 우선순위와 요건을 정의하고 이해당사자들이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현재의 과정과 보호, 보존, 관리 사이에 강한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경계

우베다 · 바에사의 르네상스 기념물군(스페인)

애초 역사도시 두 곳의 여러 부분을 모아 등재를 신청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양쪽 도시의 르네상스 궁들로 유산 범위를 한정해 등재된 유산이다. 등재 근거에 대한 설명 역시 르네상스 도시건축과 사상이 스페인에 유입되고 이후 건축 논문들을 통해 라틴아메리카로 전달된 역사를 대표하는 유산으로 변경해 기술하였다.

마카오 역사지구(중국)

처음에는 12개 건물만을 대상으로 등재를 신청했는데, 당시 너무 많은 유산을 포함시키지 않는 게 좋겠다는 판단에 따라 중요한 몇 가지를 제외했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시내 중심가가 적절한 완전성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이후 해당 구역과 도시의 주요 광장을 관련 건물을 포함시켜 유산 경계를 재설정하는 것이 가능했다.

밤 지역 문화경관(이란)

애초 성채를 비롯해 목록에 올라있던 몇몇 파괴된 건물만을 대상으로 연속유산으로 신청된 유산이다. 이후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등재신청의 성격이 연속유산에서 문화경관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물관리 체계와 오아시스에 기반한 생활방식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이 점차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브로츠와프의 백주년관(폴란드)

애초 등재신청은 백주년관 건물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이코모스 실사 결과 당시 건물과 함께 설계된 전시구역 역시 신청구역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에 따라 완충구역 역시 전체 구역을 보다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

술타니아(이란)

처음에는 영묘와 주변 토착마을, 종교나 장례 관련 작은 기념물들에 대해서만 등재가 신청되었다. 신청서 평가 이후에는 영묘와 소규모 성채 발굴유적으로 유산의 경계가 재설정되었다. 기념물이 있는 마을의 나머지 영역은 완충구역에 포함되었다. 근처에 초원 지역인 경관보호구역이 있는데, 이는 일한국이 과거 이곳을 수도로 삼은 이유이기도 하다.

레위니옹 섬의 피통, 시르크, 랑파르(프랑스)

처음 신청서에는 넓은 범위의 정착지만이 포함되었을 뿐 섬 환경을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넓은 식생지역은 포함되지 않았다. 수정 신청서를 통해 당시 새로 생긴 국립공원과 연계할 수 있는 적절한 경계가 설정되었고, 정착지 인근을 포함하는 효과적인 완충구역이 마련되었다. 그 결과 섬의 가장 중요한 자연경관, 그리고 그때까지 마련된 보호관리와도 분명히 관련되는 유적이 등재구역으로 지정돼 효과적인 보호가 가능해졌다.



© Serge Dos Sant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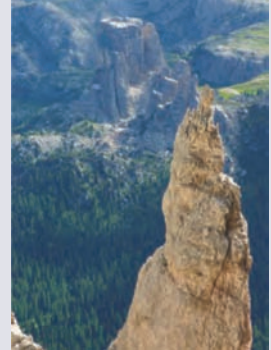
© UNESCO / Alain Brunet



© Hervé Douris

• • **돌로미티 산맥(이탈리아)**

애초 27개 유산요소로 이루어진 연속유산으로 신청된 돌로미티 산맥은 반려 권고를 받은 바 있으며, 당사국에는 경관 차원에서 유산의 경관과 미적 가치를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유산요소의 수를 줄여 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자문이 제공되었다. 9개 유산요소로 이루어진 수정 신청서는 명확한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준비되었고 2009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었다.



© Dell'Agnola - Provincia di Belluno

완충구역

모든 세계유산에는 유산 밖에서 일어나는 여러 활동에 대한 보호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완충구역은 이러한 보호와 보존관리에 이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운영지침에 설명된 바와 같이 광범위한 위협으로부터 유산을 보호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장치나 규제, 기타 다른 방법이 있을 때는 완충구역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운영지침 104항). 토지사용 계획이나 개발 규제에 대한 인식이 있거나 보호구역 간 경관 수준의 연계가 보장되도록 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그 체계가 다를 수 있다.

주지해야 할 사실은 완충구역은 세계유산의 일부가 아니며 세계유산을 보호하고 보존, 관리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완충구역은 유산 인근의 환경을 보호하는 데 있어 진정성과 완전성 보호에 기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원거리에 산세에 따라 조성된 사찰이라면 그 능선 일부가 완충구역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완충구역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지는 않지만 신청유산의 보호와 보존, 관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주장에 일부 들어가는 여러 속성과 특징물은 유산구역에 포함되어야 하며 완충구역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완충구역은 등재된 세계유산의 일부는 아니지만 완충구역의 경계는 유산의 등재시점이나 세계유산위원회가 수정을 승인하는 시점에 공식 등록된다. 완충구역은 당사국이 해당 유산의 보호와 보존관리에 노력할 것임을 약속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모든 완충구역은 해당 유산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시스템의 한 부분이어야 하며, 그러한 유산 관리를 책임지는 이들이 완충구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활동을 관리하는 데 있어 자문을 제공하고 거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법 또한 명확해야 한다.

완충구역을 설정하는 절차는 유산을 이해하고 유산의 장기적인 보호와 보존관리를 함께 해 나가는 데 있어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완충구역은 신청구역과 관계없는 중요성이 적은 일종의 중립지대일 수 있다. 그런 반면 유산구역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여타 물리적 혹은 그 밖의(예. 경제적, 법적, 기능적, 시각적 또는 환경적) 특성을 갖는 구역을 포함할 수 있다. 유산에 대한 물리적인 접근방식도 포함될 수 있으며 유산구역 안팎의 경관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완충구역은 해당 유산을 뒷받침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자연계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며(강 유역 등), 관광압력이나 산업적 이용에 대한 관리와도 연관될 수 있다(유산 인접 도로, 주차장 등).

따라서 완충구역의 특징물과 가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평가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신청유산이 완전성과 진정성, 보호관리 요건을 충족시키는지에 대한 평가와는 관련될 수 있다.

유산의 인접환경을 이해하고 이를 사전에 정의할 수 있는지, 또는 관련 정의를 위해 추가 작업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완충구역의 경계에는 다음의 요인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

-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특징
- 유산 관리의 조건
- 알려져 있거나 예측 가능한 위협이나 영향의 성격
- 유산에서 바라본 혹은 유산을 향해 있는 중요한 경관
- 잠정적인 완충구역의 현재 성격
- 잠정적인 완충구역 내 소유권, 자원 활용, 관리 및 보호(관련 법 등)

완충구역은 유산구역 안쪽과는 다른 일정 범위의 기능, 활용, 활동을 위해 제공될 수 있다.

문화유산 완충구역은 시각적 영향을 기준으로 자주 결정되지만 다른 기준이나 영향도 있을 수 있다(예. 소리의 영향, 물의 흐름).

유산 경계와 관련해서는 완충구역 경계에 대한 유산 가치의 보호와 보존관리에 대한 명확한 논리나 설명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논리는 신청서 중 보호 지정(5.b) 항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완충구역의 기능과 범위, 보호, 보존 관리와 해당 유산의 관계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완충구역의 보호와 보존관리는 유산과 통합되어야 한다. 해당 유산에 대한 보호와 보존관리, 그 완충구역에 대한 책임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기관 간의 노력과 협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KEY MESSAGE

보호되고 있지 않거나 공식 인정받지 못한 완충 구역은 무의미하다.

완충구역의 개념은 제재와 같이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드러나지만, 잘 설계된 완충구역은 유산 가치의 보호와 보존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지역사회를 비롯한 여러 대상에 혜택을 주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활용을 증진할 수 있다. 완충구역에는 농지를 비롯해 식품점과 숙박업체 등 지역사회가 운영하는 관광지원 구역이 포함될 수 있다. 신청서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강조해야 한다.

완충구역은 또한 해당 유산과 그 가치가 살아남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주요 사회, 문화, 경제적 교환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보호와 보존관리는 유산을 뒷받침하는 이들 절차를 인정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잘 계획되어야 한다. 이와 유사하게 완충구역을 일종의 박물관이나 관광구역으로 변모시켜 해당 유산이 그 오랜 사회, 문화, 경제적 맥락에서 합리적이지 않은 형태로 고립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완충구역을 설정할 때는 다음의 절차를 기억해야 한다. 단 그 순서는 바뀔 수 있다.

- 외부적인 요인과 관계를 정의할 수 있도록 해당 유산의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 완전성과 그 특징을 분석한다.
- 보다 효과적인 보호, 보존,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완충구역 내 지속 가능한 활용에서 얻는 혜택을 얻기 위해 향후 있을 긍정적인 기회를 분석한다.

- 국내법과 하위 지역 단위의 규정 등 완충구역 이행과 관련된 법적 규정을 검토한다.
- 완충구역의 기능과 관련해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관련 체계를 확립한다.
- 위의 분석과 검토를 바탕으로 해당 유산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완충구역을 설정한다(연속유산이라면 여러 유산요소에 서로 다른 완충구역이 필요할 수 있다).

완충구역에 대한 보호체계가 아직 없다면 이를 마련하는 기간이 등재 과정과 신청서 제출 일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보호체계는 신청서 제출 전 작동해야 한다.

완충구역의 개념이 해당 유산구역에 대한 관련 법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그러한 완충구역은 이미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상황이 그렇지 않다면 당사국은 각국의 사정에 따라 해당 국가의 법적 틀 내에서 완충구역의 개념을 인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

완충구역은 유산구역의 인접지를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추가 보호 장치이지만 보다 넓은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기제가 필요할 수 있다. 유산 보호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여러 협약이나 프로그램 사업, 이니셔티브 등 다른 보호관련 장치를 통해 시너지를 얻을 수도 있다.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유산인 경우에는 완충구역에도 특별한 예외가 적용된다. 이 경우 완충구역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사례연구

완충구역

멕시코국립자치대학교 중앙대학 도시캠퍼스(멕시코)

멕시코국립자치대학교 중앙대학 도시캠퍼스의 건물과 운동시설, 열린 공간들로 이루어진 유산으로 1949-1952년 6명이 넘는 건축가와 공학자, 예술가들이 참여한 프로젝트를 통해 탄생했다. 이 지역 전통, 특히 멕시코의 스페인 정복 이전 시대를 참조하였으며 도시, 건축, 공학, 조경 설계, 미술을 결합한 20세기 모더니즘을 보여주는 독특한 유산이다. 보편적인 중요성을 갖는 사회, 문화적 가치를 구현하고 있는 유산이자 남미의 모더니티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유산 중 하나이다.

주변 환경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완충구역을 설정한 바 있다.



© UNESCO / A. Sandoval-Ruiz

출처: 등재신청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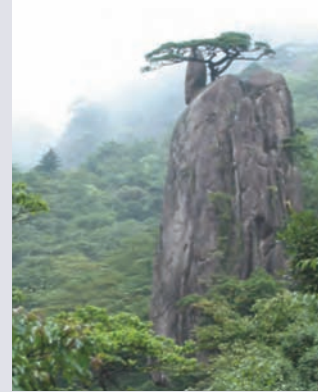


• • 움베르스톤과 산타 라우라 초석 작업장(칠레)

애초 유산의 완충구역이 너무 도식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제 유산 경관을 반영해 이를 수정하라는 요구가 있었다.

황산(중국)

황산의 완충구역은 유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다음과 같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유산의 외부에서 오는 영향을 낮추거나 이를 사전 차단한다. 야생동물을 위한 이동통로 제공,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정 유형의 토지이용 제한, 관광 기반시설 제공, 유산에 가해지는 압력을 낮추기 위해 세계유산 외곽의 좋은 경치를 자랑하는 여타 지역에 대한 관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 UNESCO / Giovanni Boccardi

기사의 성채와 살라딘 요새(시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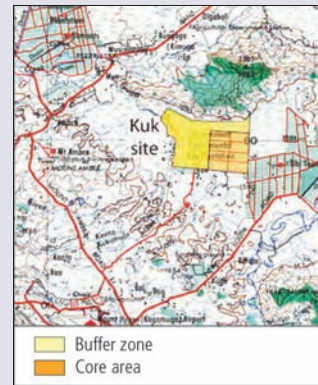
살라딘 요새는 해당 지역에서 향후 진행될 수 있는 발굴과 케이블카 문제를 고려해 계곡을 가로질러 확장되었다.

세인트 킬다 군도(영국)

바다 그 자체가 섬 주변의 보호구역 기능을 하고 있어 공식적으로 섬의 물리적 인 문화유산을 위해 추가 완충구역을 설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쿠크 초기 농경지(파푸아뉴기니)

완충구역은 해당 유산 양쪽으로만 위치한다. 이는 유산 상류의 물 흐름과 매장 유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설정되었다.



출처:등재신청서

주변 환경

해당 유산과 그 완충구역과 함께 이들 바깥 지역, 즉 유산의 보다 넓은 주변 환경에 대해 고려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그러한 지역이 유산의 시각적 특징이나 속성에 중요한 더 넓은 주변 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밝혔듯이 주변 환경은 유산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보호하는 데 근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유산의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변 환경의 개발이나 변화 요인에는 높은 건물이나 풍력발전 시설 같은 시각적으로 두드러지는 대상도 포함된다. 거리상 유산과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으나 유산을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통해 이해하는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주변 환경과 완충구역이 동일할 수 있고, 주변 환경이 더 넓을 수도 있다. 주변 환경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하나 이는 운영지침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은 아니다.

주변 환경과 관련해 참고할 만한 자료에는 ‘유산 건물, 유적 및 영역의 주변 환경 보존에 관한 시안 선언(Xi'an Declaration on the Conservation of the Setting of Heritage Structures, Sites and Areas (ICOMOS, 2005b))’이 있다.

주변 환경의 범위는 신청서에 포함되는 하나 이상의 지도에 표시되어야 하며, 신청서의 유산설명 항에 관련 설명을 기술해야 한다.

사례연구

유산의 주변 환경에 대한 문제

에딘버러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영국)에 대한 유네스코, 이코모스의 소급 모니터링 실사

세계유산센터와 이코모스 전문가들은 1995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에딘버러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개발사업 계획을 검토하기 위해 2008년 대응 모니터링 실사를 진행했다.

세계유산위원회의 요청으로 진행된 당시 실사는 특히 칼톤게이트 개발 내용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전문가들은 보다 넓은 도시적 맥락과 완전성, 진정성 면에서의 유산 보존 현황에 대해 에딘버러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했다. 또한 고층 건물을 비롯해 현재의 공사가 해당 유산이 세계유산목록에 오르게 된 뛰어난 가치를 뜻하는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도 확인했다.

이들은 중앙과 지역의 여러 정부당국과 기관, 단체 또는 기타 이해당사자 대표들과 함께 이 지역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했다. 전문가들은 칼톤게이트 외에도 레이스 독, 세인트 제임스 센터, 헤이마켓을 비롯한 여러 계획이 유산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도 확인했다. 실사단은 보존관리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이 유산은 15세기 이래 스코틀랜드의 수도라는 에딘버러의 위치를 고려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중세의 성채가 자리한 구시가지와 18세기 이래 유럽의 도시계획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친 신고전주의풍의 신도심 등 서로 다른 특색을 지닌 두 구역의 가치를 인정했다. 각기 많은 수의 중요한 건축물을 가졌음에도 대조적인 성격을 지니는 이들 두 역사유적의 조화로운 병치야말로 에딘버러에 그 독특한 성격과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 UNESCO / F. Bandarin

현재의 보존 현황 - 위협 또는 압력

신청유산의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위협이나 압력은 평가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이다. 운영지침은 이와 관련해 개발, 환경, 자연재해, 방문객/관광 등 4가지 요소를 언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청유산의 보존 현황에 대해 제공하는 정보는 실질적이면서도 증거에 기반해야 하며, 어느 한편에서 과장하거나 다른 편에서 축소해서는 안 된다. 가령 어떤 유산이 양호한 상태라고 주장하려면 그 실재를 반영해야 하며, 중요한 위협을 외면하거나 경시해서는 안 된다. 또한 상황을 이해하는 데 있어 현재의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양호한 상태이며 개선되고 있는 것과 양호한 상태이나 악화되고 있는 것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신청유산을 방문하는 실사자의 주요 업무는 보고되지 않은 위협의 증거를 찾는 것을 포함해 위협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알리는 데 있다.

위협에 대한 정보는 특정 유산에 대해 예측하거나 기대할 만한 사항, 혹은 과거 제기된 바 있는 내용에 한정해야 한다. 즉 가능성이 매우 낮은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위협에 대한 정확하고 솔직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위협 내용을 등재 직후 알리는 유산이 점점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평가 과정 중에 확인된 신규 사업이나 변화 내용에 대해 세계유산센터에 지속적인 보고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호

신청유산은 법적 및/또는 전통적인 차원에서 양호하게 보호되고 있어야 한다. 정해진 권역과 환경에서 가능한 최선의 형태로 보호되는 것이 이상적이며, 경우에 따라 법적 혹은 그 밖의 수단을 통해 여러 층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법적, 전통적인 형태의 보호수단은 상호 배타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며 둘은 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층의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어 성공적으로 함께 작동하기도 한다. 많은 경우, 법적 보호장치는 현존하는 위협이 있을 때 전통적인 보호수단에 대해 적절한 맥락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기도 하다.

만족할 만한 보호수단이 없는 유산은 세계유산 등재에 실패한다.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전달하는 유무형적 속성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해당 유산을 잘 보호, 보존, 관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그러한 내용이야말로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유산 보호와 관련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본다.

- 그러한 보호수단을 통해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유지 또는 향상될 수 있는가?
- 장기적인 보호수단인가?
- 전통적인 형태의 보호의 경우, 보호를 뒷받침하는 공동체의 작동원리가 튼튼한가?
- 필요한 모든 단위(예, 전통적 보호, 지역, 지방, 중앙)에서 보호되고 있는가?
- 유산의 가치와 완전성 또는 진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개발이나 변화로부터 유산을 보호하는가?
- 보호수단은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는가?
- 보호수단의 효율성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와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는가?
- 전반적인 보존관리 여건과 충분히 통합된 접근법으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유산 보호를 위한 수단은 해당 유산과 완충구역 모두에 적용되어야 하며, 서로 다른 조치가 서로 다른 지역에 적용될 수 있다. 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완충구역에 있는 유산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주변 환경의 중요한 시각적 특징을 보호 관리해야 한다.

적절한 보호수단이 작동하고 있는지는 신청 준비 초기부터 검토해야 한다. 보호수단을 마련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예. 신규 법안 준비), 이러한 시기가 등재 준비 시간표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연구

전통적인 보호수단 - 문화유산 - 아스키아 무덤(말리)

17m 높이의 피라미드식 아스키아 무덤은 송가이의 황제 아스키아 모하메드가 수도 가오에 축조했다. 15-16세기 특히 소금과 금을 중심으로 한 사하라 종단 무역을 통해 번영을 구가한 제국의 힘과 부를 증명하는 유산으로 서아프리카 사헬 지역의 진흙 건축 전통을 잘 보여주는 곳이기도 하다. 피라미드 무덤, 평평한 지붕의 두 개의 모스크, 사원 묘지, 개방형 집회소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오가 송가이 제국의 수도가 되고 아스키아 모하메드가 메카에서 돌아와 이슬람을 제국의 국교로 삼은 시기에 조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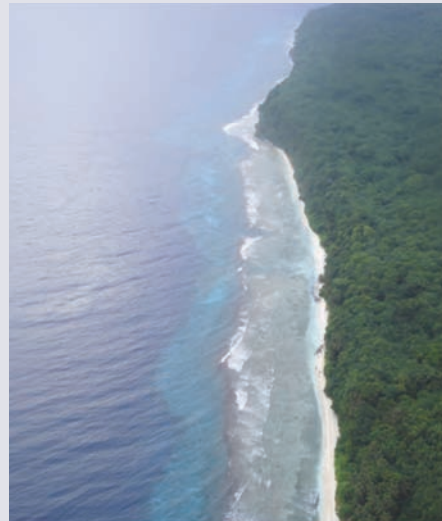
© Direction Nationale du Patrimoine Culturel du Mali / Thierry Joffroy

현재 유적은 전통적인 형태로 효과적으로 보호되고 있다. 2002년 퍼펙트 오브 가오(the Perfect of Gao)가 설립한 협회가 유산 관리를 감독한다. 위원회는 이맘과 무에진, 가오 예술문화지방청,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지역위원회 등 주요 이해당사자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협회는 법적 근거는 없으나 이맘과 송가이의 수장이 참여하고 있어 도덕적으로 강력한 권위를 갖고 있다.

세계연구

전통적인 보호수단 - 자연유산 - 동렌넬(솔로몬제도)

동렌넬은 서태평양에 위치한 솔로몬제도의 가장 남쪽에 있는 섬인 렌넬 제도 중 남쪽 끝에서 세 번째에 위치한 섬이다. 렌넬은 길이 86km에 폭 15km인 섬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산호초섬이다. 37,000ha 면적에 3해리로 펼쳐진 바다가 유산구역에 포함된다. 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과거 환초 위에 석호였던 테가로 호이다. 태평양 도서(15,500ha)에서 가장 큰 호수로 울퉁불퉁한 석회암 섬이 여럿이며 고유한 동식물종이 서식한다. 대부분 울창한 숲으로 덮여 있으며 평균 20m 높이의 임관(林冠)이 있다. 빈번히 일어나는 사이클론이 기후에 강한 영향을 끼치는 곳으로 관련 연구가 가능한 천연 실험실이다. 토지소유와 관리는 관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UNESCO / S. A. Tabbasum

관리

세계유산 관리는 유산의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관련되거나 이를 전달하는 속성과 특징물에 중점을 두며, 유산의 가치와 진정성, 완전성이 그러한 속성에 대한 관리를 통해 미래에 잘 유지되도록 하는 데 그 목표가 있다. 따라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기술문은 유산관리를 위해 참고해야 할 핵심적인 자료이다.

유산의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관리하려면 해당 유산 전체를 보존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면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유산이 지닌 모든 가치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신청유산은 적절한 관리계획이 있거나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문서화된 관리체계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어느 쪽도 준비되지 않은 경우라면 이를 마련하기 위한 현실적인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신청서 준비기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완충구역과 유산 주변환경에 대해서도 적절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신청 시점에 만족할만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유산은 세계유산 등재에 성공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운영지침에는 관리계획이나 완전하게 이행 중인 문서화된 체계(115항)가 없는 신청서라도 접수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이는 바람직하지는 않다. 효과적인 관리계획이나 이행 중인 문서화된 체계가 있어야 등재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별히 선호하는 관리계획이나 관리체계가 있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양쪽 모두 가능할 수 있다. 핵심은 관리계획이나 체계가 효과적이며 적절한가이다. 문화권에 따라 관리계획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을 수 있으며, 그에 대한 경험의 부재, 그 효율성에 대해서도 높은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적절한 관리체계가 존재할 수 있으며 그러한 체계가 신청유산을 관리하는 데 알맞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관리계획을 잘 마련해 이를 잘 이행해야 한다.

유산 관리 내용에는 세계유산목록 등재로 일어날 수 있는 변화와 어려움 등 해당 유산의 중단기적 미래에 대한 현실적인 비전이 있어야 한다. 그러한 변화와 어려움은 상당할 수 있다.

관리계획과 문서화된 체계는 향후 이행될 '서류상'의 계획이 아닌 이미 시도하고 시험을 거친 내용이어야 한다. 신청서 핵심 항(보존현황과 모니터링)의 내용과 유산의 모든 관리계획에서 제시된 관련 정보와 프로그램은 서로 밀접히 관련돼 있어야 한다.

예상되는 변화와 개발, 개입에 대한 영향 평가 절차가 관리계획이나 체계의 일부로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유산을 관리하는 관리계획이나 문서화된 체계가 여러 건인 경우도 있다. 이처럼 관리 계획이나 체계가 다양할 때는 그러한 내용이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관련해 통합 또는 보완의 성격으로 유산이 효과적으로 관리되었음을 결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산과 그 완충구역, 인접 환경이 여러 다른 기관에 의해 관리되고 있거나 여러 관계 당국이 참여하고 있는 경우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

KEY MESSAGE

관리계획/체계는 효과적
이어야 한다

사람들이 유산 방문에 큰 관심을 갖게 되고 잠정적인 방문객 수의 규모가 크며, 해당 유산과 다른 방문객시설에 대해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면 유산 관광은 세계유산 관리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된다. 세계유산 등재는 방문객 수에 여러 영향을 끼치며 관련 내용은 구체적으로 예상해야 한다.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보호와 보존, 관리에 적합한 관광 관리 내용이 신청서에 반드시 기술되어야 한다. 많은 유산의 경우 별도의 관광 관리계획이 마련되며, 이는 전체 유산관리계획이나 체계에 통합되어 있다. 수립된 계획은 반드시 실제 이행되어야 한다.

자연유산의 경우 세계유산 관리계획에 대한 IUCN의 별도 안내서가 마련되어 있다(IUCN, 2008a). 문화유산 매뉴얼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자문기구들이 세계유산매뉴얼시리즈의 일부로 계획 중이다.

신청서 제출 전 적절한 계획이나 문서가 실행에 옮겨지고 그 효용이 입증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를 달성하는 일은 등재신청 시간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관리체계를 신청서 제출 전 마련하면 유산 보존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모든 소유권자와 이해당사자들에게도 그러하다.

유산 관리와 관련해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한다.

- 해당 관리계획/체계는 보호와 보존을 통해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적고 있는가?
- 관리계획/체계가 현장에서 유산 보존의 결과를 얻는데 실제로 효과적인가?
- 관련 계획이나 체계가 여럿일 때 이들은 실질적인 결과 달성을 위해 통합되어 있거나 상호보완적인가?
- 그러한 관리계획이나 체계는 다른 형태의 계획이나 체계(예, 관광, 개발, 지역 경제계획)에 우선하는가?
- 유산의 이해당사자들은 유산을 함께 잘 이해하고 있는가?
- 그러한 관리계획/체계는 기획과 이행, 모니터링, 평가, 피드백이 순환하는 시스템인가?
- 전반적인 경향과 변화, 유산에 대해 예정된 개입의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가?
- 지속 가능한 개발 원칙이 관리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가?
- 관리계획/체계에 이해당사자들, 특히 유산소유자들과 관리자들이 참여하는가, 그러한 계획/체계는 강한 지지를 받고 있는가?
- 관리계획/체계에 대해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적절한 자원이 제공되는가?
- 신청유산에서 현재 그리고 향후 요구되는 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재정 및 사업 계획이 있는가?
- 그러한 계획/체계에는 역량구축 내용도 포함되는가?
- 그러한 계획/체계에는 관련 체계가 실제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한 투명한 설명을 담고 있는가?
- 해당 관리계획에는 위험 대비 내용이 들어있는가?
- 해당 관리체계가 유산 보호 내용에 충분히 포함되어 있는가?

이와 관련한 이해당사자는 지역주민과 원주민, 유산소유자와 관리자, 중앙 및 각 지방 정부, 관광 등 상업적인 이해가 있는 이들, NGO 등이다.

연속유산이나 월경유산, 국가간 유산의 경우에는 개별 유산요소에 대해 적절한 보호관리 체계가 마련되고 그것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먼저다. 특히 최소한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유산요소들 간 상호 소통과 조정이 가능한 유산 관리체계가 있어야 한다.

-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보존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모든 유산요소를 조화롭게 관리
- 유산에 대한 위협요소를 확인하고 이에 대응
- 특히 세계유산협약에서 요구하는 모니터링과 보고 준비

연속유산이나 월경유산, 국가간 유산의 관리체계는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가능한 경우 세계유산으로서 그 관리의 응집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정 체계를 강화하고, 유산요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별개의 유산요소들, 특히 서로 다른 관리자들과 관리체계가 적용될 수 있는 별개의 유산요소를 어떻게 조화롭게 관리할지가 분명해야 한다.

기존 관리계획이나 체계가 잘 작동한다면 해당 유산을 관리할 주체를 새로 만들 필요는 없다. 그러나 기존 메커니즘이 적합하지 않다면 새롭고 구체적인 체계가 필요할 수 있으며, 단 이는 효과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사례연구

샬리 쉬르 루아르와 샬롱 사이에 있는 루아르 계곡(프랑스)

루아르 계곡은 역사도시와 마을, 훌륭한 건축물(성), 지역 주민과 루아르 강을 중심으로 하는 물리적 환경이 여러 세기에 걸친 상호작용의 결과 형성된 경작지 등으로 이루어진 매우 아름다운 탁월한 문화경관이다.

1994년 프랑스 정부는 루아르 계곡에 대한 일관성 있는 계획관리를 위해 10년 종합계획(‘자연스러운 루아르 강 계획’)을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계획은 이 지역의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을 함께 이루며, 영토집합체(territorial collectivities), 경제 관련 기관 및 협회 등 관련 단체와 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해 시행한다. 또한 유산 평가과정에서 제시된 권고에 따라 해당 지역의 관리 감독을 위해 정부 조직과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었다.



© UNESCO/Alexis N. Vorontzoff

유산관리에 기여하는 등재신청서

등재신청서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서류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신청유산의 지속적인 관리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 신청서에는 해당 유산의 상태와 향후 보존, 관리, 모니터링에 대한 여러 계획이 들어있다.
- 세계유산이라는 지위는 하나의 유산을 변화시킬 수도, 혜택을 줄 수도 있으며, 그러한 지위로 인한 영향, 예를 들어 등재 이후 방문객과 관광객 증가 등의 내용을 신청서에 적절히 기술할 필요가 있다.
- 평가과정 중에는 제시된 관리방안 등을 비롯해 신청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진다. 유산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관리 내용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당사국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협상하고 이해해야 하는 사항이다.
- 세계유산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은 특히 해당 유산의 관리와 보호에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키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세계유산으로 얻게 되는 혜택이 참여 이유가 된다. 마찬가지로 이해당사자들 중에는 세계유산이 되는 것을 하나의 위협 요소로 보는 이들도 있으며, 등재신청 준비 과정에서 그들의 의견과 우려 또한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
- 등재신청서에는 향후 몇 년 간 유산 보존현황을 측정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초자료가 담겨야 한다.

모니터링

유산 관리의 핵심은 유산의 현재 상태와 보존현황, 미래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요소를 모니터링하는 데 있다. 모니터링을 통해 유산 관리자는 의미있는 정보를 얻게 되는데, 모니터링을 통해 유산 보호와 보존, 관리가 그 목적을 달성했는지, 변화가 필요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유산 모니터링은 완전성, 보호관리, 문화유산의 경우에는 진정성을 비롯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집중해야 한다. 역시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기술문은 모니터링 시 핵심적으로 참고해야 할 자료이다.

신청서에 모니터링에 대한 기술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

세계유산 제도는 등재된 유산에 대해 6년에 한 번 모니터링을 실시해 공식적으로 정기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운영지침 V 참조). 모니터링 시스템이 잘 마련되어 있는 경우 정기보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신청서에는 유산의 보존현황을 비롯해 일련의 요소를 측정하고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요 지표가 담겨야 한다. 이들 지표는 유산의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전달하는 유산의 속성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속성들이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 보존, 관리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모니터링은 해당 유산의 성격에 맞는 기간에 따라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유산의 속성이 갖는 건실함 혹은 취약함 그리고 변화에 대한 민감성에 따라 모니터링의 규칙성이 결정된다.

누가 모니터링을 실시하는지도 중요한데 이는 모니터링 결과의 진정한 혹은 명백한 신뢰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모니터링은 독립적인 관련 전문가들이 투명한 방식으로 시행할 때 더 높은 신뢰성을 갖는다.

이와 관련해 참고할 자료에는 ‘세계유산 모니터링(World Heritage Monitoring),’ ‘세계유산 페이퍼 10(World Heritage Papers 10,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 ICCROM, 2004)’이 있다.

자연유산의 경우 그간 모니터링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도구들이 개발되었다. ‘더 나은 우리 유산 키트(Enhancing Our Heritage Toolkit),’ ‘세계자연유산 관리 효율성 평가도구(Assessing Management Effectiveness of Natural World Heritage Sites (Hockings et al., 2008)’ 등이 있다. 유산관리의 효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이보다 더 단순한 도구들도 있다. 필요하다면 IUCN이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3.2 추가 정보

성공적인 등재신청서와 그 과정에 대한 검토

신청서를 준비하는 시점이라면 등재에 성공한 유산의 신청서를 검토해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관련 기준이나 기대에 변화가 있으므로 예전 신청서보다는 최근의 신청서를 참고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또한 신청하고자 하는 유산과 일정한 측면에서 유사한 유산의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직접 비교가 가능한 유산의 등재신청서는 비교연구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67-73쪽 참고).

KEY MESSAGE

다른 신청서와 신청 절차의 사례가 도움이 될 수 있다.

1998년 이후 등재된 신청서는 아래에서 볼 수 있다.

- <http://whc.unesco.org/en/list/>(영어)
- <http://whc.unesco.org/fr/list/>(불어)

신청서를 봤다면 해당 신청서의 수준과 강점, 그리고 약점까지도 알려주는 자문기구 평가보고서도 참고한다. 평가보고서 역시 위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서류 외에 신청서 준비를 위한 관련 절차와 관련해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얻는 것도 가능하다. 혹은 최근 등재에 성공한 신청서를 작성한 당사국과의 논의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성공적인 등재신청서나 등재신청 절차를 아무런 비판없이 준비 중인 신청서의 견본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각 신청서와 개별 당사국은 각기 처한 환경이 달라 다른 곳에서 쉽게 베낄 수 없는 등재신청과 관련된 그들만의 절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4 등재신청서의 작성과 준비

일단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기술문이 개발되고 탄탄하고 방어 가능한 경계가 설정되었으며, 유산에 대한 보호, 보존, 관리가 잘 이루어지는 동시에 주요 이해당사자들이 신청서 준비를 지원하는 상황이라면, 이제 등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4.1 일반 정보

신청서는 누가 써야 하는가

신청서는 그 목적과 정보, 주장, 결론 면에서 반드시 명확하고 일관성 있어야 한다. 전문 컨설턴트가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이 등재 성공을 위한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으로 보일 수 있다. 해당 컨설턴트가 세계유산과 신청유산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이는 꽤 유용한 방법이지만 이러한 방식이 좋은 신청서 작성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아니다.

많은 유산의 경우 신청서 작업에 함께 하는 지역 담당자들의 경험과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이 더해질 때 장기적으로 상당한 이점이 있을 수 있다. 유산의 가치와 해당 유산에 필요한 사항, 제약, 기회를 충분히 이해하고, 등재를 고민한 후 유산에 대한 보호, 보존, 관리를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유산이라면 유산의 가치와 보존, 보호, 관리상 향후 필요한 내용에 정통한 국내 팀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분명한 이점이 있다.

신청서는 명확하고 유창한 영어나 불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등재신청팀이나 작성자가 이 두 언어 중 하나에라도 능통하지 않다면 모국어로 신청서를 작성한 뒤 최종 신청서를 유창한 영어나 불어로 번역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번역이 부실한 신청서는 평가과정에서 혼란과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의미상 착오를 막기 위해 해당국의 언어로 된 용어집을 마련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등재신청 목적

세계유산 등재신청서는 본질적으로 세계유산 지위를 얻기 위한 공식 신청문서이다. 신청서는 관련 당사국, 또는 국가간 유산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당사국이 유네스코에 제출하는 공식문서이다.

등재신청서의 목적은 다음의 내용을 가능한 명확히 제시하는 데 있다.

- 유산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문서로 입증되는가
- 왜 이 유산이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가
- 보존상태와 유산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무엇인가
- 유산이 그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관련해 어떻게 보호, 보존, 관리, 제시, 모니터링될 것인가

신청서는 해당 유산의 세계유산목록 등재를 위한 평가, 이후 목록 등재 여부를 판가름하는 세계유산위원회 결정의 기초자료이다.

신청서 준비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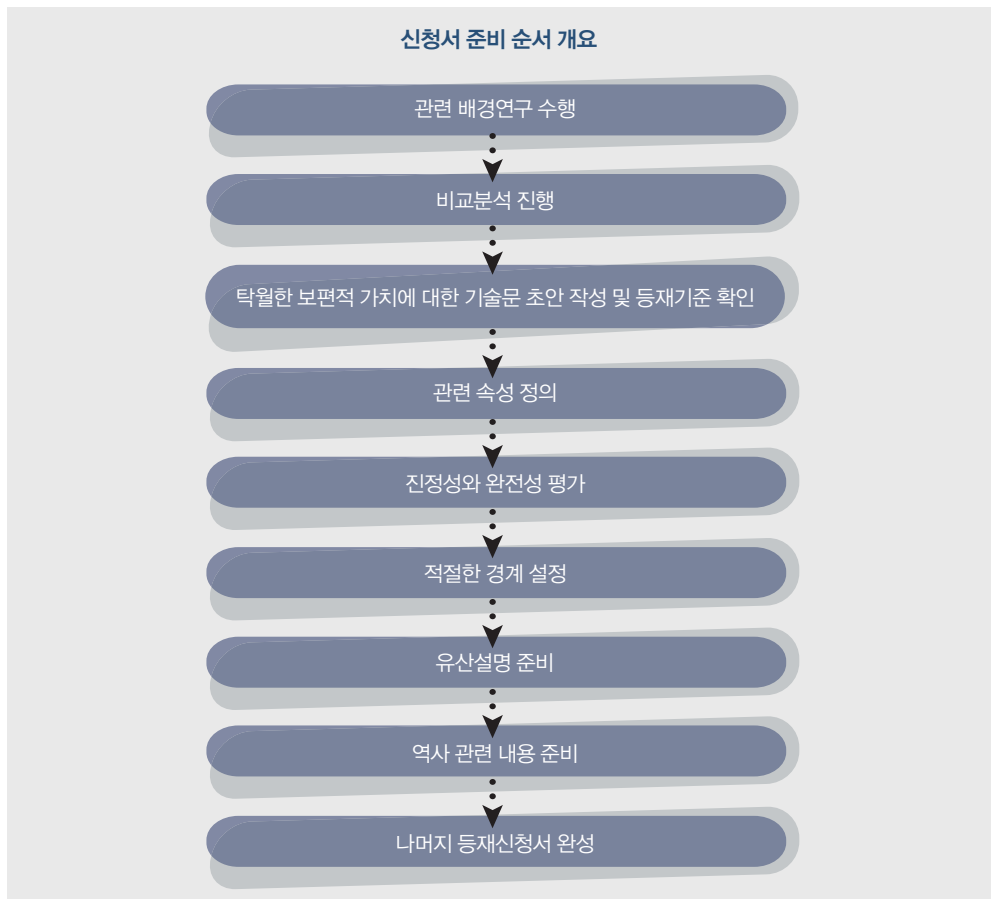
신청서 준비를 위한 단계 혹은 순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는 반드시 따라야 하며, 이해당사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참여가 수반되는 상호작용 과정임을 인식해야 한다.

- 관련 배경연구 수행
- 비교분석 연구
- 등재기준, 진정성, 완전성 등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기술문 준비
- 관련 속성의 정의
- 적절한 경계 설정
- 유산설명 준비
- 역사적 내용 준비
- 등재신청서 양식의 나머지 부분 완성

KEY MESSAGE
 신청서의 모든 항목은 OUV와 관련되어야 한다.

운영지침이 요구하는 등재신청서 양식의 순서대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반드시 가장 합리적인 방식은 아닐 수 있으며, 이는 자칫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타당성과 등재기준 설명 부분이 가장 만족스럽지 못한 장황한 신청서 작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신청서에는 상대적으로 작성하기 훨씬 쉬운 부분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이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받기도 한다. 가령 유산의 설명과 역사 부분은 내용이 이미 준비된 상태여서 그 내용이 광범위하며 텍스트 준비도 단순하다.



그러나 각 항이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의 연관성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는 아마도 유산의 가치가 확인되기 전에 그 내용이 준비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를 감안한 반복적인 접근 방식은 필수다. 예를 들어 유산의 역사에 대한 연구는 유산 가치를 확인하기 전에도 잘 진행될 수 있으나 역사 부분은 그러한 유산 가치와의 연관성을 높이기 위해 순차적으로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

위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먼저 확인한 뒤 나머지 항을 작성해 유산의 가치와 구체적으로 연계시킬 것을 권한다. 유산설명 항에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전달하는 물리적 속성을 기술해야 하며, 역사를 기술하는 항에서는 해당 유산이 유산의 속성과 그 가치를 어떻게 발전시켰는지를 설명한다.

개요

모든 등재신청서의 첫 번째 부분은 개요(Executive Summary)이다. 이는 해당 등재신청의 정수를 담은 신청서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3장에서 개괄한 내용을 적어도 초안 단계까지 진행했다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개요 초안을 작성한다. 개요는 신청서 작성 초기에 쓰는 것이 좋으며 그래야 신청서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신청서의 진짜 중요한 부분을 강조할 수 있다.

개요는 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발견된 새로운 정보나 사실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이는 마찬가지로 등재신청 과정의 집중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개요에 제시된 정보는 신청서 본문에 제공된 정보와 일치해야 한다.

신청서 제시

등재신청서는

- 유산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 유산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 유산의 역사를 개괄해야 한다.
- 유산의 중요성과 유산의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왜 타당하다고 보는지 증명해야 한다.
- 하나 이상의 등재기준을 어떻게 충족시키는지 설명해야 한다.
- 유산의 보존현황과 그것이 어떻게 기록되고 모니터링되는지 설명해야 한다.
- 유산의 가치를 전달하는 속성을 법적으로 보호, 관리해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그러한 과정에 누가 참여할 것인지를 설명해야 한다.
- 유산의 가치를 방문객 등에게 어떻게 제시하고 해석할 것인지 제시해야 한다.

길고 복잡한 신청서가 신청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좋은 것은 아니다. 신청서는 애초의 목적 달성을 위해 그 대상을 잘 설정해야 하며 지나치게 길 필요가 없다. 긴 신청서는 오히려 유산에 대한 집중력을 떨어뜨린다. 디자인이나 삽화, 인쇄가 화려할 필요도 없다. 포장에 정성을 들일 필요도 없다.

KEY MESSAGE

다른 신청서와 그 등재신청 과정을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신청서는 비싸고 화려한 겉모습보다 그 내용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편집에 조금 신경을 쓰면 읽는 이들이 그 내용을 더 빠르게 이해하고 신청서 각 항 사이를 오가며 살펴보기에도 좋은 것은 사실이다.

신청서를 가능한 쉽게 작성하려면 세부 자료는 부록에 싣고 본문에는 핵심 메시지만 담아 관련 내용이 지나치게 자세해져 논점을 흐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부록의 세부 정보는 본문과 상호참조 되어야 한다. 신청서 본문에는 간단명료하고 의미 있는 답변이 담겨야 하지만 그렇다고 부록에 단순히 참고자료만 제공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부록 또한 등재신청과 분명한 관련이 있는 정보만을 담도록 관련 자료를 잘 선정해야 한다. 필요하지 않은 많은 정보를 부록에 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신청서에 요약된 정보를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필수정보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부록이 불필요하게 많으면 신청서가 제시하는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심사하는 데 방해가 된다.

신청서 집필자는 이 유산이 어떤 유산인지, 왜 잠정적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지, 이러한 가치가 어떻게 보존, 보호, 관리, 제시될 수 있는지 등의 핵심 메시지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는 그러한 핵심 메시지가 세부 정보에 묻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운영지침은 유산의 종류에 따라 신청서 사본을 요청한다(132.10항). 인쇄본과 전자본은 모두 동일해야 하며, 하나를 원본으로 간주하는 경우라도 그러하다. 한 부는 세계유산센터가 보관하며, 나머지는 심사를 위해 자문기구에 배포하는데 각 사본은 반드시 똑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신청서 양식에 대한 운영지침의 요건 또한 주목해 살펴보아야 한다(132항).

신청서 마무리와 공식 서명은 단순한 절차상의 행위로 다루기보다는 공개적으로 축하하도록 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부연이다.

인쇄본

- 서류는 깔끔하게 인쇄하고 체계적으로 구성하며 표준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확신이 없다면 간결하고 깔끔하게 편집하며 제한된 수의 글꼴만을 사용하도록 한다.
- 가능하다면 사진과 도표를 이용해 유산과 관련 내용을 설명한다. 그림과 사진은 유산과 유산의 가치, 완전성, 관리 문제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으로 선별한다.
- 유산의 모든 면을 보여주는 이미지들을 선정하고 가능한 중복은 피한다.
- 자료는 영어나 불어로 제공한다. 두 언어 중 하나를 높은 수준으로 구사하는 이에게 최종본이 깔끔하고 이해하기 쉽게 쓰였는지를 확인 받는 것이 좋다.
- 세계유산 신청서 양식은 너무 기술적이어서 광범위한 일반 대중의 호응을 얻는 출판물이 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등재 이후 보다 대중적인 자료를 마련해 신청서를 보완하는 방식을 권고한다.
- 중요한 것은 신청서에 담긴 주장과 논거의 질적 수준이지 그것을 어떻게 제출하는가가 아님을 기억한다. 멋진 책에 허술한 주장을 담아보아야 여전히 등재 논거는 부족할 뿐이다.
- 신청서 중에는 공들여 만든 특별한 상자에 담겨 제출되는 것도 있다. 상자에 관련 정보를 담아 포장하는 것이 편리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정보이지, 포장을 얼마나 잘했느냐가 아니다.
-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필요를 충족할 만큼 충분한 양의 신청서를 인쇄한다.

- 신청서는 지역의 이해당사자들에게 잘 배포되고 가시적이어야 하며,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 당사자들에게는 무료 인쇄본을 배포하는 것이 좋으며 정가가 책정되더라도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신청서에 접근하기 어렵지 않은 수준이어야 한다.
- 신청서 무료 제공은 관련 기여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좋은 방법이다.
- 신청서는 백 권 이하에서 수천 권까지 인쇄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해당사자와 기타 이해 관계자들의 요구에 따라 대량 배포를 위해 인쇄를 진행할 때는 먼저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물론 그렇더라도 최소 몇 부는 최종 마무리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필요할 수 있다.

전자문서

- 모든 신청서는 부록을 포함해 전자본이 있어야 한다.
- 전자본은 인쇄된 문서 형태의 파일에서 생산되어야 하며 이는 그 양식과 쪽 번호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인쇄본과 전자본의 정보는 동일해야 한다.
-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와 어도비 PDF 파일로 제공할 것을 권장한다.
- 신청서는 자문기구가 진행하는 과정 전반에 걸쳐 대개 많은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치게 된다. 즉 전문가들에게 전자본을 제공하게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전자문서의 해상도는 전문가들이 사진과 지도 등의 이미지를 자세히 검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해야 한다. 품질이 낮은 이미지는 사용할 수 없다. 애매하다면, 지도나 옛날 이미지의 경우 최고 해상도로 제공한다.
- 문서파일의 크기도 감안한다. 특히 불필요하게 큰 이미지 파일은 피한다. 문서의 해상도에 맞게 이미지의 크기를 결정한다. 대용량의 고품질 이미지는 A4 문서에서는 대개 불필요하다. PDF 파일을 만들 때는 전반적으로 파일의 크기를 줄인다. 대용량에 고품질 파일이어야 하는 이미지는 부록에 실거나 별도 파일로 제공할 수 있다. 대용량 파일의 경우 텍스트만 있는 파일과 텍스트와 이미지를 함께 제공하는 파일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도 방법이다. 텍스트 파일만 제공한다면 이미지(지도 등)는 별도 파일로 첨부한다.
- 서류에 담기 힘든 일반적이지 않은 글꼴은 피한다. 일반적이지 않은 글꼴의 경우 다른 컴퓨터에서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 해당 세계유산 신청서의 전자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추가 정보는 CD에 담는다.

부록

- 신청서 본문은 단독으로도 등재 근거, 유산의 완전성과 진정성, 보호, 관리와 관련된 핵심 내용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추가정보는 부록에 담을 수 있다. 다만 부록을 이용할 때에도 유의해야 한다. 요구되는 모든 정보는 신청서 본문에 담으며 이를 명확하고 우수한 품질로 작성해야 한다. 핵심 정보는 부록이 아니라 본문에 담아야 한다.
- 보충적인 성격의 추가 정보를 부록에 대량으로 실는 일도 가능한 피한다. 신청서에 이미 요약된 정보의 가치를 잘 뒷받침할 정보만을 부록에 담을 것을 권한다. 단순히 완성도를 위해 부록에 여러 문서를 추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 신청서에서는 부록에 포함되는 자료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해야 한다. 자문기구가 평가자와 검토자들에게 대량의 부록자료를 열람하도록 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주요 정보는 항상 신청서에 직접 언급되어야 한다. 자문기구가 많은 양의 부록 속에 파묻혀 있는 주요 정보를 찾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 부록 또한 전자본으로도 제출해야 한다.

지도

- 신청서에서 제공되는 지도의 품질과 명확성은 유산을 이해하는 데 있어 지도의 유용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지도의 요건은 4.2항에서 다룬다.
- 아래 두 가지 지도의 예는 각각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지도의 요건을 보여주고 있다.

신청서가 미완성 판단을 받는 가장 흔한 이유는 유산의 명시, 특히 제공된 지도와 관련돼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아래 지도와 관련된 6가지 요건에 주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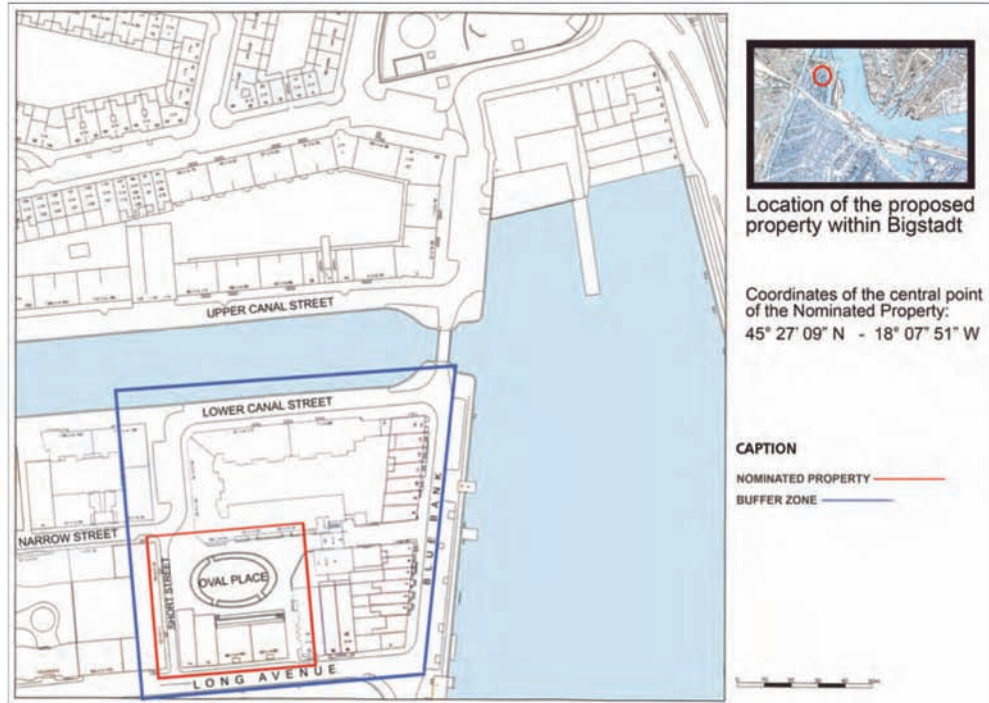
- 유산의 범주에 따라 제시되는 적절한 지도의 유형 - 큰 유산은 지형도, 상대적으로 작은 유산은 지적도 - 을 선택한다.
- 제시되는 유산의 경계는 보기는 쉽되 가능한 얇은 선으로 표시한다. 지형적 요소에 색을 입혀서는 안 되며, 가늠지만 잘 보이는 선으로 경계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더 낫다. 유산을 식별하는 주요 지도에는 제시된 유산 구역과 그 완충구역(해당할 경우)을 보여주는 선만 있어야 한다.
- 지도에는 좌표 격자를 두거나 식별 지점을 좌표에 표시해야 한다.
- 적절한 축척 선택이 중요하다. 자연유산과 문화경관은 대개 1:50,000 축척의 지형도가 좋으나 전체 유산을 표시하는 데 지도가 한 장 이상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없다. 일반적인 문화유산의 경우에는 보통 지적도가 제일 좋다. 단일 기념물의 경우에는 1:2,000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또한 모든 지도에는 막대와 수치로 나타낸 축척이 표시되어야 한다.
- 지도에는 신청유산과 완충구역(해당 시)의 경계를 명확히 설명해 주는 캡션을 달아야 한다. 주요 식별지도에는 혼돈을 막기 위해 다른 보호구역에 대한 정보를 담아서 안 된다. 캡션은 운영지침의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보호구역(protection zone)', '보존구역(conservation area)', '역사지구(historic district)' 등의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 제출하는 지도와 도면의 캡션 등은 영어나 불어로 작성해야 한다.

지도의 예

문화유산 지도

여기 나오는 가상의 지도는 문화유산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 중 하나로 도심을 가로질러 그 경계가 설정된 유산을 담고 있다. 지도에는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다.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여타 보호구역을 나타내는 다른 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도(지적도)의 축척은 적절한 두께의 경계선(선이 너무 두꺼우면 정확성이 떨어진다)과 함께 지정된 지점(건물, 블록, 거리 등)이 제시된 경계의 안이나 밖에 위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다. 또한 막대로 나타낸 축척과 적절한 용어정의('유산구역'과 '완충구역'), 언어(지도에 사용된 언어는 신청서 텍스트에 사용한 언어와 동일해야 한다)로 깔끔하게 작성된 캡션을 통해 제시된 경계를 명료하게 확인할 수 있다. 좌표 격자는 지적도에서는 필요하지 않지만 지형도의 경우에는 종류에 관계없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4 등재신청서의 작성과 준비



출처: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자연유산 지도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대한민국) 유산과 관련된 지도로 연속유산인 자연유산의 경우에 해당한다. 지형도에는 좌표 격자와 축척을 나타내는 막대가 있으며 캡션 또한 잘 작성되어 있다. 제시된 경계를 보여주는 선은 너무 두껍지 않되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보여준다. 특히 지형적 요소(도로, 강, 산, 마을 등)가 지도에서 모두 잘 드러나며 식별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하다. 경계는 항상 선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지도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지형적 요소를 가리는 동일 색상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출처: 대한민국 문화재청

유의점: 위의 예는 이 책을 위해 그 크기를 축소한 것이다. 신청서 수록 지도는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크기로 제작되어야 한다.

신청서 작성과 제출 시간표

신청서 작성에는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일단 신청서 제출이 결정되면 참여자들은 가능한 이를 빨리 진행하고 싶어 하지만 소요시간은 현실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 신청서 작성을 시작하기 전 예비과정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작성 과정에서도 자문과 확인, 적절한 지도와 그림을 담아내기 위해 넉넉한 시간이 허락되어야 한다.

적절한 보호와 보존, 관리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라. 비슷하게 비교분석, 특히 다른 나라에 있는 비교 가능한 유산에 대한 기존 정보는 대개 부족한 편이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일이 잘못될 상황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적절한 시간도 마련돼 있어야 한다.

자문기구는 종종 신청서가 급히 준비된 까닭에 신청서 제출 전 모든 작업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는 ICOMOS와 IUCN이 추가 작업을 요구하며 신청서를 당사국에 반려 또는 보류 권고하게 되는 흔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한 상황에서 신청서 제출을 서두르는 것은 사실상 등재 성공에 걸리는 시간을 더 늘어나게 할 수 있다.

신청서 제출 시에는 단계적이 아닌, 모든 자료를 한꺼번에 보낸다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 본 신청서 접수 후 보충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지만 이는 자문기구의 요청이나 예상치 못한,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예정된 상황에 대한 응답의 형태여야 한다.

또한 신청서는 제출 마감 직전에 보내지 않는 것이 좋다. 제출 마감시한은 엄수한다. 신청서는 마감 전 언제라도 제출할 수 있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당사국은 자발적으로 매년 9월 30일 이전까지 세계유산센터에 신청서 초안을 보내 완성도에 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이는 당사국이 신청서를 최종 제출하기 전 신청서의 여러 항목에 대해 확인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기회이다. 신청과정을 잘 계획하려면 이 단계를 포함시켜야 한다. 단, 이때 세계유산센터가 진행하는 평가는 일종의 자문 성격이며 신청서의 완성도 문제를 다룰 뿐이라는 데 유의해야 한다. 즉 유산의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가에 대해 의견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완성된 신청서를 전달받은 IUCN 및/또는 ICOMOS만이 평가할 수 있다.

4.2 신청양식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신청서 공식 양식을 승인했으며, 신청서 제출 시에는 늘 가장 최근 양식을 따라야 한다(운영지침 부록 5 참조). 해당 양식은 구체적인 기준에 맞게 신청유산에 대한 일관된 정보를 세계유산위원회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해당 양식에는 각 절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 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제출 마감시점에 완성된 것으로 간주된 신청서만을 검토한다는 데에 유의한다. 즉 완성된 신청서만이 심사를 위해 IUCN 및/또는 ICOMOS로 전달돼 심사를 받게 된다. 미완성 신청서는 추가적인 고려 없

KEY MESSAGE

신청서 준비에 필요한 시간은 현실적으로 책정해야 한다.

KEY MESSAGE

신청서가 다 준비도 되기 전에 서둘러 제출해서는 안 된다.

KEY MESSAGE

보충설명과 추가설명 부분을 주의 깊게 읽는다.

4 등재신청서의 작성과 준비

KEY MESSAGE

반드시 등재신청서 양식의 모든 항목을 작성해야 한다.

이 당사국에 반환되며, 해당 신청서는 완성해 다시 제출해야만 최소 1년 후 재검토된다. 운영지침 132항과 부록 5에는 어떤 신청서가 완성된 신청서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다. 이 장에서는 기존 세계유산 등재신청 양식과 함께 신청서 핵심 항에 대한 추가 설명을 제공한다.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whc.unesco.org)의 공식 신청서 양식의 최근 버전을 확인하거나 세계유산센터에 연락한다.

개요

당사국이 제공하는 아래 정보는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무국이 업데이트한다. 그런 다음 해당 유산의 세계유산목록 등재 근거를 다시 확정해 이를 당사국에 알린다.

현행 등재신청서 신청양식	현행 등재신청서 보충설명	추가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요의 내용은 신청서 본문에서 제공되는 내용과 동일해야 한다. 개요 항목에는 어떤 유산을 왜 신청하는지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개괄해야 한다. 1~3페이지 분량으로 짧고 간결해야 하며 장문의 설명을 늘어놓아서는 안 된다. 개요를 위해 새로운 문장을 써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기술(SOUV)은 신청서 3b절의 내용과 동일해야 한다. 신청서의 해당 항목들이 잘 기술되었다면 개요를 위해 이를 축약할 필요는 없다.
당사국		
주, 도 또는 지역		
유산의 명칭		
최인점 초 단위까지 표기한 지리 좌표		
유산의 경계에 관한 기술		<p>신청서와 함께 제공하는 지도와 내용 설명은 유산 경계의 위치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완충구역 또한 분명히 밝혀야 한다. 유산의 전체 경계를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것이 어떻게 정의되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있어야 한다.</p> <p>예를 들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유산의 경계는 ○○국립공원/문화유적의 경계이다. 1~5km의 완충구역은 남쪽과 동남

현행 등재신청서 신청양식	현행 등재신청서 보충설명	추가설명
		<p>쪽으로는 ○○강, 북쪽으로는 ○○산림보호구역의 경계, 서쪽과 남쪽으로는 썰물 해안지대 등의 자연적 지형에 따라 유산구역을 둘러싸고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속유산으로 국가간 유산인 이 유산의 경계는 ○○국립공원(A국가), ○○보존구역(A국가), ○○절대자연보호구역(B국가)의 경계이다. • 신청유산은 ○○군도의 4개 섬과 각 섬의 썰물 지점을 기준으로 12해리 주변 수역을 포함한다.
<p>신청유산의 경계와 완충구역(있을 경우)을 보여주는 A4 또는 A3 크기의 지도</p>	<p>A4(또는 레터지) 크기 지도</p>	<p>이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공되는 자문기구의 평가보고서에 이용될 지도이다. 따라서 정확하고 읽기 쉬워야 한다. 기억해야 할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도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에서 언급했듯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A4(레터지) 크기여야 한다. • 지형도에서 발췌한 것이어야 한다. •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에 대해 서로 다른 색깔과 눈에 띄는 선을 이용해 전체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을 보여줘야 한다. • 신청유산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신청서의 언어에 따라) 영어 또는 불어로 된 명료한 캡션이 있어야 하며, 연속유산의 경우에는 구성요소들을 명명해야 한다. • 규모와 거리를 나타내는 축척을 분명히 표기해야 한다. <p>해당 국 내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를 작은 박스 형태에 담아 본문 지도의 한 쪽에 배치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p> <p>A4 한 장에 꼭 맞게 적절히 담지 못하는 연속유산이라면 아래의 내용을 담은 여러 장의 A4 지도를 제공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산 전체, 위치, 각 요소 간 거리를 보여주는 지도 1장 • 개별 유산요소와 완충구역을 보여주는 지도 1장 이상 <p>이들 지도는 개요 항에 포함되어야 하며 신청서에서 언급되거나 나중에 첨부하거나, 혹은 부록으로 수록해서도 안 된다.</p>

4 등재신청서의 작성과 준비

현행 등재신청서 신청양식	현행 등재신청서 보충설명	추가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다 구체적인 지형도와 다른 지도는 신청서의 다른 항에 수록해야 한다.
<p>세계유산 등재신청 기준 (해당 기준을 항목별로 기재) (운영지침 77항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산을 등재하는 등재근거를 나열해야 하며, 각 기준 당 100단어가 넘지 않는 짧은 설명을 덧붙인다.
<p>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기술 (해당 유산에 구현된 탁월한 보편적 가치라고 생각되는 점을 약 1-2쪽 분량으로 명확히 기술해야 함)</p>	<p>155항에 따라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기술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p> <p>a. 간략한 종합 b. 등재기준의 근거 c. 완전성에 대한 기술(모든 유산에 해당) d. 진정성에 대한 기술 (등재기준 (i)-(vi) 아래 신청하는 유산) e. 보호관리 요건</p> <p>부록10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기술문은 신청서 3.3절의 기술과 동일해야 한다. • 이 기술문은 유산의 가장 중요한 특징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간결하면서도 충분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3.1.a-3.1.e항에 기술할 수 있다.
<p>공식 기관/기구의 명칭 및 연락처</p>	<p>기관명: 주소: 전화: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기에는 최소한 당사국 내 등재신청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 연락처를 기입해야 한다. • 당사국의 급이 다른 주요 기관의 연락처도 기입할 수 있다(예, 지방정부). • 연속유산인 국가유산의 경우 주요 기관 연락처 하나를 언급해야 한다. 국가간 유산인 경우, 각각의 주요 정부기관이 언급되어야 한다.

세계유산목록 등재 유산

유의사항: 당사국은 신청서 작성 시 아래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보충설명 항은 삭제하지 않는다.

현행 등재신청서 신청양식	현행 등재신청서 보충설명	추가설명
1. 유산의 명시	이 절은 2절과 함께 신청서 중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본 항은 위원회가 유산의 소재지와 지리적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명확히 기술되어야 한다. 연속유산일 경우 각 구성요소의 명칭과 지역(구성요소마다 다를 경우), 좌표, 면적과 완충구역을 표시한 표를 삽입한다. 여러 구성요소들을 구별할 수 있는 기타 사항(참조할 페이지 번호, 지도 번호 등) 또한 첨부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절에서는 신청유산의 위치와 규모에 대한 사실정보를 제공한다. 내용은 짧고 간결해야 한다. 제공하는 지도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a 국가명(및 당사국, 서로 다를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산을 신청하는 국가(월경유산이나 국가간 유산의 경우에는 복수의 국가)는 간략히 명명해야 한다. 해당 국가에 대한 정보는 필요하지 않다.
1.b 소재 주, 도 및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유산이 위치한 주, 도 및 지역의 명칭이나 그 목록을 나열해야 한다. 월경유산이나 국가간 유산의 경우에는 목록에 나열된 각 주, 도 및 지역을 포함시켜야 한다.
1.c 유산의 명칭	<p>세계유산 관련 간행물에 사용될 공식 명칭이다. 명칭은 간결해야 한다. 띄어쓰기와 구두점을 포함해 200자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p> <p>연속유산일 경우(운영지침 137-139항 참조) 건조물군 전체를 아우르는 명칭을 부여하도록 한다(예: 필리핀의 바로크 양식 성당들). 연속유산을 이루는 구성요소들의 명칭은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1.d, 1.f에 표로 포함되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산의 명칭은 기존 지역 또는 국가의 명칭, 그리고 유산의 성격/가치의 측면에서 합리적이어야 한다. 새로 고안한 이름보다는 알려진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 명칭은 향후 유산 홍보에 사용될 것임을 기억한다. 유산의 명칭은 간결해야 하며 띄어쓰기와 구두점을 포함해 100자를 넘지 않아야 한다. 지역의 언어와 문화, 전통이 고려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역 단위의 협의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 두 개의 이름을 결합한 명칭을 쓸 수 있다(예. 테와히포나무공원, 우카홀람바 드라켄즈버그 공원). 연속유산인 경우에는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명칭을 선택해야 한다(예. 원난성 보호구역의 세 하천, 수마트라의 열대우림 지역, 캐나다 로키산맥 공원).

4 등재신청서의 작성과 준비

현행 등재신청서 신청양식	현행 등재신청서 보충설명	추가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경유산 또는 국가간 유산의 경우에는 관련된 양국이 유산의 명칭에 반드시 동의해야 한다(예. 우브스 누르 분지 (몽골, 러시아), 하이 코스트/크 바르겐 군도 (핀란드, 스웨덴). • 다수의 별개 유산요소의 명칭보다는 전체 유산의 가치를 담은 하나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낫다.
<p>1.d 최인접 초 단위까지 표기한 지리 좌표</p>	<p>신청유산의 중심으로 추정되는 지점의 위도 및 경도 좌표(최인접 초 단위까지 표기) 또는 UTM 좌표(최인접 10m까지 표기)를 제시한다. 다른 좌표체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궁금한 점은 사무국에 문의한다.</p> <p>연속유산일 경우 각 구성요소의 명칭, 소재지(또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최인접 도시) 및 중심점의 좌표를 도표로 작성한다. 좌표는 다음의 형식을 따른다.</p> <p>N 45° 06' 05" W 15° 37' 56" 또는 UTM Zone 18 Easting: 545670 Northing: 4586750</p>	

번호	구성요소의 명칭	지역/지구	중앙점 좌표	신청 구성요소의 유산구역 면적(ha)	완충구역 면적(ha)	지도(°N)
001						
002						
003						
Etc.						
총 면적(ha)				ha	ha	

<p>현행 등재신청서 신청양식</p>	<p>현행 등재신청서 보충설명</p>	<p>추가설명</p>
<p>1.e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의 경계를 보여주는 지도와 평면도</p>	<p>신청서에 첨부하며, 축척과 날짜와 함께 아래 항목에 기재한다.</p> <p>(i) 전체 유산을 보여주는 최대 축척의 지형도 원본.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신청서 중 보호관리 절에 들어갈 지도에는 신청유산에 도움이 되는 특별한 법적 보호구역의 경계도 표시되어야 한다. 연속유산인 경우 여러 개의 지도가 필요할 수 있다(1.d 참조). 제공하는 지도는 가능한 크고 실용적인 축척으로 주변 정착지와 건물, 길 등의 지형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유산 경계 내, 인근 또는 경계 위에서 행해질 수 있는 개발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제시된 유적의 경계를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 반드시 적절한 축척을 선택해야 하며, 이는 등재 신청된 유적의 범주에 관련되어야 한다. 문화유산의 경우 지적도가 요구되는 반면, 자연유산이나 문화경관은 지형도(보통 1:25,000 또는 1:50,000)가 필요하다.</p> <p>지도 위 경계선이 너무 굵으면 유산의 실제 경계가 모호해지므로 경계선의 굵기에 유의해야 한다.</p> <p>지도는 http://whc.unesco.org/en/mapagencies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p> <p>적절한 축척의 지형도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다른 지도로 대체할 수 있다. 모든 지도는 좌표 일체와 함께 지도 양 반대쪽에 최소한 세 곳의 지점이 표시되어야 하며, 지리적 위치를 확인, 참조할 수 있어야 한다. 지도는 트리밍 없이 축척, 방위, 투상, 기준선, 유산 명칭, 날짜를 표기해야 한다. 지도는 가능한 접지 않고 말아서 보내도록 한다.</p> <p>지리정보는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리정보시스템)에 통합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디지털 형식으로 제출한다. 이 경우 유산(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의 경계선은 최대한 큰 축척으로 하며, 벡터 형식으로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세부정보를 원하는 신청국은 사무국에 문의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유산에 필요한 지도와 평면도는 유산의 유형과 그 역사에 달려있다. 잠재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측면을 어떤 방법으로도 묘사해야 한다. • 지도와 평면도의 축척, 상세수준, 해상도는 경계를 통해 관련 특징물을 이해할 수 있고 유산의 맥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해야 한다. • 최소한의 도식적 정보만 담은 것을 낸 지도는 해당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 대축척 지형도나 지적도(문화유산의 경우)가 일반적으로 이상적이며, 이들을 맨 위에 덧대 정보를 얻는데 이용하더라도 그러하다. • 유산의 특징물의 위치는 지도/평면도에 표시하거나 기술하며, 지도/평면도, 기술 내용 간 상호 참조가 쉽도록 일관된 명칭이나 부호를 사용해야 한다. 즉, 어떤 지도에 사용된 특징물의 명칭과 기술된 설명에서의 명칭은 동일해야 한다. 지도나 평면도에 사용된 언어는 영어나 불어여야 한다. • 해당 국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지도 제공도 권한다(최대 A4 또는 레터 크기). • 해당 국가 내 유산의 위치도는 최대 A4 또는 레터 크기로 할 것을 권한다. • 또한 전체 신청유산과 그 경계, 완충구역(최대 A4 또는 레터 크기)을 보여주는 지형도 또는 지적도(문화유산의 경우)를 제공할 것을 권한다. 이는 '개요'에 이용한 지도와 동일한 지도이다. • 신청유산과 그 경계, 완충구역을 보여주는 원지형도나 지적도(문화유산의 경우)는 반드시 가능한 최대의 축척으로 제공해야 한다. • 기술한 내용에 언급된 중요한 특징물은 적절한 크기로 지도나 평면도에 강조해 표시해야 하나, 제한한 경계를 나타내는 주요 지도에는 표시하지 않는다. • 원 기본지도/평면도에 색깔이 있다면 색깔 있는 버전도 제공해야 한다. • 경계를 나타내는 지도에 대해 좋은 캡션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캡션은 운영지침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신청된 유산과 그 완충구역(해당하는 경우)을 확인해 준다. 이들 경계들은 분명해야 하며 지도에 다른 선 작업 내용이 있어 혼돈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현행 등재신청서 신청양식	현행 등재신청서 보충설명	추가설명
	<p>(ii) 당사국 내 신청유산의 소재지를 표시한 위치 지도</p> <p>(iii) 유산의 개별적인 특징을 표시한 도면과 지도는 큰 도움이 되며, 첨부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p> <p>자문기구와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하는 자료의 복사와 제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가능하면 신청서에 A4(또는 '레터지(letter)') 규격으로 축소된 지도와 디지털 이미지 파일로 변환한 주요 지도를 포함시키도록 한다.</p> <p>완충구역이 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신청유산의 적절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완충구역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연속유산의 경우 신청하는 모든 유산요소를 나타내는 위치도를 제공해야 하며, 개별 유산요소에 대한 위치도 또한 제공해 유산요소들을 그 주변 지역과 연결 지을 수 있도록 한다. A4 한 페이지에 적절히 담을 수 없는 연속유산인 경우에는 (i) 전체 유산구역과 그 위치, 각 요소 간 거리를 나타낸 지도, (ii) 개별 유산요소와 완충구역을 나타낸 하나 이상의 지도를 포함해 A4 크기 여러 장의 지도를 제공해야 한다. • 국가 및 국가간 연속유산의 경우 해당 유산의 각 유산요소의 경계들을 명확히 표시한 원지형도를 제공해야 한다. • 기존 유산의 확장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래 유산의 위치와 확장 신청구역을 비교해 보여주는 지도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 특정한 가치, 특징물 또는 사안을 묘사하기 위한 추가 지도는 유산의 명시 항이 아닌 다른 항에서 제공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지도가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질도: 등재기준(viii) 하에 등재를 신청하는 유산 - 식생도: 등재기준(ix), (x) 하에 등재를 신청하는 유산 - 종분포도: 등재기준(ix), (x) 하에 등재를 신청하는 유산 - 인프라 또는 인프라 계획(예, 도로, 도로건설, 댐, 항후 개발 등) - 접근도: 유산 내 그리고 인접한 주요 접근로 • 유산의 위치와 경계를 표시한 A4 크기의 기본 지도가 본문에 포함되어야 한다. 추가 지도는 대개 부록에 들어가야 하며 그 표시를 분명히 하는 한편 기술에서 그 내용이 언급되어야 한다. 1.e항에 지도목록과 수록된 위치를 담아야 한다. • 지도는 A3 크기로 제작해 반을 접어 A4 서류 안에 맞도록 제공하는 것이 좋다.

현행 등재신청서 신청양식	현행 등재신청서 보충설명	추가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는 첨부하는 CD에 전자형식으로도 담아야 한다. • 지형도는 비도시 유산의 신청서를 완성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지적도는 도시 유산에 중요하다. 컴퓨터 드로잉지도 등 드로잉만 포함된 신청서는 완성되지 않은 신청서로 간주된다. • (완충구역 외에도) 유산의 모든 환경 또한 관련 지도에 표시되어야 한다. 본 안내서 85-86쪽을 확인한다.
<p>1.f 유산구역과 제시한 완충구역의 면적(ha.)</p> <p>유산구역: _____ ha 완충구역: _____ ha 합계: _____ ha</p>	<p>연속유산일 경우(운영지침 137-140항 참조) 각 구성요소의 명칭, 지역(구성요소마다 다를 경우), 좌표, 면적과 완충구역을 표시한 표를 삽입한다.</p> <p>연속유산 신청 표는 각 신청 지역과 완충구역의 면적을 나타내는 데도 활용되어야 한다.</p>	
<p>2. 설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의 본 항은 3항-등재 타당성을 마무리한 후 완성할 것을 권고한다. 설명은 등재타당성에 대한 내용을 확장해야 하며 타당성 항목에 요약되어야 하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정보와 증거를 포함시켜야 한다. 여기에 신청유산의 완성된 그림을 제공하는 다른 정보도 포함되어야 한다. 단 설명은 핵심에 집중하고 장황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p>2.a 유산에 대한 설명</p>	<p>이 절은 등재신청 당시의 신청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해야 한다. 여기서는 유산의 모든 고유한 특징을 언급한다.</p> <p>문화유산의 경우, 이 절에서는 해당 유산을 문화적으로 중요하게 만드는 모든 요소들을 설명한다. 여기에는 하나 또는 여러 동의 건물과 그 건축양식, 건축일, 재료 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이 절에서 정원, 공원 등과 같은 주변 환경의 중요한 측면들도 설명해야 한다. 예컨대 암각화 유적의 경우, 주변 경관뿐 아니라 해당 암각화에 대해서도 언급해야 한다. 역사도시나 역사지구의 경우 각 건물을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으나 주요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명은 유산의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연관된 것들에 집중해야 하며, 이와 함께 유산의 전반적인 개요도 제공한다. • 설명은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대상과 그것의 중요한 특징을 이해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 유산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담은 포괄적이고 장황한 설명은 필요하지 않다. • 설명이 복잡하고 너무 장황하면 요약설명을 제공하고 부록에 구체적인 설명을 포함시키는 것이 나을 수 있다. • 설명은 이전 항목에서 그 경계가 확인된 신청 유산에 집중해야 한다. 일정정도 관계가 있다면 유산 밖의 요소에 대한 설명도 제공될 수 있

현행 등재신청서 신청양식	현행 등재신청서 보충설명	추가설명
	<p>설명하도록 한다. 또한 해당 지역의 계획이나 설계, 거리 양식 등에 대해서도 설명한다.</p> <p>자연유산의 경우, 중요한 물리적 속성과 지질학, 서식지, 종과 개체 수, 기타 중요한 생태적 특징과 과정을 설명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해당 종의 목록을 수록하고, 멸종 위기 종 또는 토착종의 상태도 중요하게 언급한다. 자연자원의 개발 범위와 방법도 기술한다.</p> <p>문화경관인 경우, 앞서 언급한 모든 내용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에 특히 주의를 기울인다.</p> <p>1절(유산의 명시)에 명시한 신청유산 전체를 설명해야 한다. 연속유산일 경우(운영지침 137-140항 참조) 각 구성요소를 개별적으로 설명한다.</p>	<p>으나 그러한 요소에 대한 설명은 별도로 제시하는 것이 가장 좋다(예, '유산 밖 관련 요소의 설명' 등 부재 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충구역 외에도) 유산의 모든 환경이 본 항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본 안내서 85-86쪽을 확인한다.
<p>2.b 역사와 발전</p>	<p>유산이 현재의 형태와 상태에 이른 경위와 최근의 보존 이력을 비롯해 유산에 일어난 주요 변화를 기술한다.</p> <p>기념물이나 유적지, 복수의 건물 또는 건물군인 경우 축조 단계에 관한 설명도 포함해야 한다. 완공 이후 중요한 변화가 있었거나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관련 설명을 기술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명과 관련해 그 역사는 유산의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제공하는 데에 집중해야 하며, 유산의 전반적인 역사적 맥락도 제공한다. • 유산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담은 포괄적이고 장황한 역사는 필요하지 않다. 그러한 정보는 필요하다면 부록에 실거나 간단히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 유산에 대한 이야기는 세계사적 맥락에 위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일정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 역사를 참고하는 일은 대개 매우 중요한데, 주장은 참고자료를 적절히 활용하고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하는 여타 다른 정보원에 의지하기 때문이다. • 유산 발전의 역사의 경우 발전 단계를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이 있다면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 가령 시대가 다른 여러 건물로 이루어진 도시라면 기술된 내용대로 어떤 건물이 어떤 시대와 연관되는지 보여주는 이미지가 있다면 도움이 된다.

<p>현행 등재신청서 신청양식</p>	<p>현행 등재신청서 보충설명</p>	<p>추가설명</p>
	<p>자연유산인 경우, 역사 또는 선사시대에 일어난 유산의 진화에 영향을 끼친 주요 사건에 대해 기술해야 하며, 인간과 해당 유산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여기에는 수렵, 어로, 농경에 사용된 자연 자원의 변화나 기후변화, 홍수, 지진 또는 다른 자연적 원인으로 야기된 변화도 기술해야 한다.</p> <p>문화경관인 경우에도 이러한 정보가 필요하며, 여기에는 해당 지역에서 진행된 인간 활동의 모든 역사적 측면을 기술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나 조각, 옛 사진과 같은 자료도 기술 내용에 활용할 수 있다. 이들 자료는 유산의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관련된 이야기의 측면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p>3. 등재 타당성 1</p>	<p>등재 타당성은 다음 절들에서 기술한다.</p> <p>이 절에서는 해당 유산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p> <p>신청서 중 이 절은 전체적으로 운영지침의 요구 내용을 면밀히 참조해 작성한다. 여기에는 다른 절들에서 기술되는 유산과 그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는 포함시키지 않으며, 해당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정의와 관련된 핵심 내용만 전달한다.</p>	<p>다음 3.1.a-3.1.e항의 기술에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기술 초안'에 제공된 기술 내용을 뒷받침하는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담겨야 한다.</p>
<p>3.1.a 간략한 종합</p>	<p>간략한 종합은 (i) 사실정보의 요약, (ii) 특성에 대한 요약으로 구성해야 한다. 사실정보의 요약에는 지리적, 역사적 맥락과 주요 특징을 서술한다. 특성에 대한 요약에는 향후 지속시켜야 할 잠재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의사 결정권자와 일반대중에 제시하고, 그러한 잠재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전달하면서 보호, 관리, 모니터링이 필요한 속성에 대한 요약도 기술한다. 이 요약은 등재신청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언급된 모든 등재기준과 관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간략한 종합에는 등재를 신청하고 제안하는 전반적인 근거가 요약되어야 한다.</p>	<p>본 항의 기술에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기술 초안'에 제공된 기술 내용을 뒷받침하는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담겨야 한다.</p>
<p>3.1.b 등재 기준 (그리고 해당 기준으로 등재하고자 하는 근거)</p>	<p>운영지침 77항 참조</p> <p>각 기준에 대한 개별 내용을 기술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안내서의 60-61쪽 참고 • 각 등재기준에 따른 타당성 내용은 아래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기술을 작성하는 데 있어 유용한 부분이다.

4 등재신청서의 작성과 준비

현행 등재신청서 신청양식	현행 등재신청서 보충설명	추가설명
	<p>해당 유산이 관련 기준을 어떻게 충족시키는지 간략히 기술하며(필요한 경우 신청서의 '설명'과 '비교분석' 절의 내용을 참조하되 문안을 중복 사용하지는 안 된다) 각 등재기준에 대한 관련 속성을 설명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성은 왜 이 유산이 해당 등재기준을 충족시키는지를 실제 주장하는 내용이다. • 본 항의 기술에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기술 초안'에 제공된 기술 내용을 뒷받침하는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담겨야 한다.
<p>3.1.c 완전성에 대한 기술</p>	<p>완전성에 대한 기술에는 신청유산이 운영지침 II.D절에 명시된 완전성의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관련 조건은 운영지침 II.D 장에 상세히 나와 있다.</p> <p>운영지침에는 해당 유산에 대해 다음 사항을 평가해야 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표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들이 포함되었는지 • 유산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특징과 과정들을 완전히 나타낼 만큼 적절한 규모인지 • 개발 및/또는 방치의 부작용으로 인한 영향(88항) <p>운영지침에는 다양한 세계유산 등재기준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89-95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안내서의 61-67쪽 참고 • 유산 경계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이 항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 본 항의 기술에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기술 초안'에 제공된 기술 내용을 뒷받침하는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담겨야 한다.
<p>3.1.d 진정성에 대한 기술(등재기준 (i)-(iv) 하의 등재신청)</p>	<p>진정성에 대한 기술에는 신청유산이 운영지침 II.D절에 명시된 진정성의 조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관련 조건은 운영지침 II.D절에 상세히 나와 있다.</p> <p>이 절은 신청서 4절(과 다른 절들)에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갈 내용의 정보를 요약해 기술해야 하며, 이들 절에 들어가는 정도의 내용을 그대로 기술해서는 안 된다.</p> <p>진정성은 문화유산과 복합유산의 문화적 측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p> <p>운영지침에는 '유산은 그 문화적 가치(제시된 등재기준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이)가 다양한 속성을 통해 진실되고 신뢰할 만 하게 표현되었다면 진정성의 조건을 충족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고 기술되어 있다(82항).</p> <p>운영지침에 따르면 다음 유형의 속성을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전달 또는 표현되는 것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안내서의 61-67쪽 참고 • 본 항의 기술에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기술 초안'에 제공된 기술 내용을 뒷받침하는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담겨야 한다.

<p>현행 등재신청서 신청양식</p>	<p>현행 등재신청서 보충설명</p>	<p>추가설명</p>
<p>3.1.e 보호관리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태와 디자인 • 재료와 물질 • 용도와 기능 • 전통, 기법, 관리체계 • 위치와 주변 환경 • 언어와 다른 형태의 무형유산 • 정신과 감정 • 다른 내부·외부 요소 <p>이 절에서는 신청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보호관리 요건을 어떻게 만족시킬 것인지 기술한다. 전반적인 보호관리 틀에 대한 세부사항과 함께 유산보호와 관련해 장기적으로 예상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기술한다.</p> <p>이 절은 신청서 5절(4절과 6절도 가능)에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갈 내용의 정보를 요약해 기술하며, 이들 절에 들어가는 세부 내용의 정도를 그대로 기술해서는 안 된다.</p> <p>이 절에서는 우선 보호관리의 틀을 개략적으로 제시한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담긴 속성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필수적인 보호 메커니즘과 관리체계 및/또는 (현재 시행 중이거나 마련할 필요가 있는) 관리계획을 기술하고, 유산에 위협을 끼칠 수 있는 요소와 유산의 취약점을 다룬다. 또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법적 보호망, 주요 이해 당사자나 사용자 그룹과의 관계를 포함하는 명확히 문서화된 관리체계, 적절한 인력과 자원, 유산을 표현하는데 필요한 필수요건 (관련 시), 효과적이고 능동적인 모니터링 내용도 포함될 수 있다.</p> <p>다음으로 이 절에는 유산의 보호관리를 위해 필요한 장기적인 문제를 설명해야 하며, 이의 해결이 어떻게 장기 전략일 수 있는지를 기술한다. 이는 유산에 끼칠 가장 커다란 위협과 취약점, 강조되어 온 진정성 및/또는 완전성에 미칠 부정적인 변화와 함께 보호관리가 이들 취약성을 어떻게 해결하고 부정적 변화를 축소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는 것과 관련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항의 기술에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기술 초안'에 제공된 기술 내용을 뒷받침하는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담겨야 한다.

4 등재신청서의 작성과 준비

현행 등재신청서 신청양식	현행 등재신청서 보충설명	추가설명
	<p>세계유산위원회가 인정하는 공식적인 내용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기술을 다루는 이 절에는 유산의 장기적인 보호와 관리에 대한 당사국의 가장 중요한 의지가 담겨있어야 한다.</p>	
<p>3.2 비교분석</p>	<p>신청유산은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었거나 등재되지 않은 유사한 유산들과 비교되어야 한다. 비교에서 신청유산과 다른 유산들의 유사점과 신청유산이 뛰어난 이유들이 개괄되어야 한다. 비교분석은 국가적·국제적 맥락에서 신청유산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132항 참조).</p> <p>비교분석의 목적은 기존 주제연구, 그리고 연속유산의 경우 구성요소들의 선정 근거를 이용해 해당 유산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될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안내서의 67-73쪽 참고
<p>3.3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기술</p>	<p>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기술은 유산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할 때 세계유산위원회가 채택하는 공식적인 기술이다. 위원회가 유산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는 데 합의할 때 그 유산이 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는지, 관련 등재요건, 완전성과 (문화유산의 경우) 진정성의 조건들을 어떻게 만족시키는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속하기 위한 보호관리요건을 어떻게 충족하는지를 요약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기술에도 동의한다.</p> <p>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기술은 간명해야 하며 표준양식에 따라 제시되어야 한다. 그것은 해당 유산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보존상태를 평가하며 보호와 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위원회가 일단 채택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기술은 해당 유산과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안내서의 73-76쪽 참고

<p>현행 등재신청서 신청양식</p>	<p>현행 등재신청서 보충설명</p>	<p>추가설명</p>
	<p>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기술의 주요 절들은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간략한 종합 b. 등재기준의 근거 c. 완전성에 대한 기술(모든 유산에 해당) d. 진정성에 대한 기술 (등재기준 (i)-(iv) 아래 신청하는 유산) e. 보호관리 요건 	
<p>4. 보존상태와 유산에 영향을 주는 요소</p>		
<p>4.a 현재의 보존상태</p>	<p>이 절에 제시되는 정보는 신청유산의 보존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구성한다. 이 절에 유산의 물리적 상태,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위협, 유산 보존대책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132항 참조).</p> <p>예를 들어 역사도시나 역사적 지역에서는 최근 또는 향후 있을 주요 보수공사의 규모와 소요기간은 물론 크고 작은 보수작업을 필요로 하는 건물, 기념물이나 다른 구조물들을 명시해야 한다.</p> <p>자연유산의 경우, 종의 변화추이나 생태계의 완전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신청서가 이후 해당 유산의 상태 변화를 추적해 비교하는 데에 사용되므로 이는 중요하다.</p> <p>유산의 보존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와 통계 기준에 대해서는 다음의 6절을 참조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존상태에 대한 정보는 사실적이어야 하며 과장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심사단이 유산을 방문해 이러한 측면을 확인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유산의 상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특정물 뿐 아니라 유산의 진화에 기여하는 역동적인 과정과 연관되어야 하며, 이는 관련된 모든 속성의 완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 보존상태가 복잡하다면 다이어그램이나 주석을 단 지도/평면도가 이러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도시에서는 건물 상태의 편차가 클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위협의 정도나 보존 조치는 주석을 단 지도/평면도를 이용해 가장 잘 묘사될 수 있다. • 이 항은 유산의 현재 상태를 다루어야 한다. 잠정적 또는 향후의 위협은 4.b항에서 다루어야 한다.
<p>4.b 유산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p>	<p>이 절에서는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주거나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그런 문제들을 다룰 때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도 기술해야 한다. 이 절에 제시된 모든 요소들이 모든 유산에 적절한 것은 아니다. 이 요소들은 예시적인 것으로, 당사국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모든 요소가 모든 유산과 관련되는 것은 아니라는 보충설명에 유의한다. 요소들이 관련이 없는 경우 해당 요소를 구체적으로 다루려고 하지 않고 간단히 설명하도록 한다. • 이 항은 유산의 잠정적 또는 향후의 위협을 다루어야 한다. 현재 위협은 4.a항에서 다루어야 한다.

4 등재신청서의 작성과 준비

현행 등재신청서 신청양식	현행 등재신청서 보충설명	추가설명
	<p>각각의 특정 유산에 관련되는 요소들을 찾는 것을 돕기 위한 것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은 특정 유산에 대한 예측이나 기대가 합리적이거나 이전에 제기된 경우여야 한다. • 그럼에도 그러한 위험에 대한 정확하고 솔직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p>(i) 개발압력(예: 침식, 개조, 농경, 채광)</p>	<p>유산에 영향을 주는 개발압력의 유형을 항목화한다. 예를 들어 철거, 재축이나 신축 압력; 진정성이나 완전성을 훼손하는 새로운 용도를 위한 기존 건물을 개조; 농경의 침식, 조림이나 목축, 관리가 부실한 관광이나 다른 이용에 따른 서식지 변경이나 파괴; 부적절하거나 지속 가능하지 않은 자연자원의 개발; 채광으로 인한 손상; 자연 생태과정을 교란시킬 수 있는 외래종의 유입, 유산이나 그 주변 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유산 혹은 부근의 새로운 정주 중심지 조성.</p>	
<p>(ii) 환경적 압력(예: 오염, 기후변화, 사막화)</p>	<p>건물 조직, 식물상과 동물상에 영향을 주는 환경 악화의 주요 원천을 열거하고 요약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화의 원천은 정확하게 제시된 경우, 그리고 주요한 영향이 있는 경우에만 열거해야 한다.
<p>(iii) 자연재해와 재난대비(지진, 홍수, 화재 등)</p>	<p>유산에 예측 가능한 위협을 가하는 재해들, 그리고 이에 대처하는 긴급대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취한 물리적 보호 대책과 직원 훈련 등의 조치들을 항목화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러한 재해의 예측된 빈도와 그 충격의 예상 규모를 명시해야 한다. • 위험대비는 영향의 빈도와 규모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 위험대비는 사전 재난 대비, 그리고 재난 기간 중 그리고 그 이후 대응조치를 다루어야 한다. • 제공하는 정보는 다른 문서(긴급사태계획/재난 계획)를 참고해 요약해야 한다.
<p>(iv) 책임있는 세계유산 관광</p>	<p>유산 관광 현황(확실히 가용한 기준 자료, 유산의 일부 집중되는 활동을 포함한 이용패턴, 향후 계획된 활동)을 제공한다.</p> <p>등재 또는 다른 요소들로 인해 예상되는 관광 수준을 기술한다.</p> <p>유산의 수용력, 그리고 현재 또는 예상 방문객수와 관련 개발압력에 대해 부작용 없이 대응하기 위한 유산 관리 향상 방법을 밝힌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력을 결정하는 방식을 간략히 기술해야 한다. • 향후 방문객 숫자를 예측하는 기준의 개요를 기술해야 한다. • 향후 방문객 수의 현실적 추정치가 필요하며, 특히 세계유산 등재의 영향에 주목한다. 세계유산 등재는 종종 방문객 수의 상당한 증가로 이어진다. • 부정적 영향 없이 현재 또는 예측된 향후 방문객 수를 흡수하기 위한 수용력 관련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를 제시하거나 참고자료를

<p>현행 등재신청서 신청양식</p>	<p>현행 등재신청서 보충설명</p>	<p>추가설명</p>
	<p>유산의 무형적 속성에 영향을 주는 것을 포함해 방문객 압력과 행태로 인한 유산의 악화 형태들을 고려한다.</p>	<p>언급해야 한다. 단순 주장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현재 수치의 경우, 참고할 만한 영향 모니터링이 있었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유산에 대한 방문객/관광 관리계획이 있는가? 이는 적절하고 효과적인가? • 방문객/관광객들의 경험을 위한 바람직한 조건으로 기술할 내용에는 메시지, 기법, 경험의 질, 사용 가능한 편의시설을 포함시킨다. 이러한 정보는 대개 관광객/방문객 관리계획 안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계획의 핵심 내용에 대한 요약이 신청서에 포함될 수 있으며, 신청서에 계획을 첨부할 수 있다. • 방문객/관광객 숫자는 최근 몇 년의 수치여야 한다. • 유산은 다양한 지역이나 구역이 있을 수 없으며 그러한 경우 방문객/관광객 수는 단순히 전체 유산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p>(v) 유산구역과 완충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수</p> <p>추정 주민 수: 유산구역의 면적 _____ 완충구역 _____ 합계 _____ 연도 _____</p>	<p>유산구역과 완충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수에 대해 이용 가능한 최선의 통계 또는 추정치를 제공한다. 이 추정이나 산출을 한 연도를 표기한다.</p>	
<p>5. 유산의 보호와 관리</p>	<p>신청서에서 이 절의 의도는 법률, 규정, 계약, 계획, 제도적 및/또는 전통적 대책(운영지침 132항 참조)과 세계유산협약의 요건에 따라 유산을 보호, 관리하기 위해 수립한 관리계획이나 다른 관리체계(운영지침 108-118항 참조)에 대해 명확한 그림을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정책 측면, 법적 지위, 보호대책, 그리고 일상 행정과 관리의 실행가능성을 다루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안내서의 87-91쪽 참고 • 효과적인 보호는 세계유산에 반드시 필요하며, 신청서에는 이러한 보호가 현장에서 어떻게 제공되고 또 이행되는지 증명해야 한다. • 신청 시점에 효과적인 관리계획 또는 문서화된 체계가 요구된다. • ‘유적관리자를 위한 세계유산 관광 관리 실무 매뉴얼’ (Pedersen, 2002)에서 지속가능한 관광 관리원칙을 확인할 수 있다.

4 등재신청서의 작성과 준비

현행 등재신청서 신청양식	현행 등재신청서 보충설명	추가설명
5.a 소유권	토지 소유권의 주요 범주(국가, 주/도, 개인, 공동체, 전통, 관습, 비정부 소유 등)를 나타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잡한 유산의 경우에는 본 정보를 표로 제공하고 지도/평면도에 주석을 달아 설명하는 것이 가장 좋다.
5.b 보호 지정	<p>유산의 관련 법률, 규정, 계약, 계획, 제도적 및/또는 전통적 지위를 열거한다. 예를 들어 국립공원이나 지방지정 공원, 역사적 기념물, 국가의 법이나 관습에 따른 보호지역, 그 밖의 지정.</p> <p>지정 연도와 그 지위를 부여한 법령을 제공한다.</p> <p>문서를 영어나 불어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핵심 조항을 강조한 영어나 불어로 작성한 요약문을 제공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잡한 유산의 경우 본 정보는 목록과 함께 주석을 단 지도/평면도에서 유용하게 묘사될 수 있다. 완충구역 경계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은 이 항목에서 제공해야 한다.
5.c 보호 조치의 시행 수단	5.b절에 명시된 법률, 규정, 계약, 계획, 제도적 및/또는 전통적 지위에 의한 보호가 실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기술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론적으로 가능한 보호와 실질적으로 달성한 보호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실제 상황에 대한 정보가 가장 중요하며 그 내용이 제공되어야 한다. 모든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참고할 수 있어야 한다.
5.d 신청유산이 소재한 시와 지역의 기존 계획 (예: 지역 또는 지방 계획, 보존 계획, 관광발전 계획)	<p>이미 채택되고 합의된 계획들을 준비 일자와 담당기관과 함께 열거한다. 이 절에 관련 조항들을 요약해야 한다. 7.b절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계획의 사본을 부속서류로 포함해야 한다.</p> <p>계획이 영어나 불어 외의 언어로만 되어 있으면 핵심 조항을 강조한 영어나 불어로 작성한 요약문을 제공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들 계획의 현황 또한 제시해야 하며 그 효과에 대한 평가도 담는다. 이러한 계획이 유산의 보호, 보존, 관리와 일치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계획의 지리적 혹은 그 밖의 범위도 제시한다 (예. 계획이 유산 전체를 다루는가, 아니면 특정 부분만을 다루는가?)
5.e 유산 관리계획 또는 기타 관리체계	<p>운영지침 132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적절한 관리계획이나 기타 관리체계는 필수이며, 신청서에 제공해야 한다. 관리계획 또는 기타 관리체계의 효과적인 실행에 대한 확인도 요구된다. 관리체계에 지속 가능한 개발 원칙이 포함되어야 한다.</p> <p>7.b절에 명시된 바와 같이 관리계획이나 관리체계에 관한 문서의 사본을 영어나 불어로 작성해 신청서에 첨부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안내서의 89-91쪽 참고 단순한 확신이나 주장이 아닌 관리계획/체계의 효율성의 증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관리계획/체계는 우선적으로 유산의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보호와 보존을 위한 관리여야 한다. 관리계획/체계는 유산의 현실적 여건, 특히 여러 문제점과 관심사안을 다루어야 한다.

<p>현행 등재신청서 신청양식</p>	<p>현행 등재신청서 보충설명</p>	<p>추가설명</p>
	<p>관리계획이 영어나 불어 외의 언어로만 되어 있으면 그 조항들을 영어나 불어로 상세하게 기술해서 첨부한다. 이 신청서에 첨부된 관리계획의 제목, 일자, 작성자를 명기한다.</p> <p>관리계획 또는 문서화된 관리체계의 상세한 분석이나 설명을 제공한다.</p> <p>관리계획 실행을 위한 일정표 작성을 권고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속유산 또는 국가간 유산, 혹은 복수의 계획/체계의 경우, 해당 계획/체계의 상호보완성이 증명되어야 한다. 별도 유산요소의 조화로운 관리의 문서화되어 있어야 한다.
<p>5.f 자원과 재정 규모</p>	<p>매년 유산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과 재정 규모를 보여준다. 가용 자산의 적정성 여부, 특히 차이나 부족함 혹은 보조가 필요한 분야를 확인시켜주는 추산치를 제시할 수도 있다.</p>	
<p>5.g 보존과 관리 기법에 관한 전문지식과 훈련 기관</p>	<p>국가기관이나 다른 단체가 유산을 위해 제공하는 전문지식과 훈련 내용을 나타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산에서 활용되는 실질적인 전문성과 훈련에 대한 내용도 제공해야 하며, 사용 가능한 자원도 포함한다. • 해당 유산을 위해 만들어진 관리기관 내에 자체 전문성과 훈련 내용이 갖춰져 있을 수 있으며, 다른 조직에서 수급될 수도 있다. • 유산의 구체적인 필요를 충족하는 전문성과 훈련의 적절성, 역량에 대한 평가가 제공되어야 한다.
<p>5.h 방문객 시설과 기반시설</p>	<p>이 절에는 방문객들이 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기술해야 하며 그것들이 유산의 보호관리 요건과 관련해 적절함을 설명해야 한다. 시설과 서비스가 유산에 대한 안전하고 적절한 접근성 제공 등을 통해 유산을 효과적이고 포괄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방문객의 요구를 충족하는 방식을 제시해야 한다. 이 절에는 해설/설명(표지판, 탐방로, 유의사항이나 출판물, 안내서)을 포함하는 방문객 시설, 유산 전용 박물관/전시관, 방문객 또는 해설 센터 및/또는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의 향후 활용(숙박시설, 식당, 주차, 화장실, 구난 등) 등을 고려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산의 구체적인 필요를 충족하는 시설의 적절성, 역량에 대한 평가가 제공되어야 한다. • 이들 시설과 유산의 보호 및 보존 사이의 갈등이 있다면 그 내용도 언급해야 한다.

현행 등재신청서 신청양식	현행 등재신청서 보충설명	추가설명
<p>5.i 유산의 소개와 홍보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p>	<p>이 절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미래세대에 소개하고 전승하는 것을 규정한 세계유산협약 제4조와 5조에 관련된다. 당사국은 신청유산의 소개와 홍보를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약 정보만 요구된다. • 해당 정책과 프로그램은 해석계획이나 그와 유사한 내용 안에 포함될 수 있다. • 프로그램에 대한 자원 제공, 정책과 프로그램의 효율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 프로그램인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제공하고 홍보하는가? • 제시/홍보, 보호/보존 간 갈등이 있는가?
<p>5.j 직원의 수준과 전문지식 (전문성, 기술, 유지관리)</p>	<p>관광과 향후 훈련 요구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 유산의 양호한 관리를 위해 요구되는 가능한 기술과 자격을 나타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의 수준이 적절한가? • 이러한 기술과 훈련이 유산의 가치에 적절한가?
<p>6. 모니터링</p>	<p>신청서에서 이 절의 의도는 시간 경과에 따른 추세를 나타내기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보고됨으로써 유산의 보존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다.</p>	
<p>6.a 보존상태 측정을 위한 핵심 지표</p>	<p>전체 유산의 보존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선정된 핵심 지표를 표 형식으로 열거한다(위의 4.a절 참조). 해당 지표의 평가주기 및 기록보관 장소를 명시한다. 이들 자료는 유산의 중요한 측면을 대변하는 한편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기술과 최대한 밀접히 관련될 수 있다(위의 2.b절 참조).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수치로 표현하고, 불가능할 때에는 동일 지점에서 사진을 찍는 행위와 같이 반복할 수 있는 형태로 제시할 수 있다. 좋은 지표의 예는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자연유산인 경우 해당 종의 수나 주요 종의 개체 수 (ii) 역사도시나 역사지구에서 중대한 보수를 요하는 건물의 비율 (iii) 주요 보존 프로그램의 완료 예정일까지 남은 연도수 (iv) 특정 건물이나 건물 요소의 안전성 또는 이동 정도 (v) 유산에 가해지는 모든 침식의 증가 또는 감소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표는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관련되며 단순히 측정될 수 있는 무언가여서는 안 된다.

현행 등재신청서			추가설명
지표	주기	기록보관장소	

현행 등재신청서 신청양식	현행 등재신청서 보충설명	추가설명
6.b 유산 모니터링을 위한 행정 조치	6.a항에 언급된 모니터링 담당 기관의 명칭과 연락처를 기재한다.	
6.c 이전 보고활동 결과	간략한 개요와 함께 해당 유산의 보존상태에 대한 이전 보고서의 목록을 작성하고 발간물 초록과 참고문헌을 제시한다(예: 람사르나 MAB 등 국제 협정과 프로그램에 근거해 제출하는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급된 문제나 보존상태가 열악한 경우 현 상태 혹은 취해진 시정조치를 간단히 언급해야 한다. • 여전히 문제가 있거나 보존 상태가 열악한 경우 이는 위 4항에서 보고되어야 한다.
7. 기록문서	신청서 중 이 절은 기록문서 체크리스트로 본 자료목록을 제시해야 비로소 신청서가 완성된다.	
7.a 사진, 시청각 이미지 자료 목록, 사용 승인 양식	<p>당사국은 해당 유산의 모습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다수의 최근 이미지 자료(인쇄물, 슬라이드, 가능한 경우 전자양식의 자료 및 영상, 항공사진)를 제출한다.</p> <p>슬라이드는 35mm, 이미지 파일은 최저 해상도 300dpi의 jpg 형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필름 자료인 경우에는 높은 화질을 위해 Beta SP 형식을 권장한다.</p> <p>본 자료를 제출할 때는 아래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이미지 목록, 사진, 시청각자료 사용승인 양식을 첨부하도록 한다.</p> <p>공개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는 유산의 사진이 최소 1장은 포함되어야 한다.</p> <p>당사국은 유네스코에 디지털 자료를 포함한 이미지 자료 일체 또는 그 일부를 어떠한 형식으로든 배포, 공개, 출판, 재생, 이용할 비배타적 권리를 제공하고, 제3자에게 제공 가능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음을 일체의 대가없이 서면 승인하도록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지는 유산의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그 맥락을 보여주어야 한다.

4 등재신청서의 작성과 준비

현행 등재신청서 신청양식	현행 등재신청서 보충설명	추가설명
	<p>권리의 비배타적 양도는 지적재산권(사진가/영상물 감독과 저작권자가 서로 다를 경우 해당 저작권자의 권리)을 침해하지 않으며, 유네스코는 관련 정보가 분명한 경우 해당 자료의 배포 시 해당 사진가/영상물 감독을 명시한다.</p> <p>이러한 권리 양도로 발생하는 일체의 수익은 세계유산기금으로 적립된다.</p>	

현행 등재신청서								추가설명
자료 번호	형식 (슬라이드/인쇄물/영상물)	사진 설명	촬영일 (월/년)	사진가/영상물 감독	저작권자 (사진가/영상물 감독과 동일인이 아닌 경우)	저작권자 연락처 (성명, 주소, 전화/팩스, 이메일)	권리의 비배타적 양도	

현행 등재신청서 신청양식	현행 등재신청서 보충설명	추가설명
7.b 보호지정 관련 텍스트, 유산 관리계획 또는 문서화된 관리체계, 해당 유산과 관련된 기타 계획의 초록	위의 5.b, 5.d와 5.e절에서 설명된 문장을 첨부한다.	
7.c 신청유산의 가장 최근 기록이나 목록의 작성 양식과 일자	해당 유산에 대해 가장 최근 작성된 기록이나 목록의 작성양식과 일자를 명확히 기재한다. 여전히 사용할 수 있는 기록만을 설명해야 한다.	
7.d 목록, 기록 및 자료 보관 장소	해당 기록물(건축물, 기념물, 동식물종) 소장 기관의 명칭과 주소를 기재한다.	
7.e 참고문헌목록	문헌목록 표준양식에 따라 참고문헌을 원 출간 상태로 기재한다.	

현행 등재신청서 신청양식	현행 등재신청서 보충설명	추가설명
8. 담당기관 연락처	사무국은 신청서 이 절의 내용을 바탕으로 세계 유산 소식 및 기타 사안에 대한 최신정보를 해당 유산에 제공할 수 있다.	
8.a 담당자 이름: 직위: 주소: 시, 도/주, 국가명: 전화: 팩스: 이메일:	신청서 준비 담당자의 이름, 주소 및 기타 연락처를 기재한다. 이메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팩스 번호로 대체한다.	
8.b 공식 기관 8.c 기타 기관	유산의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 박물관, 지역사회의 명칭 또는 지역 담당자의 이름을 기재한다. 평시 보고를 담당하는 기관이 정부 소속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연락처를 기재한다. 세계유산에 관한 각종 소식 및 사안을 다루는 무료 발간물인 '세계유산 뉴스레터'를 구독해야 할 박물관 및 방문객 센터, 공식 관광 사무소의 정식 명칭, 주소, 전화번호, 팩스 및 이메일 주소를 기재한다.	
8.d 공식 홈페이지 주소 http:// 담당자 성명: 이메일:	현재 운영 중인 해당 유산의 공식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한다. 향후 구축될 홈페이지가 있다면 이를 명시하고, 담당자명과 이메일 주소를 기재한다.	
9. 당사국 대표자의 서명	신청서는 당사국을 대표해 본 문서에 서명할 권한이 있는 정부 관료의 서명으로 마무리한다.	

4.3 추가 정보

검토와 수정

최종적으로 좋은 신청서 작성을 위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럿이다.

- 개요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수정해 신청서 본문과 일관성을 유지한다.
- 핵심 메시지가 담겼으며 그 내용이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는지 전체 신청서를 체크한다.
- 특히 여러 필자가 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일관성과 스타일을 유지해 이를 편집한다. 단 중요한 내용이 소실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한다.
- 유산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사람, 그리고 해당 국가나 그 유산에 대해 알지 못하는 이들이 신청서 초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이러한 검토 과정에서 제기된 의문점을 해결한다.
- 운영지침 132항에 따라 신청서의 완성도를 확인한다.

KEY MESSAGE

신청서에 대한 동료검토를 진행한다.

연속유산 신청서

연속유산 신청서의 경우 포함되는 정보의 양이 방대할 수 있는데 이는 연속유산에 해당하는 유산요소가 많아 그 분량이 크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예, 개별 유산요소에 대한 설명). 과도한 정보는 신청서를 읽거나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개별 유산요소에 대한 주요 정보를 적절히 균형감 있게 전달하는 것은 쉽지 않다.

본 신청서에는 요약 정보만을 제공하고 보다 자세한 정보는 본문에서 참조로 언급하는 부록에 담는 방법도 있다.

5 평가 과정

5.1 일반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평가 과정이 시작된다.

먼저 세계유산센터가 신청서의 완성도를 확인한다. 미완성 판단이 내려지면 해당 신청서는 자문기구로 전달되지 않으며 다음 해나 그 이후에 이를 다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완성된 신청서라면 관련 자문기구에 전달되어 평가가 진행된다. 자문기구는 이 과정에서 신청유산이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지, 완전성 및/또는 진정성 요건과 보호관리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평가한다. ICOMOS와 IUCN의 구체적인 평가절차는 운영지침 부록6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에서도 그 내용을 다룬다.

자문기구의 평가가 끝난 뒤 세계유산위원회가 이를 검토하기 전까지 자문기구는 위원회가 해당 신청서를 검토하는 당해 연도 1월 31일까지 당사국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고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운영지침 149항).

관련 정보는 2월 28일까지 송부해 자문기구가 이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운영지침은 공식적으로 자문기구가 그 이후 수령한 정보는 일체 검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당사국은 또한 위원회 의장에게 위원회 회의 전 자문기구 평가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 오류 내용을 문서로 알릴 수 있다(운영지침 150항).

당사국은 평가 과정 중 신청유산에 영향을 끼친 특정 사안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해 알려야 한다. 관련 정보는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유산의 등재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관련 자문기구의 권고를 바탕으로 이를 결정한다.

5.2 IUCN 평가과정

IUCN은 신청서 평가와 관련해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을 참고한다. 평가 과정은 IUCN이 4월 신청서 접수부터 다음 해 5월 세계유산센터에 보고서 제출까지 1년 이상 소요된다. 평가는 아래의 단계로 진행된다.

1. 데이터 수집: 신청서, 세계보호구역데이터베이스(World Database on Protected Areas), 기타 참고자료를 이용해 표준화된 데이터시트 작성
2. 외부검토: 신청서는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는 WCPA 회원, IUCN 전문가위원회, 학술네트워크, NGO 등 해당 유산이나 그 자연적 가치를 잘 아는 독립적인 전문가들에게 전달된다(매년 최대 100-150명의 외부 검토자가 참여).

3. 현장실사: 한 명 이상의 IUCN과 외부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신청유산을 평가하며 당사국의 중앙과 지방 정부, 지역사회, NGO, 기타 이해당사자들과 신청유산에 대해 논의한다. 실사는 통상 5월과 11월 사이에 진행된다. 복합유산과 특정 문화경관의 경우 ICOMOS와 공동 진행한다.
4. IUCN 세계유산패널 검토: IUCN 세계유산패널은 대개 스위스 IUCN 본부에서 최소 연 1회 만나 개별 신청서를 검토한다. 필요할 경우 2차 회의나 화상회의가 진행되며 대개 다음 3월에 열린다. 패널은 등재신청서와 실사보고서, 외부 검토자의 의견, 유산에 대한 데이터를 비롯해 여타 관련 자료를 집중 검토하며 IUCN에 기술적인 내용을 자문하고 각 신청서에 대한 권고 내용을 전달한다. 5월 중 최종보고서를 작성해 이를 세계유산 센터에 송부해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들에게 배포될 수 있도록 한다.
5. 최종 권고: IUCN은 이미지와 지도를 포함해 평가 과정에서 얻은 결과와 권고 내용을 매년 6월 또는 7월 중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 전달한다. 세계유산위원회는 해당 유산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할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IUCN은 평가과정에서 당사국과 지속적으로 대화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문이나 문제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실사 전 - IUCN은 통상 실사를 준비하는 주최국 담당자에게 직접 실사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전달하고, 실사 중 논의가 필요한 구체적인 질문과 안건을 제시한다. 이 과정을 통해 당사국은 적절한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다.
- 실사 직후 - 실사 중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IUCN은 세계유산패널 회의가 열리는 12월 전 해당 패널이 신청서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공식서한을 통해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 IUCN 세계유산패널 이후 - 답변을 얻지 못했거나 추가 확인해야 할 사안이 여전히 있다면 해당 패널은 마감일을 정해 당사국에 추가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IUCN이 평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마감일은 엄격히 준수한다.

유의점: 등재신청 당시 그리고 실사 중 당사국이 제공한 정보가 충분하다면 추가 정보를 요청하지 않는다. 추가 정보는 구체적인 질문이나 사안에 대한 것으로, 신청서를 완전히 수정하거나 방대한 양의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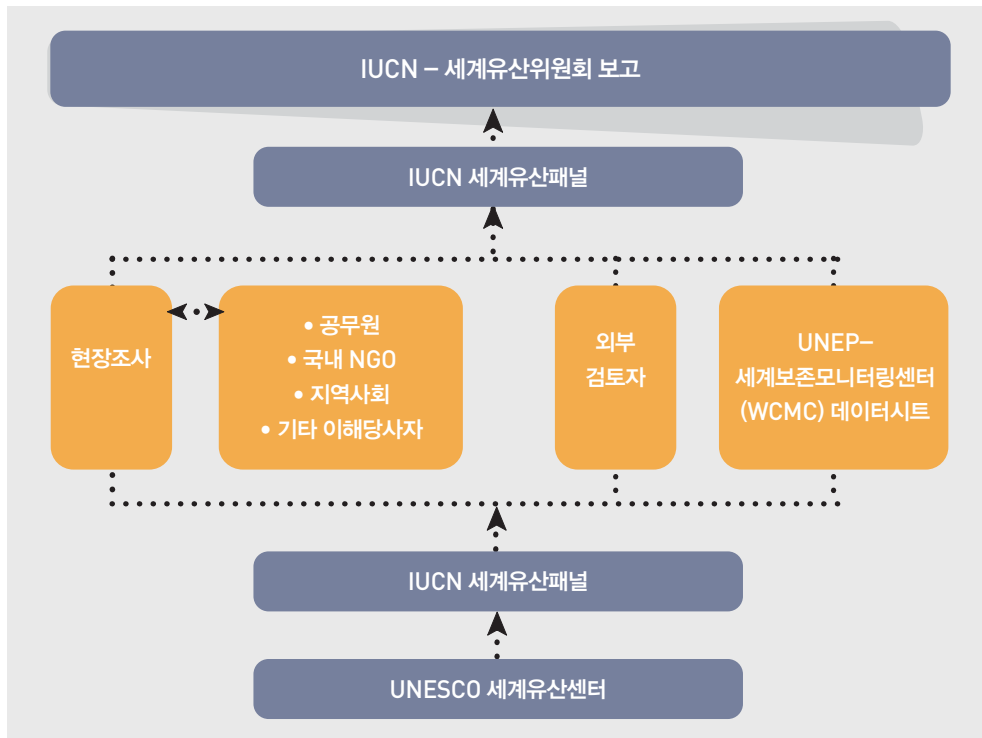
신청유산을 기술적으로 평가할 때는 우드바디의 '세계생물권지리권역' 개념을 이용해 신청유산을 다른 유사한 유산과 비교한다. 이 방식을 통해 자연유산을 보다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인 단위에서 실질적으로 그 유사성을 평가하는 수단이 된다. 동시에 세계유산에는 보다 넓은 범위의 생물군계를 기준으로 비교가 가능한 특별한 특징물과 서식지, 동식물적인 특이점이 있을 것이다. 다만 위의 생물권지리권역 개념은 비교의 기준으로만 사용할 뿐 이러한 기준만을 근거로 세계유산이 선정됨을 암시하지는 않음을 유념한다. 국제보존협회(Conservation International)의 생물다양성고밀도지역(Biodiversity Hotspots), WWF 세계생태지역(Ecoregions), 버드라이프인터내셔널(Birdlife International)의 고유 조류종 서식지(Endemic Bird Areas), IUCN/WWF의 식물다양성센터(Centres of Plant Diversity), IUCN/SSC 서식지분류(Habitat Classification), 2004 IUCN/UNEP-WCMC 세계유산네트워크리뷰등의 시스템을 활용해 세계적인 중요성

이 있는 유산을 식별한다. 핵심 원칙은 세계유산이란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는 것이다.

평가과정 중에는 IUCN과 UNEP-WCMC 등이 발간한 전 세계 보호구역에 대한 약 20여권의 자료에서 도움을 얻는다. 해당 자료는 아래와 같다.

-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의 보호구역 제도’ 리뷰자료
- ‘세계의 보호구역’ 목록 4권
- ‘세계생물다양성지도’ 시리즈 6권
- ‘식물다양성센터’ 목록 3권
- ‘세계의 산호초’ 목록 3권
- ‘세계의 해양보호구역 대표목록’ 종합 4권

이들 자료는 모두 전 세계 보호구역의 보존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 제도를 통해 전반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해 준다.



5.3 ICOMOS 평가과정

ICOMOS는 문화유산 평가 시 운영지침(148항)을 따른다.

평가과정 중에는 ICOMOS와 ICOMOS 국내 및 국제위원회 회원, 그리고 연계된 여러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넓은 범위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구한다. ICOMOS 회원들은 비밀리에 진행되는 현장 평가를 위한 전문가

실사에도 파견된다. 이렇게 넓은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자문을 통해 매년 개최되는 세계유산위원회를 위한 구체적인 권고안을 마련하게 된다.

전문가 선정

세계유산목록에 대한 유산 등재신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정된 연 단위의 절차가 마련돼 있다. 일단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가 신규 신청서에 대한 완성도를 확인하고 나면 확인된 신청서는 ICOMOS에 전달되고, ICOMOS 내 세계유산 담당 부서가 이를 처리한다. 첫 단계는 자문을 제공할 전문가를 선정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두 개의 별도 그룹이 구성된다. 첫 번째 그룹은 신청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해 자문해 줄 수 있는 이들이다. 이 그룹의 역할은 본질적으로 학계 전문가들의 ‘도서관’ 활동이며 특정 주제에 대해 ICOMOS 내 적절한 전문가가 없는 경우 ICOMOS 회원이 아닌 이들이 참여하기도 한다. 원시인류화석지 등재신청 건으로 전문 고생물학자가 필요한 경우가 바로 그러하다.

두 번째 전문가 그룹은 개별 유산에 대한 관리, 보존, 진정성 면에서 실질적인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이들이 현장실사를 맡는다. 전문가 선정 시에는 ICOMOS 네트워크가 심분 활용된다. 국제학술위원회와 개인회원들에게 자문을 구하며, 국제산업유산보존위원회(TICCIH), 세계조경가협회(IFLA), 근대 운동에 관한 기념물과 환경형성의 기록조사 및 보존을 위한 국제위원회(DoCoMoMo) 등 ICOMOS와 협력관계가 있는 전문가 단체의 협조도 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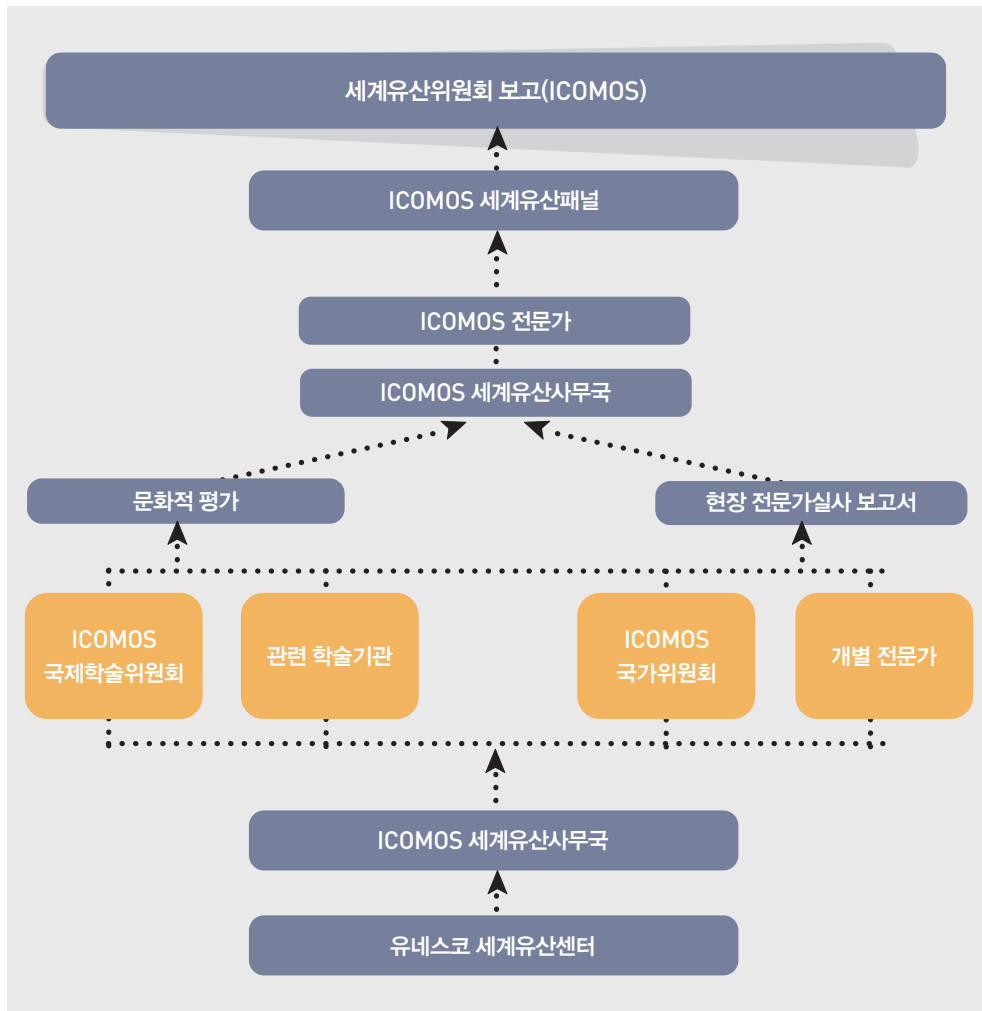
현장실사

현장실사를 진행할 전문가를 선정하는 ICOMOS의 원칙은 가능한 경우 언제나 신청유산이 위치한 지역 출신의 전문가를 택한다는 것이다. 이들 전문가는 유산관리와 보존 분야에 경험이 있어야 한다. 해당 유산 유형에 대해 학술적으로 반드시 높은 위치에 있을 필요는 없다. 동등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유적관리자들과 대화하고 관리계획, 보존 관행, 방문객 관리 등에 대해 관련 정보를 토대로 그 내용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은 신청서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자료와 함께 세부적인 내용을 브리핑 받게 된다. 방문 일정과 계획은 당사국과 의논해 협의하며, 당사국은 ICOMOS 실사단이 언론 노출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ICOMOS 전문가들은 관련 유산의 실질적인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비공개로 집행위원회에 제출하는데, 정리되지 않은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 ICOMOS와 관련 당사국, 그리고 세계유산위원회까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유산패널

파리 소재 ICOMOS 사무국은 이러한 자문을 바탕으로 준비된 두 종류의 보고서(문화적 평가와 현장실사보고서)를 수령하며, 이를 토대로 평가보고서 초안이 작성된다. 여기에는 유산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그 역사, 법적 보호와 유산관리, 보존현황에 대한 내용 요약, 이에 대한 의견, 그리고 세계유산위원회에 제공하는 권고안이 담긴다. 이는 2일 또는 3일간 열리는 ICOMOS 세계유산패널에 제공된다. 패널은 세계 각지의 폭넓은 기술과 경험을 갖춘 집행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다. 집행위원회와 함께 그해 등재신청 목록에 올라 있으나 위원회가 대변하지 못하는 특정한 유산 범주의 전문가들이 여기에 추가로 참여한다. ICOMOS는 수령한 신청서의 특징에 따라 TICCIH와 DoCoMoMo 전문가들을 패널에 초청하기도 한다.패널은 비공개로 활동하며 ICOMOS 정책문서(Policy Document, ICOMOS 홈페이지 참조)를 지침으로 삼는다. ICOMOS 담당자는 각 신청유산에 대해

10-15분 가량 도해를 첨부해 그 내용을 소개하고 이어 전문가들 간 토의가 이어진다. 신청서에 대한 객관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끝나면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할 ICOMOS 권고안을 작성하며, 보고서의 수정과 인쇄가 진행 된다.



참고자료

일반

Badman, T., Bomhard, B. and Dingwall, P. 2008. *World Heritage Nominations for Natural Properties: A Resource Manual for Practitioners*. Gland, Switzerland, IUCN.

Cameron, C. 2005. *Background Paper for the Special Expert Meeting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The Concept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Kazan, Republic of Tatarstan, Russian Federation.
cmsdata.iucn.org/downloads/kazan_abs_english.pdf

de Merode, E., Smeets, R. and Westrik, C. 2004. *Linking Universal and Local Values: Managing a Sustainable Future for World Heritage*. Paris,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World Heritage Papers 13.)

<http://whc.unesco.org/en/series/> (English web page)

<http://whc.unesco.org/fr/series/> (French web page)

Dingwall, P., Weighell, T. and Badman, T. 2005. *Geological World Heritage: A Global Framework*. Gland, Switzerland, IUCN.

Engels, B., Ohnesorge, B. and Burmester, A. (eds). 2009. *Nominations and Management of Serial Natural World Heritage Properties – Present Situation,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Proceedings of a workshop organized by the German Federal Agency for Nature Conservation (BfN) in cooperation with the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and IUCN, November 26–30 2008.

Hockings, M., James, R., Stolton, S., Dudley, N., Mathur, V., Makombo, J., Courrau, J. and Parrish, J. 2008. *Enhancing Our Heritage Toolkit, Assessing Management Effectiveness of Natural World Heritage Sites*. Paris,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World Heritage Papers 23.)

<http://whc.unesco.org/en/series/> (English web page)

<http://whc.unesco.org/fr/series/> (French web page)

ICOMOS. 1965. *International Charter for the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Monuments and Sites (The Venice Charter 1964)*. Paris, ICOMOS.

http://www.icomos.org/venice_charter.html

ICOMOS. 2005a. *The World Heritage List: Filling the Gaps – An Action Plan for the Future*. Paris, ICOMOS.

http://www.international.icomos.org/world_heritage/gaps.pdf (English web page)

http://www.international.icomos.org/world_heritage_fre/whlgaps.htm (French web page)

ICOMOS. 2005b. *Xi'an Declaration on the Conservation of the Setting of Heritage Structures, Sites and Areas*.

<http://www.international.icomos.org/charters/xian-declaration.pdf>

ICOMOS. 2008. *Compendium on Standards for the Inscription of Cultural Properties to the World Heritage List*.

whc.unesco.org/en/sessions/32COM/documents/

IUCN. 2000. *World Heritage and Mining*.

<http://unesdoc.unesco.org/images/0012/001231/123112e.pdf>

참고자료

IUCN. 2003. *World Heritage in the Boreal Zone*. Available at the IUCN website.

IUCN. 2004. *Review of the World Heritage Network: Biogeography, Habitats and Biodiversity: A Contribution to the Global Strategy for World Heritage Natural Sites*. Available at the IUCN website.

IUCN. 2005a. *Enhancing the IUCN Evaluation Process of World Heritage Nominations: A Contribution to Achieving a Credible and Balanced World Heritage List*. Available at the IUCN website.

IUCN. 2005b. *World Heritage Thematic Study for Central Asia: A Regional Overview*. Available at the IUCN website.

IUCN. 2006. *The World Heritage List: Guidance and Future Priorities for Identifying Natural Heritage of Potential Outstanding Universal Value*. Available at the IUCN website.

IUCN. 2007. *Harmonisation of Tentative Lists in Central, Eastern and South-Eastern Europe*. Available at the IUCN website.

IUCN. 2008a. *Management Planning for Natural World Heritage Properties, A Resource Manual for Practitioners*, interim version. IUCN Programme on Protected Areas. (IUCN World Heritage Studies 5.) Available at the IUCN website.

IUCN. 2008b. *Outstanding Universal Value – Standards for Natural World Heritage, A Compendium on Standards for Inscriptions of Natural Properties on the World Heritage List*. Available at the IUCN website.

IUCN. 2008c. *World Heritage and Protected Areas*. Available at the IUCN website.

IUCN. 2008d. *World Heritage Caves and Karst*. Available at the IUCN website.

IUCN. 2009. *Serial Natural World Heritage Properties*. Available at the IUCN website.

Jokilehto, J. 2008. *The World Heritage List. What is OUV? Defining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f Cultural World Heritage Properties*. Paris, ICOMOS. (Monuments and Sites XVI.) <http://www.international.icomos.org/publications/index.html>

Magin, C. and Chape, S. 2004. *Review of the World Heritage Network: Biogeography, Habitats and Biodiversity*. IUCN/UNEP-WCMC.

Martin, O. and Piatti, G. (eds). 2009. *World Heritage and Buffer Zones, International Expert Meeting on World Heritage and Buffer Zones, Davos, Switzerland, 11–14 March 2008*. Paris,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World Heritage Papers 25.)
<http://whc.unesco.org/en/series/> (English web page)
<http://whc.unesco.org/fr/series/> (French web page)

Pedersen, A. 2002. *Managing Tourism at World Heritage Sites: a Practical Manual for World Heritage Site Managers*. Paris,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World Heritage Manuals 1.)
<http://whc.unesco.org/en/series/> (English web page)
<http://whc.unesco.org/fr/series/> (French web page)

참고자료

UNESCO. 1972.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World Heritage Convention).

<http://whc.unesco.org/en/conventiontext/> (English web page)

<http://whc.unesco.org/fr/conventiontexte/> (French web page)

UNESCO. 2003.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ttp://www.unesco.org/culture/ich/index.php?lg=en&pg=00022> (English web page)

<http://www.unesco.org/culture/ich/index.php?lg=fr&pg=00022> (French web page)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Tentative Lists.

<http://whc.unesco.org/en/tentativelists/> (English web page)

<http://whc.unesco.org/fr/listesindicatives/> (French web page)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World Heritage List.

<http://whc.unesco.org/en/list/> (English web page)

<http://whc.unesco.org/fr/list/> (French web page)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1994. *Nara Document on Authenticity*.

http://www.international.icomos.org/charters/nara_e.htm

(Also reproduced as Annex 4 of Operational Guidelines.)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2005. *Vienna Memorandum on World Heritage and Contemporary Architecture – Managing the Historic Urban Landscape*.

whc.unesco.org/archive/2005/whc05-15ga-inf7e.doc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2011.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http://whc.unesco.org/en/guidelines/> (English web page)

<http://whc.unesco.org/fr/> (French web page)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 Government of the Netherlands. 1998. *Report of the World Heritage Global Strategy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Expert Meeting, 25 to 29 March 1998, Amsterdam, the Netherlands*.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 ICCROM. 2004. *Monitoring World Heritage*. (World Heritage Papers 10.)

http://www.international.icomos.org/world_heritage/gaps.pdf (English web page)

http://www.international.icomos.org/world_heritage_fre/whlgaps.htm (French web page)

전 세계 자연유산 비교분석 관련 추가 정보와 잠정목록 검토 및 업데이트

IUCN 기술 및 주제 연구

- *The World's Greatest Natural Areas: an indicative inventory of natural sites of World Heritage Quality* (1982).
- *Earth's Geological History: a contextual framework for assessment of World Heritage fossil site nominations* (1994).
- *A Global Overview of Wetland and Marine Protected Areas on the World Heritage List*(1997).
- *A Global Overview of Forest Protected Areas on the World Heritage List* (1997).

참고자료

- *A Global Overview of Human Use of World Heritage Natural Sites* (1997).
- *A Global Overview of Protected Areas on the World Heritage List of Particular Importance for Biodiversity* (2000).
- *Which Oceanic Islands Merit World Heritage Status?* (1991).
-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Applic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to Islands of the Southern Ocean* (1992).
- *Future Directions for Natural World Heritage Sites in East and Southeast Asia. Filling the Biome Gaps: a thematic approach to achieving biodiversity conservation through World Heritage*, Les Molloy (2000).
- *Potential Natural World Heritage Sites in Europe*, Lars-Erik Esping (1998).
- *A Global Representative System of Marine Protected Areas*, World Bank / IUCN, 4 vols (1995).

주요 지역회의 보고서 및 잠재적인 세계자연유산 발굴을 위한 유네스코 세계유산계획

- Task force to select a global inventory of fossil sites (1991).
- Nordic World Heritage – proposals for new areas for the UNESCO World Heritage List (1996).
- Identification of potential World Heritage sites in Arab countries (1999).
- Tropical forests (Berastagi meeting report, 1998).
- Identification of World Heritage properties in the Pacific (1999).
- Regional workshop on the nomination of World Heritage sites, Mozambique (2000).
- Seminar on natural heritage in the Caribbean, Suriname (2000).
- Central Asian meeting (2000).
- Karst sites in East and South East Asia (2001).
- Alpine Arc meetings (2000–2001).
- Tropical marine and coastal sites (Viet Nam workshop, 2002).
- Boreal forest protected areas (Russian Federation, October 2003).

참고문헌

BirdLife International. 1998. *Endemic Bird Areas of the World: Priorities for Biodiversity Conservation*. Cambridge, UK, BirdLife International.

BirdLife International. 2000. *Threatened Birds of the World*. Barcelona/Cambridge, Lynx Edicions/BirdLife International.

Hillary, A., Kokkonen, M. and Max, L. (eds). 2003. *Proceedings of the World Heritage Marine Biodiversity Workshop*. Paris,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World Heritage Papers 4.)

ICOMOS. 2004. *ICOMOS Analysis of the World Heritage List and Tentative Lists and Follow-Up Action Plan*. Paris, ICOMOS.

IUCN. 1997. *World Heritage Special Issue. PARKS*, Vol. 7, No. 2.

IUCN. 2004. *The World Heritage List: Future Priorities for a Credible and Complete List of Natural and Mixed Sites*. Gland, Switzerland, IUCN Protected Areas Programme.

Miklos, D. F. and Udvardy, M. 1975. *A Classification of the Biogeographical Provinces of the World – Prepared as a contribution to UNESCO's Man and the Biosphere Programme*.

Morges, Switzerland, IUCN. (Occasional Paper No. 18.)

참고자료

Smith, G. and Jakubowska, J. 2000. *A Global Overview of Protected Areas on the World Heritage List of Particular Importance for Biodiversity*. Cambridge, UK, UNEP World Conservation Monitoring Centre.

Thorsell, J., Ferster Levy, R. and Sigaty, T. 1997. *A Global Overview of Wetland and Marine Protected Areas on the World Heritage List*. Gland, Switzerland, IUCN Natural Heritage Programme.

Thorsell, J. and Hamilton, L. 2002. *A Global Overview of Mountain Protected Areas on the World Heritage List*. Gland, Switzerland, IUCN Protected Areas Programme.

Thorsell, J. and Sigaty, T. 1997a. *A Global Overview of Forest Protected Areas on the World Heritage List*. Gland, Switzerland, IUCN Natural Heritage Programme.

Thorsell, J. and Sigaty, T. 1997b. *Human Use of World Heritage Natural Sites: A Global Overview*. Gland, Switzerland, IUCN Natural Heritage Programme.

UNEP-WCMC. 1992. *Global Biodiversity: Status of the Earth's Living Resources*. London, Chapman & Hall/ World Conservation Monitoring Centre.

UNEP-WCMC. 2004. *Review of the World Heritage Network: Biogeography, Habitats and Biodiversity*. Cambridge, UK, UNEP World Conservation Monitoring Centre

Wells, R. T. 1996. *Earth's Geological History: A Contextual Framework for Assessment of World Heritage Fossil Site Nominations*. Gland, Switzerland, IUCN Natural Heritage Programme.

WWF / IUCN. 1994. *Centres of Plant Diversity: A Guide and Strategy for their Conservation – Volume 1*. 3 vols. Cambridge, UK, IUCN Publications Unit.

관련 기관 정보

명칭과 주소	개요	협약 범위에서의 역할
<p>ICCROM Via di S. Michele, 13 I-00153 Rome Italy Tel: +39 06 585-531 Fax: +39 06 5855-3349 E-mail: iccrom@iccrom.org http://www.iccrom.org</p>	<p>ICCROM(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은 이탈리아 로마에 본부를 둔 정부간기구이다. 1956년 유네스코가 설립했으며 규정에 따라 동산과 부동산 문화유산 보존 강화를 위한 연구, 기록화, 기술 지원, 훈련, 인식제고 사업을 진행한다.</p>	<p>협약과 관련된 ICCROM의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유산 훈련 분야의 우선적인 파트너 • 문화유산인 세계유산의 보존현황 모니터링 • 당사국이 제출한 국제지원 요청 검토 • 역량구축 활동에 대한 정보제공과 지원
<p>ICOMOS 11 Rue du Seminaire de Conflans 94220 Charenton-le-Pont France Tel: + 33 (0) 1 41 94 17 59 E-mail: secretariat@icomos.org http://www.icomos.org</p>	<p>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는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이다. 1965년 설립되었으며 건축유산과 고고유산 보존 이론과 방법론, 과학기술의 적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기념물 및 유적지의 보존과 복구에 관한 1964년 국제헌장(베니스헌장)'의 원칙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다.</p>	<p>협약과 관련된 ICOMOS의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 유산 평가 • 세계문화유산 보존현황 모니터링 • 당사국이 제출한 국제지원 요청 검토 • 역량구축 활동에 대한 정보제공과 지원
<p>IUCN Rue Mauverney 28 CH-1196 Gland Switzerland Tel: +41 (22) 999-0000 Fax: +41 (22) 999-0002 E-mail: worldheritage@iucn.org http://www.iucn.org</p>	<p>IUCN(국제자연보존연맹)은 1948년 설립되었으며 전 세계 중앙정부와 NGO, 과학자들과 협력한다. 자연의 완전성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전 세계 여러 단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들을 독려, 지원하며 천연자원을 공평하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본부는 스위스 글랜드에 위치한다.</p>	<p>협약과 관련된 IUCN의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 유산 평가 • 세계자연유산 보존현황 모니터링 • 당사국이 제출한 국제지원 요청 검토 • 역량구축 활동에 대한 정보제공과 지원
<p>UNESCO World Heritage Centre 7, place de Fontenoy 75352 Paris 07 SP France Tel: +33 (0)1 45 68 18 76 http://whc.unesco.org</p>	<p>1992년 설립된 세계유산센터는 유네스코 내 세계유산 관련 모든 사안을 다루는 중심기관으로 조정자 역할을 담당한다. 센터는 협약을 일상적으로 관리하고, 매년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를 주관하며, 신청서 준비와 관련해 당사국에 자문을 제공한다. 또한 유적이 처한 환경을 보고하며, 위협을 받고 있는 유적에 취하는 비상조치 마련에도 개입한다. 기술적인 문제를 다루는 세미나와 워크숍을 진행하고 세계유산목록과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며 유산 보존의 필요성과 관련해 청년층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자료도 개발한다. 대중들에게 세계유산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역할도 담당한다.</p>	



문화재청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문화재청 세계유산팀

대전 서구 청사로 189

Tel : 042-481-3181

Fax: 042-481-3199

E-mail: worldheritage@korea.kr

ISBN 978-89-299-1473-8 93600